

연구보고 2013-24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

양미선 서문희 임지희

머 리 말

정부의 보육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의 영양, 건강, 안전 등과 관련한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하여 2013년 5월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의 법적근거가 되는 영유아보육법 조항을 신설하고 사업을 착수하였다. 부모모니터링은 급식·위생·안전 분야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운영이 미흡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통한 조력을 제공하며, 이후 서비스 질이 일정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서 건전한 보육환경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부모모니터링 지표를 비롯한 운영 방식, 부모모니터링단의 자질 및 역할 등에 대해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보고서는 부모모니터링단의 안정적 정착 및 부모의 어린이집 운영 참여 통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 지표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부모모니터링단의 전문성 향상 및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제언을 하였다.

본 보고서는 부모모니터링 사업이 박근혜정부 국정과제로 안착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담당자뿐만 아니라 부모모니터링을 받는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단을 지원하며,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본 연구에 도움을 주신 시군구 부모모니터링 담당 공무원을 비롯하여 보육정보센터 담당자 등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아울러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둔다.

2013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이 영

차 례

| | |
|---------------------------|----|
| 요약 | 1 |
| I. 서론 | 5 |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5 |
| 2. 연구내용 | 6 |
| 3. 연구방법 | 6 |
| 4. 선행연구 | 9 |
| II. 관련 법 및 제도 | 11 |
| 1. 관련 법 및 제도 | 11 |
| 2. 부모모니터링 지표 | 14 |
| 3. 관련 지표 | 16 |
| III. 부모모니터링 운영 및 요구 | 20 |
| 1. 부모모니터링단 구성 | 20 |
| 2. 부모모니터링 운영 | 29 |
| 3. 부모모니터링 효과 | 47 |
| 4. 정책 시사점 | 52 |
| IV. 부모모니터링 지표 | 54 |
| 1. 지표 관련 의견 | 54 |
| 2. 지표의 적절성 | 59 |
| 3. 관련 지표 비교 | 64 |
| 4. 정책 시사점 | 71 |
| V. 정책 제언 | 72 |
| 1. 부모모니터링 운영 효율화 방안 | 72 |
| 2. 지표 개선(안) | 77 |
| 3. 맺는말 | 84 |

| | |
|------------------------------|-----|
| 참고문헌 | 86 |
| 부록 | 87 |
| 부록 1. 부록 표 | 89 |
| 부록 2. 부모모니터링 매뉴얼 개정(안) | 95 |
| 부록 3. 보육공무원 조사표 | 108 |
| 부록 4. 보육관계자 조사표 | 116 |

표 차례

| | |
|--|----|
| 〈표 I-3-1〉 시도 및 시군구 담당자 설문조사 내용 | 7 |
| 〈표 I-3-2〉 시도 및 시군구 보육담당자의 일반적 특성 | 8 |
| 〈표 I-3-3〉 전문가 조사 응답자 특성 | 8 |
| 〈표 II-1-1〉 부모모니터링 선정요건 | 13 |
| 〈표 II-2-1〉 부모모니터링 지표 구성 | 14 |
| 〈표 II-2-2〉 부모모니터링·평가인증·안심보육 지표 비교 | 15 |
| 〈표 II-3-1〉 40인 이상 어린이집 평가인증 지표 | 17 |
| 〈표 II-3-2〉 어린이집 지도·점검 점검사항 | 18 |
| 〈표 II-3-3〉 영역별 안심보육모니터링 관찰지표 구성 | 19 |
| 〈표 II-3-4〉 안심보육모니터링 컨설팅 내용 구분 | 19 |
| 〈표 III-1-1〉 부모모니터링 구성 현황 | 20 |
| 〈표 III-1-2〉 부모모니터링단 구성 및 인원 부족시 구성방법 | 22 |
| 〈표 III-1-3〉 부모모니터링단 구성의 어려움 | 23 |
| 〈표 III-1-4〉 부모모니터링단 선정요건의 적절성 개요 | 24 |
| 〈표 III-1-5〉 부모모니터링단 선정요건의 적절성 | 25 |
| 〈표 III-1-6〉 보건전문가 자격 요건 | 26 |
| 〈표 III-1-7〉 사전교육 실시 여부 및 교체인력에 대한 교육 | 27 |
| 〈표 III-1-8〉 보수교육 방법 및 실시횟수 | 28 |
| 〈표 III-1-9〉 보수교육의 필요성 및 보수교육 실시주기 | 28 |
| 〈표 III-2-1〉 사업별 운영 주체 | 30 |
| 〈표 III-2-2〉 시도별 부모모니터링 예산 | 30 |
| 〈표 III-2-3〉 예산 편성 조정 필요성 | 31 |
| 〈표 III-2-4〉 부모모니터링 활동 시작시기 | 32 |
| 〈표 III-2-5〉 부모모니터링 대상 선정기준 | 32 |
| 〈표 III-2-6〉 부모모니터링 사업운영의 어려움 | 33 |
| 〈표 III-2-7〉 부모모니터링 사업운영의 어려움: 1순위 | 34 |
| 〈표 III-2-8〉 부모모니터링 사업운영의 어려움: 2순위 | 34 |
| 〈표 III-2-9〉 부모모니터링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 35 |

| | |
|--|----|
| 〈표 III-2-10〉 부모모니터링 매뉴얼의 충분성 | 35 |
| 〈표 III-2-11〉 운영매뉴얼 추가 내용: 1+2순위 | 36 |
| 〈표 III-2-12〉 운영매뉴얼 추가 내용: 1순위 | 36 |
| 〈표 III-2-13〉 운영매뉴얼 추가 내용: 2순위 | 37 |
| 〈표 III-2-14〉 사업 홍보 및 안내의 충분성 | 37 |
| 〈표 III-2-15〉 부모모니터링단 부모요원 이탈 및 충원 비율 | 38 |
| 〈표 III-2-16〉 부모모니터링단 이탈 발생이유 및 인원 감소 시 운영 방법 | 39 |
| 〈표 III-2-17〉 부모모니터링단의 결과보고서 작성 수준 | 39 |
| 〈표 III-2-18〉 부모모니터링 실적 현황 | 40 |
| 〈표 III-2-19〉 부모모니터링 결과 어린이집 통지 여부 | 41 |
| 〈표 III-2-20〉 부모모니터링 결과 활용 | 42 |
| 〈표 III-2-21〉 컨설팅 현황 | 42 |
| 〈표 III-2-22〉 컨설팅 대상 어린이집 기준점수 | 43 |
| 〈표 III-2-23〉 컨설팅 어린이집 유무 및 사후관리 운영의 어려움 | 44 |
| 〈표 III-2-24〉 사후관리 확인의 필요성 및 확인 방법 | 44 |
| 〈표 III-2-25〉 활동 수당 및 차등 지급에 대한 의견 | 45 |
| 〈표 III-2-26〉 활동수당 상향조정 시 적정금액 | 46 |
| 〈표 III-2-27〉 1일 활동량 및 상해보험 가입의 필요성 | 47 |
| 〈표 III-3- 1〉 모니터링 결과와 서비스 질 일치도 | 48 |
| 〈표 III-3- 2〉 부모모니터링 시 어려움 | 49 |
| 〈표 III-3- 3〉 부모모니터링에 대한 인식 개선 방법 | 50 |
| 〈표 III-3- 4〉 부모모니터링의 효과 | 51 |
| 〈표 IV-1- 1〉 부모모니터링 지표 관련 의견에 대한 동의정도 개요 | 54 |
| 〈표 IV-1- 2〉 부모모니터링 지표 관련 의견 1 | 56 |
| 〈표 IV-1- 3〉 부모모니터링 지표 관련 의견 2 | 56 |
| 〈표 IV-1- 4〉 부모모니터링 지표 관련 의견 3 | 57 |
| 〈표 IV-1- 5〉 지표 개선의 필요성 및 점수평정 개선안에 대한 동의정도 | 58 |
| 〈표 IV-2- 1〉 부모모니터링 지표 영역·항목·문항내용의 적절성 | 59 |
| 〈표 IV-2- 2〉 부모모니터링 확인방법의 적절성 | 60 |
| 〈표 IV-2- 3〉 건강관리 세부지표의 적절성 | 61 |
| 〈표 IV-2- 4〉 급식관리 세부지표의 적절성 | 61 |

| | |
|--|----|
| 〈표 IV-2-5〉 위생관리 세부지표의 적절성 | 63 |
| 〈표 IV-2-6〉 안전관리 세부지표의 적절성 | 64 |
| 〈표 IV-3-1〉 부모모니터링과 평가인증 지표 비교: 건강관리 | 65 |
| 〈표 IV-3-2〉 부모모니터링과 평가인증 지표 비교: 건강관리 | 66 |
| 〈표 IV-3-4〉 부모모니터링과 평가인증 지표 비교: 급식관리 | 67 |
| 〈표 IV-3-4〉 부모모니터링과 평가인증 지표 상세비교: 급식관리 | 67 |
| 〈표 IV-3-5〉 부모모니터링과 평가인증 지표 비교: 위생관리 | 68 |
| 〈표 IV-3-6〉 부모모니터링과 평가인증 지표 상세비교: 위생관리 | 69 |
| 〈표 IV-3-7〉 부모모니터링과 평가인증 지표 비교: 안전관리 | 69 |
| 〈표 IV-3-8〉 부모모니터링과 평가인증 지표 상세 비교: 안전관리 | 70 |
| 〈표 V-2-1〉 부모모니터링 지표 변경 전후 구성 비교 | 78 |
| 〈표 V-2-2〉 부모모니터링 지표 및 확인방법 수정사항: 건강관리 | 79 |
| 〈표 V-2-3〉 부모모니터링 지표 및 확인방법 수정사항: 급식관리 | 80 |
| 〈표 V-2-4〉 부모모니터링 지표 및 확인방법 수정사항: 위생관리 | 81 |
| 〈표 V-2-5〉 부모모니터링 지표 및 확인방법 수정사항: 안전관리 | 83 |

그림 차례

| | |
|--|----|
| [그림 II-1-1] 부모모니터링단 구성 | 12 |
| [그림 III-1-1] 부모모니터링단 구성의 어려움 | 23 |
| [그림 III-1-2] 보수교육의 필요성 | 29 |
| [그림 III-2-1] 부모모니터링 사업운영의 어려움 | 33 |
| [그림 III-2-2] 활동수당 조정에 대한 의견 | 46 |
| [그림 III-2-3] 부모모니터링단 상해보험 가입의 필요성 | 47 |
| [그림 III-3-1] 부모모니터링 결과와 보육서비스 질의 일치정도 | 48 |
| [그림 III-3-2] 부모모니터링 시 어려움 | 49 |
| [그림 III-3-3] 부모의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성 제고 어린이집 서비스 질 개선 효과 .. | 51 |
| [그림 IV-1-1] 부모모니터링 지표 관련 의견 | 55 |
| [그림 IV-1-2] 부모모니터링 지표 개선의 필요정도 | 58 |

부록 표 차례

| | |
|--|----|
| 〈부록 표 II-1-1〉 부모모니터링 지표 시도 변경내용 | 89 |
| 〈부록 표 III-1-1〉 보육전문가 추가 선정요건 | 90 |
| 〈부록 표 III-1-2〉 부모 추가 선정요건 | 90 |
| 〈부록 표 III-1-3〉 컨설턴트 추가 선정요건 | 91 |
| 〈부록 표 III-1-1〉 부모모니터링 행정조치 현황 | 91 |
| 〈부록 표 V-2-1〉 부모모니터링 지표 및 확인방법 수정사항: 건강관리 | 92 |
| 〈부록 표 V-2-2〉 부모모니터링 지표 및 확인방법 수정사항: 급식관리 | 92 |
| 〈부록 표 V-2-3〉 부모모니터링 지표 및 확인방법 수정사항: 위생관리 | 93 |
| 〈부록 표 V-2-4〉 부모모니터링 지표 및 확인방법 수정사항: 안전관리 | 94 |

요약

1. 서론

- 본 연구는 부모모니터링단의 안정적 정착 및 부모의 어린이집 운영 참여 통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부모모니터링 지표를 개선하고, 부모모니터링단의 전문성 향상 및 운영의 효율성 강화 방안을 제시함.
- 연구목적에 따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음.
 - 부모모니터링 관련 선행연구, 관련 법 및 제도, 통계자료 등을 수집하여 검토함.
 - 부모모니터링 운영 현황 및 요구를 분석하고, 지표의 적절성을 평가하여 개정(안)을 마련함.
 - 부모모니터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함.
-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음.
 - 관련 선행연구 고찰, 관련 법과 보육사업안내, 부모모니터링 매뉴얼 등의 제도, 통계자료 등을 수집 분석함.
 - 16개 시도 및 시군구 부모모니터링 담당 공무원, 보육정보센터 담당자 대상으로 부모모니터링 구성 및 운영 관련 애로와 요구,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이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함.
 - 시도 및 시군구 담당 공무원 및 보육정보센터, 부모모니터링 위탁기관 담당자와 부모모니터링단 부모요원 및 보육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함.
 - 담당 공무원, 어린이집 원장, 보육정보센터 담당자 및 관련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회의 개최하여 조사표의 구성, 지표 개선안, 정책 관련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

2. 부모모니터링 운영 및 요구

- 부모모니터링단을 구성한 시도 및 시군구는 6월말 기준 76.1% 정도인 175개 지역이 사업을 착수하여 추진함.
- 부모모니터링단 구성은 절반 정도는 부모 대 보육전문가 1:1 비율대로 구성하였고, 39.5%는 보육·보건전문가 부족, 일부 지역에서는 부모가 부족함.
- 부모 또는 보육전문가 부족 시 모집인원 내에서 비율 조정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절반이 넘고, 일부는 비율 맞추기 위해 부족인원 여러 조에 반복 배치
- 부모모니터링단 구성 시 어려움은 절반 정도가 선정요건에 적합한 전문가 부족, 모니터링단에 대한 관심 부족 35.3%, 낮은 활동 수당과 선정요건에 적합한 부모 부족은 10% 미만 수준임.
- 정기적인 보수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70%가 넘는 과반수가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고, 필요정도는 4점 척도로 평균 2.9점임.
 - 보수교육 주기에 대해 보육공무원은 66.7%가 반기, 22.2%는 분기, 보육정보센터 담당자는 반기와 분기가 45.5%, 42.4%임.
- 보육공무원 대부분이 운영, 교육, 컨설팅 운영주체로 보육정보센터, 보육정보센터 담당자는 운영은 시군구, 교육과 컨설팅은 보육정보센터를 지적함.
- 차년도 부모모니터링 사업 예산 편성 시 필요한 항목으로 보육공무원은 부모모니터링단 수당증액 32.3%, 부모모니터링단 교육비 22.2%, 보육정보센터 담당자는 교육예산 증액, 보육정보센터 담당인력 수당, 부모모니터링단 수당 증액 등의 의견이 많음.
- 부모모니터링 대상 선정은 운영 지침에 따라 지도점검 시정명령·행정처분 어린이집을 우선 선정이 38.3%로 가장 높고, 무작위 선정도 29.9%로 높음.
- 부모모니터링 사업운영의 어려움으로 담당 공무원의 업무과중, 다음으로 부모모니터링단 파견일정 조정과 어린이집의 비협조가 17~19% 정도임.
- 부모모니터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67.7%, 필요정도도 4점 척도로 평균 2.7점임.
 - 보육정보센터 담당자는 필요하다는 비율이 90% 이상이고 평균 3.2점임.

- 부모요원 이탈이 없다는 지역이 절반 정도이고 나머지 24.6%는 초기 정원에서 20~40%미만 이탈하였고, 12%는 모집정원의 40~60%가 이탈함.
 - 부모요원 이탈률은 38.9%이고, 인원 충원은 58.8%가 충원되고 있지 않음.
- 부모모니터링단 이탈 발생 원인은 활동이 비정기적이라서 일정 보수를 보장하는 곳으로 취업한다는 이유가 35.1%로 가장 많고 부모모니터링단 역할의 어려움이 19.8%, 부모모니터링단 책임감 부족이 15.3%를 차지함.
- 대상 선정기준인 13점의 적절성에 대해 보육공무원은 적절하다가 과반수, 상향조정이 10% 정도이고, 보육정보센터 담당자는 적절하다는 의견이 절반 정도이고, 상향조정이 40% 정도로 높음.
- 활동수당의 적절성에 대해 보육공무원 절반 정도는 적당, 상향조정 46.7%, 보육정보센터 담당자는 상향조정이 과반수를 차지함.
- 부모모니터링단의 상해보험 가입에 대해 보육공무원은 필요하다가 64.7%, 보육정보센터 담당자들은 보육공무원보다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80%임.

3. 부모모니터링 효과

- 부모모니터링 결과와 서비스 질 일치도에 대해 보육공무원은 77.9% 보육정보센터 담당자는 절반 정도만 일치한다고 응답함.
- 부모의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성 제고 효과에 대해 보육공무원은 절반 정도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보육정보센터 담당자는 보육공무원보다 효과성에 대한 신뢰가 크지 않음.
- 부모모니터링이 어린이집의 서비스 질 개선 도움정도에 대해 보육공무원 절반 정도는 도움이 된다고 봄.

4. 부모모니터링 지표

- 지표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보육공무원 70%, 보육정보센터 담당자는 90% 이상이 지표 개선에 대해 동의함.
- 보육공무원은 영역 95.2%, 항목 91.6%, 문항·관찰내용 80.8%가 적절하다고

응답하였고, 보육정보센터는 영역과 항목은 80~90%, 문항·관찰내용은 50% 정도만 적절 답함.

5. 정책방안

가. 부모모니터링 운영 효율화 방안

- 부모모니터링에서 부모가 주체가 되기 위해 부모 선정기준을 엄격히 하고, 사전 및 보수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인력 교체 시 신규인력 대상의 교육 상설화, 보수교육 정기 실시
- 부모모니터링 사업 예산에 수당 및 사전교육 및 보수교육 운영비, 사업 운영비, 보육정보센터 담당인력 수당 등 추가 편성
- 부모모니터링단 활동 수당은 1개소 25,000원에서 부모는 30,000원, 보육전문가는 35,000원으로 상향조정함.
- 부모모니터링단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상해보험 가입 의무화
- 부모모니터링 대상 어린이집은 무작위 선정하며, 평가인증 받은 해는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함.
- 부모모니터링 운영매뉴얼에 주요 상황별 FAQ, 50개 문항에 대한 설명, 부모 모니터링단 역할 및 진행순서, 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방법 등을 보강함.
- 부모모니터링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부모모니터링단 인력 및 파견일정 관리, 모니터링 및 컨설팅 결과 관리, 업무연락 등을 one-stop으로 처리하여 효율성을 높임.

나. 지표 개선

- 기존 지표와 동일하게 건강관리, 급식관리, 위생관리, 안전관리 4개 영역으로 구성하나 항목은 13개, 관찰내용은 40개로 대폭 축소함.
 - 건강관리 3개 항목 8개 관찰내용, 급식관리 3개 항목 8개 관찰내용, 위생관리 3개 항목 10개 관찰내용, 안전관리 4개 항목 14개 관찰내용으로 개정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정부의 보육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의 영양, 건강, 안전 등과 관련한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하여 2013년 5월 영유아보육법 제25조의2항을 신설하여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부모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였다. 부모모니터링은 2013년 3월부터 230개 시군구에서 단계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2013년에는 전체 어린이집의 26%에 해당하는 1,100개소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2014년에는 2,200개소로 매년 부모모니터링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부모모니터링단은 급식·위생·안전 분야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운영이 미흡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통한 조력을 제공하며, 이후 서비스 질이 일정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이루어져 건전한 보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부모모니터링은 기존의 지도점검을 통한 정부 중심의 관리체계에서 행정체계와 현장, 수요자인 부모와 전문가의 모니터링과 이를 통한 컨설팅이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거버넌스로서의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조연숙 외, 2010). 또한 부모의 어린이집 참관이나 관여가 쉽지 않고, 부모의 어린이집 운영 참여에 대한 인식 또한 저조한 현실에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가 어린이집에 대해 직접 모니터링하는 부모모니터링 제도 도입은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실현, 보육서비스 제공자와 수요자 간의 소통 강화, 보육정책에 대한 수요자의 체감 향상 등의 긍정적인 측면을 기대할 수 있다.

한편, 부모모니터링이 도입되어 운영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으나, 현장에서는 부모모니터링 지표표 비롯한 운영 방식, 부모모니터링단의 자질 및 역할 등에 대해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양미선 외(2013)의 연구에서 부모모니터링이 지도점검, 평가인증 등 반복 점검으로 인한 업무 과중, 부모모니터링단의 전문성

부족과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이해 부족, 부모모니터링 사업 홍보 및 운영체계 안내 부족 등으로 현장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부모모니터링 사업이 박근혜정부 국정과제로서 안착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및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실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표 개선을 비롯한 운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부모모니터링단의 안정적 정착 및 부모의 어린이집 운영 참여 통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 지표를 개선하고, 부모모니터링단의 전문성 향상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부모모니터링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사업을 담당하는 시군구 보육공무원과 보육정보센터 담당자의 요구를 파악하여 부모모니터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모니터링 관련 선행연구, 관련 법 및 제도, 통계자료 등을 수집하여 검토한다.

둘째, 부모모니터링 운영 현황 및 요구를 분석한다.

셋째, 부모모니터링 지표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개선안을 마련한다.

넷째, 부모모니터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정과제로서 안착할 수 있도록 운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3.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국내 부모모니터링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영유아보육법 등의 관련 법과 보육사업안내, 부모모니터링 매뉴얼 등에 제시되어 있는 제도, 통계자료 등을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나. 조사연구

1) 시도 및 시군구 조사

부모모니터링 구성 및 운영 관련 애로와 요구,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기 위하여 16개 시도 및 시군구 부모모니터링 담당 공무원 대상으로 이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보건복지부의 협조를 얻어 2013년 11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되었다.

조사내용은 보건복지부, 시도 및 시군구 담당자 자문회의와 부모모니터링 위탁 운영 및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및 보육정보센터장 등과의 심층면담을 통해 1차 추출하였고, 조사표 작성 후 보건복지부 담당자와 전문가 서면 검토를 통해 수정, 보완하였다. 조사내용으로는 부모모니터링단 구성 및 교육, 운영, 결과활용, 지표의 적절성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표 1-3-1〉 시도 및 시군구 담당자 설문조사 내용

| 구분 | 내용 |
|---------------|--|
| 1. 부모모니터링단 구성 | 부모와 보육전문가 구성 비율 및 방법, 부모모니터링단 모집 시 어려움, 선정요건의 적절성, 추가 자격, 보건전문가 자격, 이탈 및 충원 인원수, 이탈발생 이유 |
| 2. 부모모니터링단 교육 | 사전교육 실시 여부 및 횟수, 사전교육 방법, 교체인력 교육 방법, 보수교육 실시 여부 및 횟수, 보수교육의 필요성 및 실시주기 |
| 3.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 대상 선정기준, 운영 시 어려움, 운영·교육·컨설팅 운영주체, 통합관리시스템구축, 결과보고서 작성 수준, 결과공개 및 활용, 컨설팅 기준점수의 적절성, 사후관리 운영의 어려움, 운영 매뉴얼의 충분성 |
| 4. 지표 | 영역·항목·문항수 및 확인방법의 적절성, 지표관련 의견 동의 정도, 지표개선의 필요성, 채점방법 개선 |
| 5. 정책 관련 | 예산편성, 사업홍보의 충분성, 부모모니터링의 효과성 |
| 6. 응답자 특성 | 연령, 성별, 학력, 직급 |

조사 결과 시도 및 시군구 담당자 167명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구체적으로 응답자 특성을 살펴보면, 여자가 66.5%, 남자 33.5%로 여자가 많고, 연령은 35세 미만이 30% 정도로 다빈도이다. 공무원 직급은 7급이 49.7%로 절반을 차지한다.

〈표 1-3-2〉 시도 및 시군구 보육담당자의 일반적 특성

| | | 단위: %(명) | |
|-----------|------------|-------------|------------|
| 구분 | 백분율(수) | 구분 | 백분율(수) |
| 성별 | | 학력 | |
| 여자 | 66.5(111) | 고졸 | 0.6(1) |
| 남자 | 33.5(56) | 대학졸(3년제 이하) | 15.0(25) |
| 연령 | | 4년제 대졸 | 73.1(122) |
| 35세 미만 | 29.9(50) | 대학원 졸 | 11.4(19) |
| 35~40세 미만 | 17.4(29) | 직급 | |
| 40~45세 미만 | 25.7(43) | 9급 | 7.8(13) |
| 45~50세 미만 | 18.0(30) | 8급 | 26.9(45) |
| 50세 이상 | 9.0(15) | 7급 | 49.7(83) |
| 전체 | 100.0(167) | 6급 | 15.0(25) |
| | | 5급 | 0.6(1) |
| | | 전체 | 100.0(167) |

2) 보육관계자 조사

부모모니터링 교육 및 컨설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16개 시도 및 시군구 보육정보센터 담당자를 대상으로 부모모니터링 지표 및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보육공무원 조사와 같은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조사내용은 앞서 살펴본 보육공무원 조사내용과 대부분 동일하고, 부모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현황과 관련된 문항을 제외하였으며, 부모모니터링 확인내용 50개 항목에 대한 적절성을 추가하여 구성하였다.

〈표 1-3-3〉 전문가 조사 응답자 특성

| | | 단위: %(명) | |
|-----------|-----------|----------|-----------|
| 구분 | 백분율(수) | 구분 | 백분율(수) |
| 성별 | | 학력 | |
| 여자 | 94.1(32) | 대졸 | 26.5(9) |
| 남자 | 5.9(2) | 대학원 이상 | 73.5(25) |
| 연령 | | 보육센터 경력 | |
| 35세 미만 | 41.2(14) | 3년 미만 | 40.6(13) |
| 35~40세 미만 | 14.7(5) | 3~5년 이하 | 25.0(8) |
| 40~45세 미만 | 29.4(10) | 6년 이상 | 34.4(11) |
| 45~50세 미만 | 14.7(5) | 전체 | 100.0(34) |
| 전체 | 100.0(34) | | |

보육관계자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중 여자가 과반수 이상이고, 연령은 35세

미만이 41.2%로 많다. 학력은 대학원졸 이상이 3/4 정도이고, 보육정보센터 경력은 3년 미만이 다수를 차지한다.

다. 심층면담

시도 및 시군구 보육 공무원 및 보육정보센터, 부모모니터링 사업 위탁기관 담당자와 부모모니터링단의 부모요원 및 보육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심층면담에서는 부모모니터링 사업 운영 실태 및 요구 등 설문조사로 파악하기 어려운 부모모니터링의 문제 및 애로사항 등을 도출하여 조사 자료를 보완하였다.

라. 자문회의

보육담당 공무원, 어린이집 원장, 보육정보센터장 및 관련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조사표 구성 및 정책 관련 의견을 수렴하였다.

4. 선행연구

부모모니터링에 대한 선행연구는 서울시의 안심보육모니터링단 운영 결과 보고서를 제외하면 주로 어린이집의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부모모니터링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룬다.

서문희·최윤경·김문정(2011)은 지방정부 특수보육시책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2011년에 부모모니터링단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 예정중인 시·도는 서울, 부산, 인천, 울산, 경기, 전북, 경북으로 모두 7곳이며, 각 시도에 따라 모니터링 지표, 모니터링단 요원 구성, 활동비 지급 여부 등에서 차이가 있었다. 모니터링단은 부모(부모 중 운영위원회 위원 혹은 보육관련 전공자), 민간전문가(교사경력자, 전공자)로 주로 구성되었고, 모니터링 지표는 부산, 경기, 전북, 경북이 청결·위생, 시설안전, 영유아의 안전보호로 동일하고, 울산이 급식위생과 시설안전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적었으며, 서울은 안심보육, 맞춤형보육, 보육인력 전문성, 클린보육으로 다른 지역과 차별적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연구자는 부모모니터링이 지도·점검이

나 평가인증과 차별화 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며, 객관적인 표준화 부모 모니터링 지표 개발, 모니터링단에서의 부모 역할과 활동 영역 등에 대한 정립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서울시 안심보육모니터링에 대한 어린이집 만족도를 연구한 서수경·양민석·안현미(2012)은 안심보육모니터링단 운영의 개선을 위해서 모니터링단의 고용안정성 보장, 모니터링단의 전문성 확보, 모니터링 활동의 행정적 구속력 기반 마련, 모니터링단 운영 전담 인력 확보 등을 제시하였다. 부모모니터링에 따른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적 개선효과가 나타났으며, 어린이집에서도 모니터링에 따른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양영진 외(2010)는 보육시설의 급식관리 매뉴얼 개발연구에서 보육담당 공무원의 업무들의 중요도와 수행도를 조사하였는데, 안심보육모니터링 관련 업무는 중요도와 수행도에서 모두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장모니터링의 효율적인 구성 및 운영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양미선·정주영·임지희(2013)는 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 제고 방안의 하나로 부모모니터링단 확대를 제안하였으며, 이를 위해 부모모니터링단 교육 강화를 강조하였다. 연구자는 현장 파견에 앞서 사전교육을 철저히 하며, 지표 관련 교육과 함께 현장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전국보육실태조사(2012)의 가구조사에서는 0~5세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모니터링단 인지도 및 참여율, 참여의향, 참여 시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부모 중 절반 정도는 부모모니터링단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참여율은 5% 정도로 저조하였다. 그러나 부모 절반 정도는 기회가 되면 참여할 수 있다고 답하여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시 부모 참여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외의 연구들에서는 어린이집의 서비스 질 향상 및 시설에 대한 부모의 알 권리 보호와 참여 확대라는 측면에서 부모모니터링 제도를 제안하였다(김인경, 2013, 유희정 외, 2003, 이미화 외, 2012)

II. 관련 법 및 제도

제2장에서는 영유아보육법 및 2013년 보육사업안내와 2013년 부모모니터링 매뉴얼에 제시되어 있는 관련 제도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관련 법 및 제도

가. 관련 법

정부는 2013년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여 부모모니터링 설치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영유아보육법 제25조의2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 보육환경을 모니터링하고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하기 위하여 부모, 보육·보건 전문가로 점검단(부모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모모니터링단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며 위촉된 사람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부모모니터링단의 직무는 어린이집 급식, 위생, 건강 및 안전관리 등 운영상황 모니터링,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으로 이러한 직무 수행을 위해 어린이집을 출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승인을 받아 어린이집을 출입하는 경우 승인서와 신분증을 표시하는 증표를 어린이집의 원장 등 관계자에게 내보이도록 명시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42조는 어린이집 운영 상황 조사를 위해 공무원이 어린이집에 출입하는 경우에 부모모니터링단이 공무원과 함께 어린이집에 출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제도

정부는 2013년 부모 및 지역사회 보육전문가의 어린이집 운영 참여 확대를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보육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여 부모모니터링을 설치·운영하였다.

1)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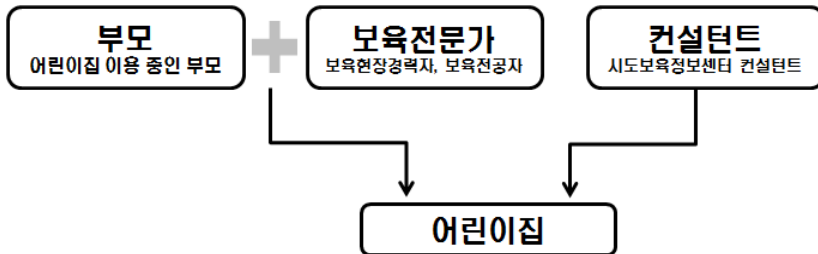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주체는 전국 230개 시군구의 시장·군수·구청장이다. 각 시군구는 부모모니터링 부모 및 보육전문가 모집 및 선발, 파견일정 조정, 대상 어린이집 선정, 모니터링단 파견, 모니터링 및 컨설팅 결과보고서 수집, 부모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부모모니터링단 사전교육 및 컨설턴트 파견은 보육정보센터에서 맡는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 위탁하여 교육, 컨설턴트 파견업무 등 부모모니터링 사업 전반을 위임하여 운영하고 있다.

2) 부모 모니터링단 구성

부모모니터링단은 시·군·구별로 10명(부모 및 보육전문가 1:1로 구성) 이내로 구성하되 어린이집 수 등 지역 실정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부모와 보육전문가가 함께 모니터링을 실시한 후, 현장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육정보센터와 연계하여 컨설턴트가 직접 어린이집을 컨설팅하는 사후 관리체계가 연계되어 운영된다.



[그림 II-1-1] 부모모니터링단 구성

부모모니터링단은 보육전문가, 부모, 컨설턴트로 구성하며, 세부 자격요건은 <표 II-1-1>과 같다. 보육전문가는 보육현장 근무경력 3년 이상을 공통 자격 요건으로 두고, 부모는 현재 자녀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거나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컨설턴트는 보육정보센터 관계자나 평가인증 경험 등이 주요 선정기준이다.

〈표 II-1-1〉 부모모니터링 선정요건

| 구분 | 선정요건 |
|----------|---|
| 1. 보육전문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보육현장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공통 기준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하고 있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정책위원 중 어린이집 근무 경력자 · 한국보육진흥원 평가인증 관찰자 참여경력 1년 이상인 자로서 활동 중단 이후 1년 경과된 자 · 전·현직 보육정보센터 전문요원 또는 컨설턴트로서 1년 이상 경력자 |
| 2. 부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를 둔 부모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부모 |
| 3. 컨설턴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현직 보육정보센터장 및 평가인증 담당 보육전문요원 - 전직 보육정보센터 영양사, 컨설턴트 - 전직 보육교사·원장으로 평가인증 1회 이상 수행자로 인증점수 90점 이상인 자(보육교사 1급, 보육업무경력 5년 이상인 자) |

자료: 보건복지부(2013). 보육사업안내.

3) 부모모니터링 운영

가) 선정기준

부모모니터링은 시군구가 관할하는 지역내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최근 3년 이내 지도·점검에서 1회 이상 급·간식 및 안전관리 등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부적정 사유로 지적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등에 한해 우선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나) 활동기간

부모모니터링단의 활동기간은 3~10월까지 약 8개월 동안이며, 평소 영유아의 건강·안전 등 보육환경에 대해 학부모 등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제기된 사례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관할 지자체에 제공하는 방법으로 운영된다.

다) 모니터링단 활동

부모모니터링은 부모와 보육전문가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이 어린이집을 함께 방문하여 급식·위생·안전 분야에 대해 이루어진다. 모니터링은 1개소 기준 약 3시간 정도 소요된다. 모니터링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도록 조치를 취한다. 부모요원은 급·간식, 위생·안

전 및 건강관리 등 어린이집 운영 및 사후관리 적정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한다.

부모모니터링단의 모니터링 분야는 식단 및 조리, 식재료 및 영양 관리 등에 관한 급·간식 분야, 조리실 청결, 급식 위생, 시설·설비 위관리 등에 관한 위생 관리 분야, 차량 안전, 아동학대 예방, 환경 안전 등에 관한 안전관리 분야, 예방접종, 응급조치 체계, 건강 검진 등에 관련된 건강관리 분야이다.

라) 컨설팅

컨설팅은 모니터링 결과 컨설팅이 필요한 어린이집(총점 13점 이하 미흡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모니터링 결과에서 미흡으로 확인받은 항목에 대해서만 실시된다.

2. 부모모니터링 지표

가. 지표 구성

부모모니터링 지표는 건강관리, 급식관리, 위생관리, 안전관리 4영역, 13항목, 5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영역별 세부내용을 보면, 건강관리는 영유아 예방접종, 응급조치 체계, 정기 건강검진 3개 항목이며, 급식관리 영역은 식단 및 조리관리, 식재료 관리, 영양관리 3개 항목, 위생관리 영역은 급식 위생관리, 조리실 청결, 시설설비 위생 3개 항목, 안전관리 영역은 물리적 환경관리, 인적 환경관리, 차량 안전관리, 아동학대예방 4개 항목이다.

〈표 II-2-1〉 부모모니터링 지표 구성

| 영역 | 항목 | 문항수 |
|------|---|-----|
| 건강관리 | 영유아 예방접종 관리, 응급조치 체계, 정기 건강검진 | 9 |
| 급식관리 | 식단 및 조리 관리, 식재료 관리, 영양관리 | 12 |
| 위생관리 | 급식위생 관리, 조리실 청결, 시설·설비 위생 | 12 |
| 안전관리 | 물리적 환경에 대한 관리, 인적환경에 대한 관리, 차량 안전관리 아동학대 예방 및 조치 | 17 |

어린이집의 건강, 영양, 위생, 안전 등을 평가하는 평가인증, 서울시 안심보육 지표와 부모모니터링 지표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11-2-2〉 부모모니터링·평가인증·안심보육 지표 비교

| 부모 모니터링 | | 평가인증 | | 서울시 안심보육 | |
|---------|---|--------|-----------------------------|------------|---|
| 건강 관리 | ·영유아 예방접종 관리 ·응급조치 체계 ·정기 건강검진 | 건강과 영양 | ·청결과 위생 ·질병관리 ·급식과 간식 | 아동 건강 | ·아동 건강 ·아동 학대 예방 |
| 급식 관리 | ·식단 및 조리 관리 ·식재료 관리 ·영양관리 | | | 급식 및 시설 위생 | ·급·간식 제공 ·식재료 관리 ·조리실 청결 ·시설 위생 |
| 위생 관리 | ·급식위생 관리 ·조리실 청결 ·시설·설비 위생 | | | | |
| 안전 관리 | ·물리적 환경에 대한 관리 ·인적환경에 대한 관리 ·차량 안전관리 ·아동학대 예방 및 조치 | 안전 | ·실내외 시설의 안전 ·영유아의 안전 보호 | 시설 안전 | ·실내시설의 안전성 ·실내외시설의 안전성 ·비상재해대비시설 설비 및 안전관리 ·안전교육 및 보험 가입 ·해당시설의 경우 관찰 및 컨설팅 |

자료: 보건복지부(2013). 아이사랑 부모모니터링 매뉴얼;
한국보육진흥원(2013). 어린이집 평가인증안내.
양미선·정주영·임지희(2013). 어린이집 및 유치원 운영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나. 확인방법

부모모니터링 50개 관찰내용에 대한 확인방법은 관찰, 면담, 문서 3가지이며, 지표에 따라 중복하여 사용하고 있다. 각각의 문항 중 확인에 대해 ○, ×로 표기하고, 각 항목에 대해 확인 ‘○’ 개수가 3개 이상, 2개, 1개 이하 등을 우수, 보통, 미흡으로 다시 평가한다. 우수는 2점, 보통 1점, 미흡 0점을 합산한 점수가 총점이 된다.

다. 시도별 지표 활용

부모모니터링 지표는 대부분의 시도가 그대로 적용하고 있으나 몇몇 시도는 지표 일부를 변형하여 사용하고 있다.

먼저, 경기도는 경기도용 운영매뉴얼을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다. 예방접종 사실 확인과 같이 부모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모협력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였고, 시설유형 등의 보육 현장을 반영하여 일부 지표를 수정하였다. 예

를 들어 위생복은 앞치마로 대체 가능하다거나 위생화는 반드시 장화가 아니어도 된다는 기준을 명시하였다. 또한 확인 기준이 모호한 일부 지표를 명확하게 수정하였다. 모니터링 시간도 3시간에서 1시간 이내로 단축하고, 어린이집 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특·장점을 결과보고서에 기록하도록 하였다. 이 외에 모니터링 순서를 제시하고, 이에 따라 문항을 재배치하였다.

전북도 일부 지표를 수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어린이집 기본 정보에서 집단 급식소, 차량운행, 석면안전관리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지표를 추가하였다. 건강관리 영역에서 영유아 추가 예방접종 시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도록 하였고, 안전영역은 운전자 안전교육 여부 확인, 안전관리 영역은 일부 지표의 확인 방법을 추가하였다.

한편 대구 중구는 급식위생, 시설안전, 아동건강 및 안전 3개 영역으로 축소하였고, 지표수도 50개에서 48개로 줄였다. 일부 지표는 다른 내용으로 교체하였으며, 필수항목과 일반 항목으로 구분하였다. 점검 총평도 총괄의견과 특이사항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지적사항, 수범사항, 종합의견 3가지로 구분하였다. 이외에도 급간식 책임자 자격증 유무와 제시 여부, 안전교육 실시 횟수와 시간 및 참가자 수, 차량운행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도록 하였다.

서울시는 기존 지표에 특별활동 문항을 추가하여 사용하고 있다.

앞서 제시한 경기도, 전북, 대구 중구 지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록 표 II-2-1>에 제시하였다.

3. 관련 지표

3절에서는 어린이집 건강, 위생, 영양, 안전 등을 평가하는 평가인증 지표와 지도점검 확인내용, 서울시의 안심보육모니터링 지표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 평가인증

어린이집 평가인증 지표는 어린이집 규모 및 운영 특성에 따라 39인 이하, 40인 이상, 장애아보육 3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40인 이상 지표는 6개 영역, 70개 항목, 39인 이하는 5개 영역 55항목,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지표는 6개 영역 75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가기준은 3단계 기술 평정척도로, 3점 '우수한 수준',

2점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1점,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확인방법은 지표에 따라 관찰, 문서, 면담 등을 활용한다.

40인 이상 어린이집 평가인증 지표 구성을 살펴보면 <표 II-3-1>과 같다.

<표 II-3-1> 40인 이상 어린이집 평가인증 지표

| 영역 | 하위 영역 | 항목 |
|-----------------|---------------|-----|
| 영역 1. 보육환경 | 가. 어린이집 환경 | 3항목 |
| | 나. 보육활동 자료 | 5항목 |
| | 다. 보육지원 환경 | 3항목 |
| 영역 2. 운영관리 | 가. 어린이집 운영관리 | 3항목 |
| | 나. 보육인력 | 3항목 |
| | 다. 가족과의 협력 | 4항목 |
| | 라. 지역사회와의 협조 | 2항목 |
| 영역 3. 보육과정 | 가. 일상적 양육 | 3항목 |
| | 나. 교사의 상호작용 | 6항목 |
| | 다. 교수법 | 2항목 |
| 영역 4. 상호작용과 교수법 | 가. 일상적 양육 | 3항목 |
| | 나. 교사의 상호작용 | 6항목 |
| | 다. 교수법 | 2항목 |
| 영역 5. 건강과 영양 | 가. 청결과 위생 | 8항목 |
| | 나. 질병관리 | 2항목 |
| | 다. 급식과 간식 | 2항목 |
| 영역 6. 안전 | 가. 실내외 시설의 안전 | 5항목 |
| | 나. 영유아의 안전보호 | 5항목 |

자료: 보건복지부(2013). 2013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

나. 지도점검

지도·점검은 운영일반, 재무회계, 아동·보육교직원 관리, 건강·영양·안전 3개 영역 46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점 점검사항은 보육료 상한선 준수,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준수 여부, 회계처리의 적정성, 교직원 자격·급여·4대 보험 등 적정 여부, 정원 및 반평성 기준 준수 여부, 운영시간 및 입소우선순위 준수 여부, 급·간식 운영 및 건강·위생관리 실태, 어린이집 안전관리 실태 8가지이다.

점검결과는 '양호', '미흡', '불량' 중 하나로 평가되고, 결과에 따라 시정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써 지도하고 그 이행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한다. 또한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이 필요한 경우에도 시정·변경 명령 조치하고 그 이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한다.

〈표 II-3-2〉 어린이집 지도·점검 점검사항

| 구분 | 점검사항 | |
|----------------|--|---|
| 1. 운영일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인가증 등 게시 확인 - 교육교사/보육아동 사진게시 확인 - 반편성 현황 및 현원 확인 - 출석부 확인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등록아동 확인 - 어린이집 운영기준 시간 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현황 확인 - 취약보육 운영 현황 확인 - 취약보육 실시확인 - 장부비치 여부 확인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운영여부 확인 |
| 2. 재무회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계정원장 - 세입·세출예산서 및 세입·세출결산서 - 필요경비 사용한도 - 현금출납부 - 수입·지출 결의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품대장 - 보육교직원 인건비 적정 지급 여부확인 - 어린이집 명의 계좌를 통한 입출금 - 보육아동 및 보육교직원 - 급·간식비 적정 집행 |
| 3. 아동·보육교직원 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아동 명단확인 - 보육교직원 명단별 구비서류 확인 - 근로계약서 체결 여부 확인 - 보육교직원 퇴직급여 적립 및 지급 - 원장 전임(상근)근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교직원 임면보고 시기 준수 및 관련 구비서류 비치 - 보수교육 이수 - 이용 신청자 서류 비치 |
| 4. 건강·영양·안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재해 대비시설 확인 및 적정성 확인 - 비상탈출구 게시여부 및 비상구 개방 여부 - 놀이터 및 놀이시설 안전검점 및 서류확인 - 안전교육 실시 여부와 서류 확인 - 소화용 기구 적정 비치여부 - 비상연락체계 구축 여부 - 자체 안전검점 여부와 서류 확인 - 정기소독 실시여부 - 실내공기질 관리 여부 - 집단 급식소 신고 서류 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식재료 관리상태 및 원산지 표시 여부 - 조리사, 영양사 자격증 확인 - 식단표 확인 - 어린이 보호차량 신고 여부 확인 - (임대 차량의 경우) 계약서류 확인 - 안전용 장구 장착 및 작동 여부 - 운전자 자격증 및 건강진단서 확인 -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보상 관련 공제 가입 여부 - 차량 안전관리 확인 |

자료: 보건복지부(2012). 어린이집 지도점검 매뉴얼 공무원용.

다. 서울시 안심보육모니터링

서울시 안심보육모니터링의 관찰지표는 급·간식 및 시설 위생, 시설안전, 아동건강 및 인권 3개 영역 10개 항목, 총 44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영역별 구성은 <표 II-3-3>에 제시하였다.

〈표 II-3-3〉 영역별 안심보육모니터링 관찰지표 구성

| 영역 | 항목 | 항목 |
|-----------------|--------------------|----|
| 1. 급·간식 및 시설 위생 | 급·간식 제공 | 6 |
| | 식재료 관리 | 4 |
| | 조리실 청결 | 4 |
| | 시설위생 | 3 |
| 2. 시설안전 | 실내시설의 안전성 | 4 |
| | 실내외 시설의 안전성 | 6 |
| | 비상재해대비 시설설비 및 안전관리 | 6 |
| | 안전교육 및 관리 | 3 |
| 3. 아동건강 및 인권 | 아동건강 | 7 |
| | 아동학대 예방 | 1 |

자료: 서울시여성가족재단(2012). 2012 서울시 안심보육모니터링단 운영 결과보고서. p.12.

안심보육모니터링 관찰결과는 각 지표 기준에 따라 충족, 일부 충족, 미충족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판단 근거 이유와 그에 따른 컨설팅 내용을 기술하도록 한다.

안심보육 컨설팅 내용은 유지, 제안, 권장, 권고 4가지로 구분되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표 II-3-4>와 같다.

〈표 II-3-4〉 안심보육모니터링 컨설팅 내용 구분

| 구분 | 내용 |
|----|--|
| 유지 | 현재 매뉴얼상의 기준에 부합되어 현 상태를 유지하도록 컨설팅이 이루어진 경우 |
| 제안 | 현재 매뉴얼 기준에 부합하지만, 추가적으로 컨설팅이 이루어지는 경우 |
| 권장 | 현재 매뉴얼상의 기준에 미흡하여 약간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부합하도록 컨설팅이 이루어지는 경우 |
| 권고 | 현재 매뉴얼상의 기준에 부적합하여 시정 가능하도록 컨설팅이 이루어진 경우 |

자료: 서울시여성가족재단(2012). 2012 서울시 안심보육모니터링단 운영 결과보고서. p.19.

Ⅲ. 부모모니터링 운영 및 요구

제3장에서는 부모모니터링 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보육 공무원과 보육정보센터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자료와 심층면접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1. 부모모니터링단 구성

가. 구성

정부는 2013년 3월부터 부모모니터링 사업을 착수하여 추진하고 있다. 시도 및 시군구의 부모모니터링단 구성 현황은 <표 Ⅲ-1-1>과 같다.

<표 Ⅲ-1-1> 부모모니터링 구성 현황

단위: 시군구, %, 명

| 구분 | 부모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 | | | 부모모니터링단 인원 | | | |
|----|-----------------|-----|-----|-------|------------|-------|------|-------|
| | 시군구 | 구성 | 운영 | 운영률 | 부모 | 보육전문가 | 컨설턴트 | 전체 |
| 전체 | 230 | 226 | 175 | 76.1 | 897 | 482 | 70 | 1,449 |
| 서울 | 25 | 25* | 25 | 100.0 | 66 | 49 | - | 164 |
| 부산 | 16 | 16 | 15 | 93.8 | 75 | 31 | - | 106 |
| 대구 | 8 | 8 | 7 | 87.5 | 25 | 21 | - | 46 |
| 인천 | 10 | 9 | 9 | 90.0 | 62 | 13 | 3 | 78 |
| 광주 | 5 | 5 | 3 | 60.0 | 24 | 21 | - | 45 |
| 대전 | 5 | 5 | 5 | 100.0 | 25 | 25 | 3 | 53 |
| 울산 | 5 | 5 | 5 | 100.0 | 50 | 6 | 1 | 57 |
| 경기 | 31 | 31 | 18 | 58.1 | 135 | 109 | 6 | 250 |
| 강원 | 18 | 15 | 12 | 66.7 | 68 | 32 | 1 | 101 |
| 충북 | 12 | 12 | 8 | 66.7 | 34 | 28 | 5 | 67 |
| 충남 | 16 | 16 | 7 | 43.8 | 56 | 41 | - | 97 |
| 전북 | 14 | 14* | 14 | 100.0 | 8 | 11 | 1 | 20 |
| 전남 | 22 | 22 | 14 | 63.6 | 96 | 30 | - | 126 |
| 경북 | 23 | 23 | 15 | 65.2 | 76 | 36 | - | 112 |
| 경남 | 18 | 18 | 16 | 88.9 | 88 | 23 | 1 | 112 |
| 제주 | 2 | 2 | 2 | 100.0 | 9 | 6 | - | 15 |

주: 서울과 전북은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각 시군구가 구성, 운영하는 것으로 표기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시군구 부모모니터링 운영현황 조사」(2013년 6월 말 기준) 결과임.

부모모니터링단을 구성한 시도 및 시군구 중 6월말 기준 76.1% 정도인 175개 지역이 사업을 착수하여 추진하고 있다.

부모모니터링 사업 운영은 시도 및 시군구가 대부분 주관하고, 교육 및 컨설팅 전문가 파견 업무는 보육정보센터가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 경우에는 25개 자치구 부모모니터링 사업을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 위탁하였고, 전북도 보육정보센터에 위임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역별 운영률은 충남이 43.8%로 가장 저조하고, 경기 58.1%, 광주, 전남, 경북, 강원, 충북 60%대이다.

부모모니터링단은 부모와 보육전문가 1:1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표 III-1-1>를 보면, 전북과 대전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모두 부모보다 보육전문가가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울산, 인천, 경남은 부모에 비해 보육전문가가 1/3 이하 수준으로 보육전문가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컨설팅 인력도 보육전문가와 마찬가지로 지역 간에 편차가 매우 크다. 일부 지역은 컨설팅 인력을 모집하지 못한 곳도 있다. 서울과 부산은 보육전문가가 컨설팅 업무까지 담당하고 있고, 대전은 이를 보육정보센터 보육전문요원이 맡고 있다.

<표 III-1-2>는 부모모니터링단 구성 방법과 인원 부족 시 구성 방법을 나타낸다. 응답지역 중 절반 정도인 47.9%는 부모 대 보육전문가 1:1 비율대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39.5%는 보육·보건전문가 부족, 일부 지역에서는 부모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6개 시도별로 보면, 대부분 비율대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서울을 비롯한 부산, 인천, 울산 등 대도시와 경남 등은 보육 전문가가 부족한 형편이다. 특히 인천과 울산 지역은 그 비율이 과반수가 넘는다.

부모 또는 보육전문가 인원 부족 시 부모모니터링단 구성방법은 모집된 인원 내에서 비율을 조정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절반이 넘고, 일부는 부모대 보육전문가 비율을 맞추기 위하여 부족 인원을 여러 조에 반복 배치하고 있다. 소수이나 일부 지역은 보육정보센터 전문요원이나 컨설턴트를 활용하다고 답하였다.

부모모니터링단의 부모요원 대상 심층면담에서도 부모와 보육전문가 수급 불균형에 따른 문제를 지적하기도 하였다. 부모에 비해 보육전문가가 부족한 경우, 전문가 활동량을 늘려 부모와 보육전문가 비율을 맞추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 부모 1인에게 할당되는 어린이집 수는 적고, 보육전문가는 늘어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보육전문가 활동이 많다보니 이들 중심으로 모니터링 스케줄을 짜게 되고, 부모들은 일정이 맞지 않아 참여 기회가 적어진다고 애로사

향을 토로하였다.

보육정보센터와 위탁 담당자 면담에서도 보육전문가 인원 부족으로 부모로만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은 실적 위주의 사업이라고 지적하였다.

〈표 III-1-2〉 부모모니터링단 구성 및 인원 부족시 구성방법

단위: %(명)

| 구분 | 부모모니터링단 구성 | | | | | 인원 부족 시 구성 방법 | | | | |
|----|----------------------|-----------------------|-----------------------|--------|------------|------------------------------------|--|---------|---|------------|
| | 비율 대로 구성 운영 | 부모 모니터 링단 부족 | 보육 보건 전문가 부족 | 기 타 | 계(수) | 모집된 인원 내에서 비율 조정 운영 | 부모 대 보육 전문가 비율 대로 인원 반복 배치 | 부족 조 | 인력 보육 정보 센터 전문 요원 컨 선택 턴트 활용 | 기타 |
| 전체 | 47.9 | 10.2 | 39.5 | 2.4 | 100.0(167) | 60.8 | 24.5 | 4.9 | 9.8 | 100.0(102) |
| 서울 | - | - | 100.0 | - | 100.0(1) | - | 100.0 | - | - | 100.0(1) |
| 부산 | 20.0 | 13.3 | 66.7 | - | 100.0(15) | 81.8 | - | - | 18.2 | 100.0(11) |
| 인천 | 25.0 | - | 75.0 | - | 100.0(8) | 85.7 | 14.3 | - | - | 100.0(7) |
| 광주 | 60.0 | - | 20.0 | 20.0 | 100.0(5) | 33.3 | 66.7 | - | - | 100.0(3) |
| 대구 | 33.3 | 22.2 | 33.3 | 11.1 | 100.0(9) | 16.7 | 50.0 | - | 33.3 | 100.0(6) |
| 대전 | 100.0 | - | - | - | 100.0(6) | 100.0 | - | - | - | 100.0(2) |
| 울산 | - | 16.7 | 83.3 | - | 100.0(6) | 100.0 | - | - | - | 100.0(6) |
| 경기 | 57.1 | 10.7 | 28.6 | 3.6 | 100.0(28) | 25.0 | 43.8 | 31.3 | - | 100.0(16) |
| 강원 | 76.5 | 5.9 | 17.6 | - | 100.0(17) | 50.0 | 16.7 | - | 33.3 | 100.0(6) |
| 충북 | 77.8 | - | 11.1 | 11.1 | 100.0(9) | 66.7 | 33.3 | - | - | 100.0(3) |
| 충남 | 70.0 | 10.0 | 20.0 | - | 100.0(10) | 66.7 | - | - | 33.3 | 100.0(3) |
| 전북 | 100.0 | - | - | - | 100.0(1) | 60.0 | 10.0 | - | 30.0 | 100.0(10) |
| 전남 | 46.7 | 20.0 | 33.3 | - | 100.0(15) | - | - | - | - | - |
| 경북 | 50.0 | - | 50.0 | - | 100.0(16) | 80.0 | 20.0 | - | - | 100.0(10) |
| 경남 | 15.8 | 21.1 | 63.2 | - | 100.0(19) | 64.7 | 35.3 | - | - | 100.0(17) |
| 제주 | 50.0 | - | 50.0 | - | 100.0(2) | 100.0 | - | - | - | 100.0(1) |

주: 서울, 전북 등 일부지역의 위탁운영으로 16개 시도별로 표 제시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모모니터링에 관한 보육공무원 조사」 결과임.

한편, 부모모니터링단을 운영하는 보육공무원 대상으로 부모모니터링단 구성 시 어려움을 조사하였다. 응답자 중 절반 정도가 선정요건에 적합한 전문가 부족을 지적하였고, 다음으로 모니터링단에 대한 관심 부족 35.3% 낮은 활동 수당과 선정요건에 적합한 부모 부족은 10% 미만 수준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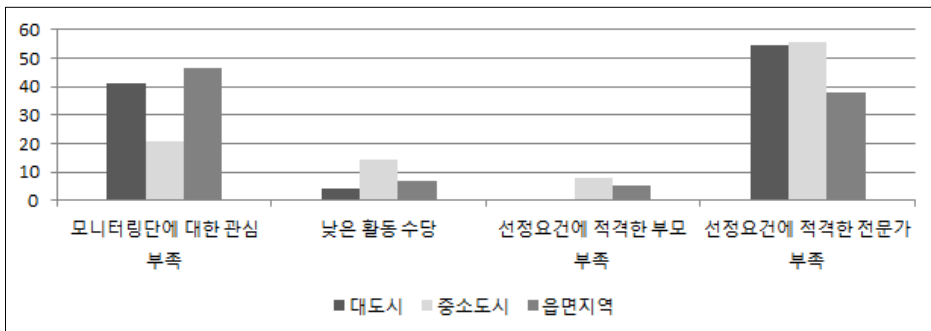
지역규모별로는 도시지역은 선정요건에 적합한 전문가 부족을 지적한 반면, 읍면지역은 모니터링단에 대한 관심 부족을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답하였다. 중소도시는 낮은 활동수당이 14.3%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편이다.

〈표 III-1-3〉 부모모니터링단 구성의 어려움

단위: %(명)

| 구분 | 모니터링단에 대한 관심 부족 | 낮은 활동 수당 | 선정요건에 적격한 부모 부족 | 선정요건에 적격한 전문가 부족 | 기타 | 계(수) |
|------|-----------------|----------|-----------------|------------------|-----|------------|
| 전체 | 35.3 | 9.0 | 4.8 | 49.1 | 1.8 | 100.0(167) |
| 대도시 | 41.3 | 4.3 | - | 54.3 | - | 100.0(46) |
| 중소도시 | 20.6 | 14.3 | 7.9 | 55.6 | 1.6 | 100.0(63) |
| 읍면지역 | 46.6 | 6.9 | 5.2 | 37.9 | 3.4 | 100.0(58)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모모니터링에 관한 보육공무원 조사」 결과임.



[그림 III-1-1] 부모모니터링단 구성의 어려움

나. 부모모니터링단 선정요건

1) 선정요건의 적절성

부모모니터링단은 앞서 살펴본 <표 II-1-1>에 따라 선정하고 있다. 부모 및 보육전문가, 컨설턴트 선정요건의 적절성을 살펴보았다.

보육전문가 선정요건을 보면, 시군구 보육공무원은 보육정책위원 중 어린이 집 경력자, 한국보육진흥원 평가인증 관찰자 참여경력 1년 이상인자로서 활동중단 이후 1년 경과된 자와 전현직 보육정보센터 전문요원 또는 컨설턴트로서 1년 이상 경력자에 대한 적절하다는 응답이 50~60%대로 가장 낮았다. 그러나 부모와 컨설턴트 선정요건은 70~90%대로 대체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편이었다.

이에 반해 보육정보센터 담당자는 컨설턴트 선정요건 중 전현직 보육교사 원장으로 평가인증 1회 이상 수행자로서 인증점수가 90점 이상인자에 대해 적절하다는 비율이 60%대로 낮고 나머지는 70% 이상 수준이다. 적절성 점수는 보

육공무원이 4점 평균 2.7~2.9점대, 보육정보센터 담당자 평균 2.9~3.2점대로 담당 공무원과 현장 담당자 간에 다소 의견 차이를 보인다.

〈표 III-1-4〉 부모모니터링단 선정요건의 적절성 개요

단위: %(명)

| 구분 | 시군구 보육 담당자 | | | | | | 보육정보센터 | | | | | |
|--|------------|------|------|-------|------------|-----|--------|------|------|-------|-----------|-----|
| | 매우 부적절 | 부적절 | 적절 | 매우 적절 | 계(수) | 평균 | 매우 부적절 | 부적절 | 적절 | 매우 적절 | 계(수) | 평균 |
| 보육전문가 | | | | | | | | | | | | |
| 보육현장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3.6 | 16.2 | 65.3 | 15.0 | 100.0(167) | 2.9 | 2.9 | 23.5 | 47.1 | 26.5 | 100.0(34) | 3.0 |
| 보육정책위원 중 어린이집 근무경력자 | 6.0 | 24.6 | 61.7 | 7.8 | 100.0(167) | 2.7 | 2.9 | 14.7 | 70.6 | 11.8 | 100.0(34) | 2.9 |
| 한국보육진흥원 평가인증 관찰자 참여경력 1년 이상인 자로서 활동 중단 이후 1년 경과된 자 | 7.2 | 34.1 | 52.7 | 6.0 | 100.0(167) | 2.6 | 2.9 | 11.8 | 61.8 | 23.5 | 100.0(34) | 3.1 |
| 전·현직 보육정보센터 전문요원 또는 컨설턴트로서 1년 이상 경력자 | 6.0 | 28.1 | 55.1 | 10.8 | 100.0(167) | 2.7 | 2.9 | 5.9 | 58.8 | 32.4 | 100.0(34) | 3.2 |
| 부모 | | | | | | | | | | | | |
|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를 둔 부모 | 2.4 | 13.8 | 61.7 | 22.2 | 100.0(167) | 3.0 | 8.8 | 8.8 | 61.8 | 20.6 | 100.0(34) | 2.9 |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부모 | 3.0 | 17.4 | 65.3 | 14.4 | 100.0(167) | 2.9 | 5.9 | 11.8 | 52.9 | 29.4 | 100.0(34) | 3.1 |
| 컨설턴트 | | | | | | | | | | | | |
| 전현직 보육정보센터장 및 평가인증담당 보육전문요원 | 2.4 | 6.0 | 74.3 | 17.4 | 100.0(166) | 3.1 | 5.9 | 5.9 | 47.1 | 41.2 | 100.0(34) | 3.2 |
| 전직 보육정보센터 영양사, 컨설턴트 | 2.4 | 14.4 | 74.3 | 9.0 | 100.0(166) | 2.9 | | 29.4 | 50.0 | 20.6 | 100.0(34) | 2.9 |
| 전직 보육교사, 원장으로 평가인증 1회이상 수행자로 인증접수 90점 이상인 자 | 2.4 | 20.5 | 68.7 | 8.4 | 100.0(166) | 2.8 | 2.9 | 32.4 | 38.2 | 26.5 | 100.0(34) | 2.9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모모니터링에 관한 보육공무원·보육관계자 조사」 결과임.

앞서 살펴본 부모모니터링단 선정요건의 적절성을 보육공무원 및 보육정보센터 소재 지역별로 살펴보았다. 보육전문가 선정 요건 중 보육현장근무경력 3년 이상과 전현직보육정보센터 전문요원 컨설턴트 1년 이상만 보육공무원 담당 지역규모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보육현장근무경력 3년 이상인자는 읍면지역일수록 적절하다는 정도가 높고, 보육전문요원 및 컨설턴트 1년 이상 자격은 도시일수록 높았다. 컨설턴트 자격 중 전·현직 보육교사 및 원장의 평가인증 경력도 읍면지역일수록 적절성 점수가 높다.

〈표 III-1-5〉 부모모니터링단 선정요건의 적절성

단위: %(명)

| 구분 | 보육전문가 | | | | 부모 | | 컨설턴트 | | | (수) |
|--------|----------------------------------|--|---|---|--|--|--|--|---|-------|
| | 보육 현장 근무 경력 3년 이상 | 보육 정책 위원 중 어린 집 근무 경력 | 평가인 증 관찰자 경력 1년 이상, 활동 중 단 후 1년 경과 | 전 현 직 보 육 정 보 센 터 전 문 요 원 1 년 이 상 | 현 재 어 린 집 영 유 아 부 모 | 어 린 집 이 용 운 영 위 원 회 부 모 | 전 현 직 보 육 정 보 센 터 장 평 가 인 증 당 담 보 육 전 문 요 원 | 전 직 보 육 정 보 센 터 영 양 사, 컨 설 턴 트 | 전 직 보 육 교 사, 원 장 평 가 인 증 1 회 이 상, 인 증 점 수 90 점 이 상 | |
| 보육공무원 | | | | | | | | | | |
| 전체 | 2.9 | 2.7 | 2.6 | 2.7 | 3.0 | 2.9 | 3.1 | 2.9 | 2.8 | (166) |
| 대도시 | 2.9 | 2.6 | 2.5 | 2.7 | 3.0 | 2.8 | 3.0 | 2.8 | 2.7 | (46) |
| 중소도시 | 2.8 | 2.7 | 2.7 | 2.8 | 3.1 | 3.0 | 3.1 | 2.9 | 2.8 | (62) |
| 읍면지역 | 3.1 | 2.8 | 2.5 | 2.5 | 3.0 | 2.9 | 3.1 | 2.9 | 3.0 | (58) |
| F | 2.6 [#] | 0.5 | 1.7 | 2.7 [#] | 0.4 | 1.0 | 0.2 | 1.3 | 2.5 [#] | |
| 보육정보센터 | | | | | | | | | | |
| 전체 | 3.0 | 2.9 | 3.1 | 3.2 | 2.9 | 3.1 | 3.2 | 2.9 | 2.9 | (34) |
| 시도 | 2.7 | 2.8 | 2.9 | 3.3 | 2.9 | 2.9 | 3.3 | 2.9 | 3.0 | (15) |
| 시군구 | 3.2 | 3.0 | 3.2 | 3.2 | 3.0 | 3.2 | 3.2 | 2.9 | 2.8 | (19) |
| t | -1.6 | -0.9 | -0.9 | 0.5 | -0.5 | -0.8 | 0.2 | -0.3 | 0.7 |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모모니터링에 관한 보육공무원·보육관계자 조사」 결과임.

$p < .1$

부모요원 선정요건에 대한 부모 면담에서 선발과정이 서류로만 진행되어 모니터링 활동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한 부모들이 일부 선발된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경우, 이탈할 가능성이 높고 방문한 어린이집 정보를 인터넷 블로그 등에 게시하는 등 물의를 일으켜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부모들까지 자질 부족 문제를 지적받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차년도 부모요원 선발 시 선발 과정에 면접을 포함시켜 부모모니터링단 신청 동기나 책임감, 인성, 태도 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하였다.

2) 추가 선정자격

부모모니터링 운영지침에서 제시한 선정자격 외에 부모요원과 보육전문가로 추가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보육근무경력을 3년 이하로 하향 조정, 5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답하여 선정자격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였다. 기타 의견으로 보육현장 의미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부록 표 III-1-1 참조).

부모 선정자격으로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 경험이 있는 부모에 대한 의

견이 가장 많았고, 부모 중 보육전공자나 영유아를 양육하거나 양육경험이 있는 부모 등을 제안하였다(부록 표 III-1-2 참조).

컨설턴트 추가 자격으로 보육 관련학과 교수나 보육현장 근무경력자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부록 표 III-1-3 참조).

3) 보건 전문가

영유아보육법의 부모모니터링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항을 살펴보면, 부모모니터링단 구성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부모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육·보건전문가로 한정하고 있다. 아직 보건전문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이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보육공무원과 보육정보센터 담당자 의견을 정리하면 보건, 영양, 의료 3개 전공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보건분야는 보건 관련근무 경력자가 다빈도이며 경력도 3년 이상이 많았다. 영양 분야는 영양사 자격증 소지자, 의료 분야는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의 의료관련 업무 종사자나 자격증 소지자가 많았다.

〈표 III-1-6〉 보건전문가 자격 요건

| 구분 | 빈도 | 구분 | 빈도 |
|-----------------|------|-------------------------------|------|
| 보건 관련 | | 의료 관련 | |
| 보건관련 학과 졸업자 | 5 | 의료관련 업무 종사자(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 23 |
| 보건관련 자격증 소지자 | 4 | 어린이집 근무경력 간호사, 간호조무사 | 7 |
| 보건관련 학과 교수 | 2 | 의료 관련 자격증 소지자 | 16 |
| 보건근무경력자(3년, 5년) | 15 | 의료관련 업무 경력자(1, 2, 3, 5년) | 15 |
| (계) | (26) | (계) | (61) |
| 영양 관련 | | | |
| 영양사 자격증 소지자 | 19 | | |
| 영양사 근무 경력 3년 이상 | 2 | | |
| 영양관련 교사, 교수 | 2 | | |
| 시,군 보건소 위생담당자 | 1 | | |
| (계) | (24) | |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모모니터링에 관한 보육공무원·보육관계자 조사」 결과임.

라. 교육

앞서 살펴본 선정요건에 따라 선출된 부모모니터링단은 활동 전에 사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조사지역 중 94%가 사전교육을 실시하였고, 횟수는

평균 1.1회이다. 지역규모별로는 도시지역이 읍면지역보다 사전교육 실시 비율이 높다.

모니터링단 교체 인력 발생 시 교육 실시 및 방법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표 III-1-7>와 같이, 신규 인력 발생 시마다 사전교육을 실시한다는 비율이 40% 정도이고, 23.6%는 일정 수의 신규인력이 모이면 교육하며, 소수이나 일부 지역은 월 또는 분기, 반기마다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였다. 부모모니터링단 규모가 큰 도시지역은 신규인력 발생시마다 교육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고, 읍면지역은 일정 인원이 모이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표 III-1-7> 사전교육 실시 여부 및 교체인력에 대한 교육

단위: %(명)

| 구분 | 사전교육 | | | 모니터링단 인력 교체에 따른 교육 실시 여부 | | | | |
|------|------|-------|-----|--------------------------|--------------|------------------------|------|-------|
| | 실시 | (수) | 평균 | 신규 인력 발생 시마다 교육 | 일정 인원 모이면 교육 | 정기적(월별, 분기, 반기 등)으로 교육 | 기타 | (수) |
| 전체 | 94.0 | (167) | 1.1 | 40.7 | 23.6 | 6.5 | 29.3 | (123) |
| 대도시 | 97.8 | (46) | 1.0 | 51.5 | 18.2 | 3.0 | 27.3 | (33) |
| 중소도시 | 95.2 | (63) | 1.1 | 38.0 | 18.0 | 14.0 | 30.0 | (50) |
| 읍면지역 | 89.7 | (58) | 1.1 | 35.0 | 35.0 | - | 30.0 | (40) |
| F | | | 1.7 | | | | |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모모니터링에 관한 보육공무원 조사」 결과임.

부모모니터링단 심층면담에서 보육전문가는 사전교육이 충분하다고 보았으나 부모는 교육내용이나 질의응답 시간이 충분하지 못하여 불만족스럽다는 의견이 많아서 집단 간에 차이를 보였다. 또한 부모들은 사전실습이 대집단으로 진행되어 효과가 적다는 의견도 있었다.

현재 부모모니터링단 대상의 보수교육은 의무화되어 있지 않으나 일부 지역에서 모니터링단의 전문성 역량 강화를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 현황을 살펴보면 <표 III-1-8>과 같다.

보수교육을 실시하였다는 비율은 20% 미만 수준이며, 실시한 경우에도 주로 소그룹 교육으로 실시되고 일부만 대집단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지역별로는 대도시가 다른 지역보다 실시하는 비율이 높고, 읍면지역이 소그룹이나 대집단 교육 운영 비율이 높고, 도시 지역은 기타 방법을 주로 이용하고 있었다. 대집단 교육 시 실시횟수는 평균 1.5회, 소집단 교육 평균 1.6회로 보수교육을 1회 이상 실시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시 횟수는 지역간에 유의한

차이 없이 1~2회 정도로 비슷한 수준이다.

〈표 III-1-8〉 보수교육 방법 및 실시횟수

단위: %(명)

| 구분 | 보수교육 | | | | | 대집단교육 | | 소집단교육 | |
|------|-------------|-----------|-----|------------|------------|-------|------|-------|------|
| | 대집단 집합교육 | 소그룹 교육 | 기타 | 실시하지 않음 | 계(수) | 평균 | (수) | 평균 | (수) |
| 전체 | 8.4 | 14.5 | 4.8 | 72.3 | 100.0(166) | 1.5 | (17) | 1.6 | (14) |
| 대도시 | 8.9 | 11.1 | 8.9 | 71.1 | 100.0(45) | 1.2 | (5) | 1.7 | (3) |
| 중소도시 | 6.3 | 15.9 | 4.8 | 73.0 | 100.0(63) | 2.0 | (6) | 2.2 | (6) |
| 읍면지역 | 10.3 | 15.5 | 1.7 | 72.4 | 100.0(58) | 1.2 | (6) | 1.0 | (5)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모모니터링에 관한 보육공무원 조사」 결과임.

다음은 정기적인 보수교육의 필요성 및 보수교육 실시주기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정기적인 보수교육 실시가 필요한지에 대해 대체로 필요가 62.9%, 매우 필요가 13.2%로 70%가 넘는 과반수가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고, 필요정도는 4점 척도로 평균 2.9점으로 높은 편이다.

보육공무원의 의견을 보면, 보수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지역 차이없이 전반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보육정보센터 담당자는 보육공무원보다 높은 비율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이 또한 지역 간에 차이는 없다.

〈표 III-1-9〉 보수교육의 필요성 및 보수교육 실시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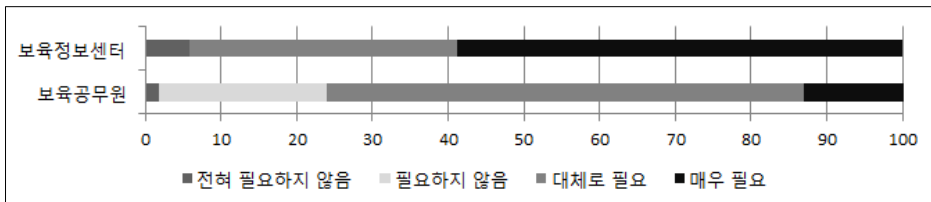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 보수교육의 필요성 | | | | | 보수교육 실시 주기 | | | | | (수) |
|--------|----------------------|----------------|-----------|----------|-----|------------|------|------|-----|------|-------|
| | 전혀 필요하 지 않음 | 필요하 지 않음 | 대체로 필요 | 매우 필요 | 평균 | 분기 | 반기 | 매월 | 상시 | 기타 | |
| 보육공무원 | | | | | | | | | | | |
| 전체 | 1.8 | 22.2 | 62.9 | 13.2 | 2.9 | 22.2 | 66.7 | 2.4 | 3.2 | 5.6 | (126) |
| 대도시 | 4.3 | 19.6 | 67.4 | 8.7 | 2.8 | 18.9 | 78.4 | - | 2.7 | - | (37) |
| 중소도시 | - | 23.8 | 58.7 | 17.5 | 2.9 | 34.7 | 49.0 | 6.1 | 4.1 | 6.1 | (49) |
| 읍면지역 | 1.7 | 22.4 | 63.8 | 12.1 | 2.9 | 10.0 | 77.5 | - | 2.5 | 10.0 | (40) |
| F | | | | | 0.6 | | | | | | |
| 보육정보센터 | | | | | | | | | | | |
| 전체 | 5.9 | - | 35.3 | 58.8 | 3.5 | 42.4 | 45.5 | 9.1 | - | 3.0 | (33) |
| 시도 | 6.7 | - | 26.7 | 66.7 | 3.5 | 57.1 | 42.9 | - | - | - | (14) |
| 시군구 | 5.3 | - | 42.1 | 52.6 | 3.4 | 31.6 | 47.4 | 15.8 | - | 5.3 | (19) |
| t | | | | | 0.4 | | | | | |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모모니터링에 관한 보육공무원·보육관계자 조사」 결과임.

보수교육을 실시할 경우 그 주기에 대해 보육공무원은 66.7%가 반기, 22.2% 분기가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대도시와 읍면지역은 반기가 월등히 높는데 반해 중소도시는 반기와 분기가 49%, 34.7%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육정보센터 담당자는 반기와 분기가 45.5%, 42.4%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고, 매월도 9.1% 정도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시도는 분기가 많은데 반해, 시군구는 반기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시군구 응답자 중 15.8%는 매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림 III-1-2] 보수교육의 필요성

2. 부모모니터링 운영

가. 운영주체의 적절성

부모모니터링 사업 운영은 시도 및 시군구가 담당하고 있고, 교육과 컨설팅 담당자 파견은 대부분 해당 지역을 담당하는 보육정보센터에서 맡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사업운영 및 교육업무 전반을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 위탁하고 있다.

<표 III-2-1>은 사업운영 및 교육, 컨설팅 운영 주체로 적합한 담당기관을 나타낸다. 보육공무원은 운영, 교육, 컨설팅 운영주체로 보육정보센터를 지정한 비율이 가장 높고, 보육정보센터 담당자는 운영은 시군구, 교육과 컨설팅은 보육정보센터가 적절하다고 보았다.

지역별로 보면, 보육공무원은 전체 응답비율과 유사한 경향성을 나타내었고, 특히 대도시는 운영주체로 적합한 기관으로 별도 보육관련 공공기관을 선택하였다. 보육정보센터도 지역차가 크지 않으나 읍면지역은 교육과 컨설팅 운영주체로 시군구를 선택한 비율이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III-2-1〉 사업별 운영 주체

단위: %(명)

| 구분 | 운영 | | | | 교육 | | | | | 컨설팅 | | | | | (수) |
|--------|------|------|----------------------------|----------------|------|------|----------------------------|----------------|-----|-----|------|----------------------------|----------------|-----|-------|
| | 시도 | 시군구 | 별도 보육 관련 공공 기관 | 보육 정보 센터 | 시도 | 시군구 | 별도 보육 관련 공공 기관 | 보육 정보 센터 | 기타 | 시도 | 시군구 | 별도 보육 관련 공공 기관 | 보육 정보 센터 | 기타 | |
| 보육공무원 | | | | | | | | | | | | | | | |
| 전체 | 12.6 | 25.7 | 23.4 | 38.3 | 5.4 | 2.4 | 10.8 | 80.8 | 0.6 | 5.4 | 2.4 | 10.8 | 80.8 | 0.6 | (167) |
| 대도시 | 10.9 | 28.3 | 37.0 | 23.9 | 6.5 | 4.3 | 17.4 | 71.7 | - | 6.5 | 4.3 | 17.4 | 71.7 | - | (46) |
| 중소도시 | 12.7 | 22.2 | 17.5 | 47.6 | 4.8 | 1.6 | 3.2 | 88.9 | 1.6 | 4.8 | 1.6 | 3.2 | 88.9 | 1.6 | (63) |
| 읍면지역 | 13.8 | 27.6 | 19.0 | 39.7 | 5.2 | 1.7 | 13.8 | 79.3 | - | 5.2 | 1.7 | 13.8 | 79.3 | - | (58) |
| 보육정보센터 | | | | | | | | | | | | | | | |
| 전체 | 17.6 | 67.6 | 2.9 | 11.8 | 5.9 | 14.7 | 2.9 | 76.5 | - | 2.9 | 17.6 | 2.9 | 76.5 | - | (33) |
| 시도 | 33.3 | 46.7 | - | 20.0 | - | 6.7 | - | 93.3 | - | - | 6.7 | - | 93.3 | - | (14) |
| 시군구 | 5.3 | 84.2 | 5.3 | 5.3 | 10.5 | 21.1 | 5.3 | 63.2 | - | 5.3 | 26.3 | 5.3 | 63.2 | - | (19) |

본 연구를 위한 「부모모니터링에 관한 보육공무원·보육관계자 조사」 결과임.

나. 예산

1) 시도별 예산 규모

부모모니터링 사업예산은 2013년 6억 4,400만원(국비기준)이며, 2014년에는 12억 8,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0% 인상된다.

16개 시도의 2013년 예산을 조사한 결과, 경기도가 380,563천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서울, 경남, 경북 순이다.

〈표 III-2-2〉 시도별 부모모니터링 예산

단위: 천원

| 구분 | 예산 | | 구분 | 예산 | |
|----|---------|------|----|-----------|-------|
| | 배정액 | 비율 | | 배정액 | 비율 |
| 서울 | 197,402 | 15.7 | 강원 | 34,892 | 2.8 |
| 부산 | 55,060 | 4.4 | 충북 | 35,754 | 2.9 |
| 대구 | 48,492 | 3.9 | 충남 | 51,382 | 4.1 |
| 인천 | 43,784 | 3.5 | 전북 | 49,442 | 3.9 |
| 광주 | 37,842 | 3.0 | 전남 | 42,052 | 3.4 |
| 대전 | 50,456 | 4.0 | 경북 | 72,831 | 5.8 |
| 울산 | 27,008 | 2.2 | 경남 | 109,038 | 8.7 |
| 경기 | 380,563 | 30.4 | 제주 | 17,556 | 1.4 |
| | | | 전체 | 1,253,554 | 100.0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시군구 부모모니터링 운영현황 조사」(2013년 6월 말 기준) 결과임.

2) 예산편성 조정의 필요성

앞서 살펴본 예산은 부모모니터링단 수당과 사전교육 1회만 인정되어 사업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차년도 사업을 위한 예산 편성 시 어떠한 항목의 예산이 필요한지 조사하였다.

보육공무원은 부모모니터링단 수당 증액이 32.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부모모니터링단 교육 예산이 22.2%를 차지한다. 예산이 필요없다는 의견도 29.9%로 높아 예산 편성 조정에 대한 의견 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도 수당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높은 응답비율을 차지하였다.

보육정보센터 담당자들은 공무원보다 교육예산 증액에 대한 의견이 많고, 이외에도 보육정보센터 담당인력 수당, 부모모니터링단 수당 등에 대한 의견도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III-2-3〉 예산 편성 조정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 필요 없음 | 교육 예산 | 보육정보센터 담당인력 수당 | 부모모니터링단 수당 증액 | 기타 | 계(수) |
|--------|-------|-------|----------------|---------------|------|------------|
| 보육공무원 | | | | | | |
| 전체 | 29.9 | 22.2 | 6.6 | 32.3 | 9.0 | 100.0(167) |
| 대도시 | 32.6 | 13.0 | 10.9 | 28.3 | 15.2 | 100.0(46) |
| 중소도시 | 27.0 | 30.2 | 6.3 | 30.2 | 6.3 | 100.0(63) |
| 읍면지역 | 31.0 | 20.7 | 3.4 | 37.9 | 6.9 | 100.0(58) |
| 보육정보센터 | | | | | | |
| 전체 | 5.9 | 29.4 | 26.5 | 23.5 | 14.7 | 100.0(34) |
| 시도 | - | 26.7 | 33.3 | 20.0 | 20.0 | 100.0(15) |
| 시군구 | 10.5 | 31.6 | 21.1 | 26.3 | 10.5 | 100.0(19)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모모니터링에 관한 보육공무원·보육관계자 조사」 결과임.

심층면담에서 보육정보센터 담당자와 각 지역 운영 담당자는 2013년 모니터링단의 예산 편성이 매우 경직되어서 보수교육, 교통비 지급, 컨설팅 운영 등의 운영이 원활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차년도 예산 편성 시 이러한 항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다. 사업 시작시기

<표 III-2-4>는 부모모니터링단이 사업을 시작한 시기를 나타낸다. 지역에 따

라 부모모니터링 사업을 시작한 시기가 다소 차이를 보여, 5월에 시작한 지역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3, 4월이 많다. 부모모니터링단을 구성하였어도 담당인력 부족, 해당 지역 어린이집의 반발 등의 이유로 2013년 하반기에 사업을 착수한 곳도 많았다.

〈표 III-2-4〉 부모모니터링 활동 시작시기

단위: 시군구(%)

| 구분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준비중 | 전체 |
|------|-------|--------|--------|--------|--------|--------|---------|
| 시군구 | 4 | 39 | 41 | 63 | 25 | 58 | 230 |
| (비율) | (1.7) | (17.0) | (17.8) | (27.4) | (10.9) | (25.2) | (100.0) |

주: 준비중은 미구성지역과 구성하였으나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곳 포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시군구 부모모니터링 운영현황 조사」(2013년 6월 말 기준) 결과임.

라. 부모모니터링 대상 선정기준

<표 III-2-5>는 부모모니터링 어린이집 선정기준을 나타낸다. 부모모니터링 운영 지침에 따라 지도점검 시정명령·행정처분 어린이집을 우선 선정한다는 응답이 38.3%로 가장 높았다. 무작위 선정도 29.9%로 높은 편이다. 기타 의견으로 장기 미점검 시설, 평가인증 미인증 시설, 혹은 우수 평가인증 시설 등 자체적으로 기준을 설정하는 지역도 많았다.

지역규모별로도 지도점검·시정명령·행정처분 어린이집 우선 선정, 무작위 선정 순이다. 특히 읍면지역은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우선 선정한다는 비율이 12.1%로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표 III-2-5〉 부모모니터링 대상 선정기준

단위: %(명)

| 구분 | 무작위 선정 | 지도점검 시정명령·행정처분 어린이집 우선 선정 | 민간, 가정 어린이집 우선 선정 | 어린이집 연합회 추천 어린이집 선정 |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선정 | 기타 | 계(수) |
|------|--------|---------------------------|-------------------|---------------------|----------------|------|------------|
| 전체 | 29.9 | 38.3 | 7.8 | 0.6 | 1.2 | 22.2 | 100.0(167) |
| 대도시 | 28.3 | 45.7 | 2.2 | - | - | 23.9 | 100.0(46) |
| 중소도시 | 31.7 | 36.5 | 7.9 | - | 1.6 | 22.2 | 100.0(63) |
| 읍면지역 | 29.3 | 34.5 | 12.1 | 1.7 | 1.7 | 20.7 | 100.0(58)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모모니터링에 관한 보육공무원 조사」 결과임.

마. 사업 운영

1) 사업운영의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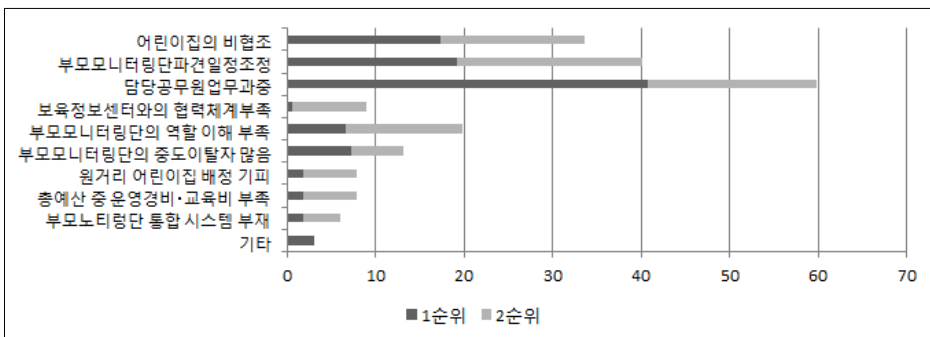
<표 III-2-6>은 담당 공무원의 부모모니터링 사업운영의 어려움을 나타낸다. 어려움을 1, 2순위로 조사한 결과, 1순위로 담당 공무원의 업무과중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고, 다음으로 부모모니터링단 파견 일정 조정과 어린이집의 비협조가 17~19%, 나머지는 10% 미만 수준이다. 2순위로는 부모모니터링단의 파견일정조정이 가장 많고, 담당 공무원의 업무 과중과 어린이집의 비협조, 부모모니터링단의 역할이해 부족을 들었다.

<표 III-2-6> 부모모니터링 사업운영의 어려움

단위: %(명)

| 구분 | 어린이 집의 비협조 | 부모모 니터링 단파견 일정 조정 | 담당 공무원 업무 과중 | 보육정 보센터 와의 협력 체계 부족 | 부모모 니터링 단의 역할 이해 부족 | 부모모 니터링 단의 중도이 탈자 많음 | 원거리 어린이 집배 정기 피 | 총예산 중운영 경비· 교육비 부족 | 부모 모니 터링 단 통합 시스 템 부재 | 기 타 | 계(수) |
|-------|------------------|-------------------------------|-----------------------|------------------------------------|------------------------------------|-------------------------------------|-----------------------------|--------------------------------|--|--------|------------|
| 1순위 | 17.4 | 19.2 | 40.7 | 0.6 | 6.6 | 7.2 | 1.8 | 1.8 | 1.8 | 3.0 | 100.0(167) |
| 2순위 | 16.2 | 21.0 | 19.2 | 8.4 | 13.2 | 6.0 | 6.0 | 6.0 | 4.2 | - | 100.0(167) |
| 1+2순위 | 33.6 | 40.2 | 59.9 | 9.0 | 19.8 | 13.2 | 7.8 | 7.8 | 6.0 | 3.0 |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모모니터링에 관한 보육공무원 조사」 결과임.



[그림 III-2-1] 부모모니터링 사업운영의 어려움

1순위 응답을 지역별로 보면, 담당공무원의 업무과중이 가장 많고, 읍면지역일수록 그 비율이 높다. 부모모니터링단 중도이탈자 발생은 대도시가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높다.

〈표 III-2-7〉 부모모니터링 사업운영의 어려움: 1순위

단위: %(명)

| 구분 | 어린이 집협조 | 부모모 니터링 단의 과일 조정 | 담당(공 무원) 업무 과중 | 보육정 보센터 와의 협력 부족 | 부모모 니터링 단의 역할 해부 족 | 부모모 니터링 단 중도 이탈 자 많음 | 원거리 어린이 집정 과 | 총예 산영 중비 및 교 육비 부족 | 부모 모니 터링 단 통 합 시 스 템 부 재 | 기타 | 계(수) |
|------|------------|------------------------------|-------------------------|------------------------------|-----------------------------------|--|-----------------------|--------------------------------------|--|-----|------------|
| 전체 | 17.4 | 19.2 | 40.7 | 0.6 | 6.6 | 7.2 | 1.8 | 1.8 | 1.8 | 3.0 | 100.0(167) |
| 대도시 | 17.4 | 17.4 | 30.4 | - | 8.7 | 13.0 | - | 2.2 | 2.2 | 8.7 | 100.0(46) |
| 중소도시 | 23.8 | 19.0 | 39.7 | - | 6.3 | 4.8 | 1.6 | 3.2 | 1.6 | - | 100.0(63) |
| 읍면지역 | 10.3 | 20.7 | 50.0 | 1.7 | 5.2 | 5.2 | 3.4 | - | 1.7 | 1.7 | 100.0(58)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모모니터링에 관한 보육공무원 조사」 결과임.

〈표 III-2-8〉 부모모니터링 사업운영의 어려움: 2순위

단위: %(명)

| 구분 | 어린이 집협조 | 부모모 니터링 단의 과일 조정 | 담당(공 무원) 업무 과중 | 부모모 니터링 단의 역할 해부 족 | 부모모 니터링 단 중도 이탈 자 많음 | 원거리 어린이 집정 과 | 총예 산영 중비 및 교 육비 부족 | 부모 모니 터링 단 통 합 시 스 템 부 재 | 기타 | 계(수) |
|------|------------|------------------------------|-------------------------|-----------------------------------|--|-----------------------|--------------------------------------|--|-----|------------|
| 전체 | 16.2 | 21.0 | 19.2 | 8.4 | 13.2 | 6.0 | 6.0 | 6.0 | 4.2 | 100.0(167) |
| 대도시 | 19.6 | 23.9 | 21.7 | 10.9 | 6.5 | 4.3 | 4.3 | 4.3 | 4.3 | 100.0(46) |
| 중소도시 | 15.9 | 20.6 | 14.3 | 6.3 | 19.0 | 3.2 | 7.9 | 7.9 | 4.8 | 100.0(63) |
| 읍면지역 | 13.8 | 19.0 | 22.4 | 8.6 | 12.1 | 10.3 | 5.2 | 5.2 | 3.4 | 100.0(58)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모모니터링에 관한 보육공무원 조사」 결과임.

모니터링단 운영 담당자 심층면담에서 시군구 보육담당자의 지표 이해 부족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육정보센터 중심의 운영, 또는 시군구와 보육정보센터의 긴밀한 관계구축 형성의 필요성 등을 제안하였다.

2)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현재 부모모니터링단은 시도 및 시군구가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이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운영체계가 전무하다. 부모모니터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조사한 결과 필요가 61.7%, 매우 필요 6%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67.7%로 과반수를 차지한다. 필요정도도 평균 2.7점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표 III-2-9 참조).

보육정보센터 담당자는 필요하다는 비율이 90% 이상으로 공무원보다 필요성에 더 인식하고 있었다. 필요정도도 평균 3.2점으로 높다.

〈표 III-2-9〉 부모모니터링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 전혀 필요없음 | 필요없음 | 필요 | 매우 필요 | 계(수) | 평균 |
|---------------|---------|------|------|-------|------------|-----|
| 보육공무원 | | | | | | |
| 전체 | 1.2 | 31.1 | 61.7 | 6.0 | 100.0(167) | 2.7 |
| 대도시 | - | 28.3 | 65.2 | 6.5 | 100.0(46) | 2.8 |
| 중소도시 | 1.6 | 31.7 | 57.1 | 9.5 | 100.0(63) | 2.7 |
| 읍면지역 | 1.7 | 32.8 | 63.8 | 1.7 | 100.0(58) | 2.7 |
| <i>F</i> | | | | | | 0.7 |
| 보육정보센터 | | | | | | |
| 전체 | - | 8.8 | 61.8 | 29.4 | 100.0(34) | 3.2 |
| 시도 | - | 6.7 | 53.3 | 40.0 | 100.0(15) | 3.3 |
| 시군구 | - | 10.5 | 68.4 | 21.1 | 100.0(19) | 3.1 |
| <i>t</i> | | | | | | 1.3 |

본 연구를 위한 「부모모니터링에 관한 보육공무원 조사」 결과임.

3) 운영 매뉴얼의 충분성

부모모니터링 사업운영 매뉴얼의 충분성에 대해 살펴본 결과, 보육공무원은 부족하다는 의견이 26.9% 정도이고, 특히 중소도시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보육정보센터 담당자는 64.7%가 부족하다고 응답하여 보육공무원과 대조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시도 담당자의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표 III-2-10〉 부모모니터링 매뉴얼의 충분성

단위: %(명)

| 구분 | 보육공무원 | | | | 보육정보센터 | | | | |
|------|-------|------|-----|------------|--------|------|------|----|-----------|
| | 부족 | 적절 | 충분 | 계(수) | 구분 | 부족 | 적절 | 충분 | 계(수) |
| 전체 | 26.9 | 66.5 | 6.6 | 100.0(167) | 전체 | 64.7 | 35.3 | - | 100.0(34) |
| 대도시 | 21.7 | 71.7 | 6.5 | 100.0(46) | 시도 | 73.3 | 26.7 | - | 100.0(15) |
| 중소도시 | 36.5 | 54.0 | 9.5 | 100.0(63) | 시군구 | 57.9 | 42.1 | - | 100.0(19) |
| 읍면지역 | 20.7 | 75.9 | 3.4 | 100.0(58) | | | | | |

본 연구를 위한 「부모모니터링에 관한 보육공무원 조사」 결과임.

<표 III-2-11>, <표 III-2-12>은 운영 매뉴얼 개정 시 추가할 내용을 1, 2순위로 조사한 결과이다. 보육공무원의 경우, 운영 매뉴얼 추가 내용 1순위로 주요 상황별 FAQ와 50개 문항에 대한 설명이 28.3%, 26.1%로 높고, 부모모니터링단 역할 및 진행순서, 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 방법이 10%대, 나머지는 5% 내외 수준이다. 2순위는 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 방법과 주요 상황별 FAQ, 50개 문항에 대한 설명이 20%대로 많았다.

보육정보센터 담당자는 보육공무원과 다르게 1순위로 50개 문항에 대한 설명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다음으로 주요 상황별 FAQ, 부모모니터링단 역할 및 진행순서이다. 2순위로는 주요 상황별 FAQ, 50개 문항 설명 순으로 높았다.

〈표 III-2-11〉 운영매뉴얼 추가 내용: 1+2순위

단위: %(명)

| 구분 | 부모모니터링단 역할 및 진행 순서 | 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 방법 | 컨설팅 방법 | 50개 문항에 대한 설명 | 주요 상황별 FAQ | 기타 | 계(수) |
|---------------|--------------------------|------------------------|-----------|---------------------|------------------|-----|-----------|
| 보육공무원 | | | | | | | |
| 1순위 | 17.4 | 19.6 | 6.5 | 26.1 | 28.3 | 2.2 | 100.0(46) |
| 2순위 | 8.9 | 28.9 | 6.7 | 24.4 | 28.9 | 2.2 | 100.0(45) |
| 1+2순위 | 26.3 | 48.5 | 13.2 | 50.5 | 57.2 | 4.4 | |
| 보육정보센터 | | | | | | | |
| 1순위 | 13.6 | 4.5 | 4.5 | 54.5 | 18.2 | 4.5 | 100.0(34) |
| 2순위 | 4.8 | 9.5 | 9.5 | 23.8 | 52.4 | - | 100.0(34) |
| 1+2순위 | 18.4 | 14.0 | 14 | 78.3 | 70.6 | 4.5 |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모모니터링에 관한 보육공무원·보육관계자 조사」 결과임.

운영매뉴얼 추가 필요 사항 1순위를 지역별로 살펴보았다. 보육공무원의 의견을 보면, 대도시와 읍면지역은 주요상황별 FAQ가 가장 필요한 내용으로 인식되었으나 중소도시에서는 문항설명을 선택하여 지역 간에 차이를 보인다. 보육정보센터 담당자의 경우 지역에 관계없이 50개 문항에 대한 설명이 가장 많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시군구 담당자는 주요 상황별 FAQ, 시도는 부모모니터링단의 역할 및 진행순서가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표 III-2-12〉 운영매뉴얼 추가 내용: 1순위

단위: %(명)

| 구분 | 부모모니터링단 역할 및 진행 순서 | 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 방법 | 컨설팅 방법 | 50개 문항에 대한 설명 | 주요 상황별 FAQ | 기타 | 계(수) |
|---------------|--------------------------|------------------------|-----------|---------------------|------------------|-----|-----------|
| 보육공무원 | | | | | | | |
| 전체 | 17.4 | 19.6 | 6.5 | 26.1 | 28.3 | 2.2 | 100.0(46) |
| 대도시 | 27.3 | 9.1 | 9.1 | 18.2 | 36.4 | - | 100.0(11) |
| 중소도시 | 8.7 | 26.1 | 4.3 | 34.8 | 26.1 | - | 100.0(23) |
| 읍면지역 | 25.0 | 16.7 | 8.3 | 16.7 | 25.0 | 8.3 | 100.0(12) |
| 보육정보센터 | | | | | | | |
| 전체 | 13.6 | 4.5 | 4.5 | 54.5 | 18.2 | 4.5 | 100.0(34) |
| 시도 | 18.2 | - | 9.1 | 54.5 | 9.1 | 9.1 | 100.0(15) |
| 시군구 | 9.1 | 9.1 | - | 54.5 | 27.3 | - | 100.0(19)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모모니터링에 관한 보육공무원·보육관계자 조사」 결과임.

〈표 III-2-13〉 운영매뉴얼 추가 내용: 2순위

단위: %(명)

| 구분 | 부모모니터링 단 역할 및 진행 순서 | 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 방법 | 컨설팅 방법 | 50개 문항에 대한 설명 | 주요 상황별 FAQ | 기타 | 계(수) |
|--------|---------------------------|------------------------|-----------|---------------------|------------------|-----|-----------|
| 보육공무원 | | | | | | | |
| 전체 | 8.9 | 28.9 | 6.7 | 24.4 | 28.9 | 2.2 | 100.0(45) |
| 대도시 | 18.2 | 45.5 | 9.1 | 9.1 | 18.2 | - | 100.0(11) |
| 중소도시 | 4.3 | 26.1 | 4.3 | 34.8 | 26.1 | 4.3 | 100.0(23) |
| 읍면지역 | 9.1 | 18.2 | 9.1 | 18.2 | 45.5 | - | 100.0(11) |
| 보육정보센터 | | | | | | | |
| 전체 | 4.8 | 9.5 | 9.5 | 23.8 | 52.4 | - | 100.0(34) |
| 시도 | - | - | 9.1 | 18.2 | 72.7 | - | 100.0(15) |
| 시군구 | 10.0 | 20.0 | 10.0 | 30.0 | 30.0 | - | 100.0(19)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모모니터링에 관한 보육공무원·보육관계자 조사」 결과임.

4) 사업 홍보의 충분성

부모모니터링단 사업 초기 지표가 공개되지 않고, 사업 운영에 대한 안내가 충분하지 않아 현장에서는 반발이 심하였다. 사업 홍보 및 안내의 충분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부족하다는 의견이 40.7%로 높은 편이었다. 충분성 정도는 5점 평균 2.7점으로 보통 수준이다.

지역규모별로 전체 응답과 큰 차이는 없으나 중소도시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표 III-2-14 참조).

〈표 III-2-14〉 사업 홍보 및 안내의 충분성

단위: %(명)

| 구분 | 매우 부족 | 부족 | 보통 | 충분 | 매우 충분 | 계(수) | 평균 |
|----------|-------|------|------|------|-------|------------|------|
| 보육공무원 | | | | | | | |
| 전체 | 9.6 | 31.1 | 43.1 | 13.2 | 3.0 | 100.0(167) | 2.7 |
| 대도시 | 2.2 | 34.8 | 34.8 | 23.9 | 4.3 | 100.0(46) | 2.9 |
| 중소도시 | 15.9 | 27.0 | 46.0 | 6.3 | 4.8 | 100.0(63) | 2.6 |
| 읍면지역 | 8.6 | 32.8 | 46.6 | 12.1 | - | 100.0(58) | 2.6 |
| <i>F</i> | | | | | | | 2.3 |
| 보육정보센터 | | | | | | | |
| 전체 | 23.5 | 58.8 | 17.6 | - | - | 100.0(34) | 1.9 |
| 시도 | 33.3 | 53.3 | 13.3 | - | - | 100.0(15) | 1.8 |
| 시군구 | 15.8 | 63.2 | 21.1 | - | - | 100.0(19) | 2.1 |
| <i>t</i> | | | | | | | -1.1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모모니터링에 관한 보육공무원·보육관계자 조사」 결과임.

한편, 보육정보센터 담당자는 공무원과 달리 부족하다는 의견이 82.3%로 과반수를 차지하여 사업 홍보 및 안내가 매우 부족하였다는 의견이 전반적이다. 충분성 정도도 5점 평균 1.9점으로 낮은 편이다.

바. 부모요원 이탈과 충원

<표 III-2-15>는 초기 모집된 부모요원 중 활동 중에 이탈한 비율과 충원률을 나타낸다. 부모요원 이탈이 없다는 지역이 절반 정도이고 나머지 24.6%는 초기 정원에서 20~40%미만, 12%는 모집정원의 40~60%가 이탈하였다. 부모요원 이탈이 발생한 지역의 이탈률을 산출하면 평균 38.9%이고 읍면지역일수록 이탈률이 높아져서 읍면지역이 50.7%로 절반 정도가 이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부모요원이 이탈한 경우, 인원 충원이 적절하게 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절반이 넘는 58.8%가 충원되고 있지 않다고 답하였다. 충원이 되고 있는 지역 중 32.9%만 이탈한 수만큼 인원 충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하였다. 충원률을 산출하면 평균 36.4%이다.

<표 III-2-15> 부모모니터링단 부모요원 이탈 및 충원 비율

단위: %(명)

| 구분 | 이탈 비율 | | | | | | | | 충원 비율 | | | | |
|------|-------|--------|-----------|-----------|-----------|--------|------------|--------|-------|--------|------|-----------|--------|
| | 없음 | 20% 미만 | 20~40% 미만 | 40~60% 미만 | 60~80% 미만 | 80% 이상 | 계(수) | 이탈시 평균 | 없음 | 50% 이하 | 100% | 계(수) | 충원시 평균 |
| 전체 | 49.1 | 4.8 | 24.6 | 12.0 | 7.2 | 2.4 | 100.0(167) | 38.9 | 58.8 | 8.2 | 32.9 | 100.0(85) | 36.4 |
| 대도시 | 52.2 | 8.7 | 21.7 | 8.7 | 8.7 | 0.0 | 100.0(46) | 34.2 | 54.5 | 9.1 | 36.4 | 100.0(22) | 38.5 |
| 중소도시 | 34.9 | 6.3 | 33.3 | 19.0 | 4.8 | 1.6 | 100.0(63) | 35.1 | 58.5 | 9.8 | 31.7 | 100.0(41) | 36.5 |
| 읍면지역 | 62.1 | 0.0 | 17.2 | 6.9 | 8.6 | 5.2 | 100.0(58) | 50.7 | 63.6 | 4.5 | 31.8 | 100.0(22) | 34.1 |
| F | | | | | | | | 5.4** | | | | | 0.05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모모니터링에 관한 보육공무원 조사」 결과임.

** $p < .01$

부모모니터링 사업이 시작된 지 1년이 채 안되었는데도 이탈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그 이유를 살펴본 결과, 활동이 비정기적이라서 일정 보수를 보장하는 곳으로 취업한다는 이유가 35.1%로 가장 많고 부모모니터링단 역할의 어려움이 19.8%, 부모모니터링단 책임감 부족이 15.3%를 차지하였다. 기타 이유로는 자녀 양육 및 가족과 관련된 개인 사유가 대부분이었다(표 III-2-16 참조).

지역규모별로 보면, 도시지역은 비정기적인 활동으로 인한 낮은 보수가 가장

큰 이유이고, 읍면지역은 부모모니터링단 역할의 어려움이었다. 특히 대도시는 부모모니터링단의 책임감 부족이 20% 이상을 차지하였다.

이탈 인원이 발생한 경우 모니터링단 운영 방식을 살펴보면, 추가 모집이 42.6%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감소된 인원으로 활동량과 빈도를 높인다는 곳이 30.6%, 감소 인원으로 활동기간을 늘린다는 곳이 20.4%이었다. 지역별로도 전체 응답과 동일하게 추가 모집이 가장 많으나 읍면지역은 감소인원으로 활동량과 운영기간을 늘린다는 비율이 도시지역보다 다소 높았다.

〈표 III-2-16〉 부모모니터링단 이탈 발생이유 및 인원 감소 시 운영 방법

단위: %(명)

| 구분 | 모니터링단 이탈 발생 이유 | | | | | | 부모 모니터링단 감소후 운영방식 | | | |
|------|-------------------------------|---------------------|---|--|---|------------|-------------------|--|--|-----------|
| | 활동비 일정보 장받는 직장이 동 | 적수 수당 적어 서 | 부모 모니 터링 에 대 한 이 해 부 족 | 부모 모니 터링 단 책 임 감 부 족 | 부모 모니 터링 단 역 할 의 어 려 움 | 기타 (수) | 추가 모 집 | 감소 인 원 이 활 동 량 늘 임 | 감소 인 원 활 동 량 을 늘 리 는 것 | 기타 (수) |
| 전체 | 35.1 | 9.0 | 3.6 | 15.3 | 19.8 | 17.1 (111) | 42.6 | 30.6 | 20.4 | 6.5 (108) |
| 대도시 | 35.7 | 10.7 | - | 25.0 | 17.9 | 10.7 (28) | 46.4 | 25.0 | 21.4 | 7.1 (28) |
| 중소도시 | 40.8 | 6.1 | 2.0 | 14.3 | 12.2 | 24.5 (49) | 41.7 | 39.6 | 12.5 | 6.3 (48) |
| 읍면지역 | 26.5 | 11.8 | 8.8 | 8.8 | 32.4 | 11.8 (34) | 40.6 | 21.9 | 31.3 | 6.3 (32)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모모니터링에 관한 보육공무원 조사」 결과임.

사. 결과보고서 작성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는 부모와 보육전문가가 협의하여 작성하되, 보육전문가가 직접 작성하며, 현장에서 바로 확인사항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모니터링단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청 보육담당자에게 즉시 원본을 전달하고, 사본은 보육정보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표 III-2-17〉 부모모니터링단의 결과보고서 작성 수준

단위: %(명)

| 구분 | 매우 부족 | 부족 | 적당 | 충분 | 매우 충분 | 계(수) | 평균 |
|------|-------|------|------|------|-------|------------|-----|
| 전체 | 0.6 | 19.2 | 55.7 | 21.0 | 3.6 | 100.0(167) | 3.1 |
| 대도시 | - | 15.2 | 60.9 | 21.7 | 2.2 | 100.0(46) | 3.1 |
| 중소도시 | - | 19.0 | 55.6 | 22.2 | 3.2 | 100.0(63) | 3.1 |
| 읍면지역 | 1.7 | 22.4 | 51.7 | 19.0 | 5.2 | 100.0(58) | 3.0 |
| F | | | | | | | 0.2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모모니터링에 관한 보육공무원 조사」 결과임.

보육공무원을 대상으로 부모모니터링단이 작성한 결과보고서의 작성 수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55.7%가 적당하다고 답하였다. 부족하다는 의견은 19.2%로 약 1/5 정도에 해당한다. 충분성 정도는 5점 평균 3.1점으로 높은 편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읍면지역일수록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다(표 III-2-17 참조).

아. 모니터링 결과 및 활용

1) 모니터링 결과

부모모니터링 사업은 2013년 6월말까지 총 4,680건이다. 시도별로는 어린이집이 많은 경기지역이 단연 실적이 높고, 다음으로 서울, 인천 순이다. 부모모니터링 사업이 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모니터링 결과 점수를 보면, 절반 이상이 총점 26점 중 23점 이상을 차지하고, 컨설팅 대상인 13점 이하는 6.6%로 소수이다(표 III-2-18 참조).

〈표 III-2-18〉 부모모니터링 실적 현황

단위: 개소(%), 건(개소)

| 구분 | 실적 | 결과 점수 분포 | | | | |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행정조치 | | | | | |
|------|---------|----------|---------|---------|--------|--------|------------------|-------|-------|-------|------|------|
| | | 13점 이하 | 14~16 점 | 17~19 점 | 20~22점 | 23점 이상 | 시정 명령 | 운영 정지 | 자격 정지 | 자격 취소 | 과태료 | 고발 |
| 전체 | 4,680 | 310 | 369 | 489 | 1,109 | 2,447 | 195(103) | 4(4) | 2(2) | 1(1) | 2(2) | 2(2) |
| (비율) | (100.0) | (6.6) | (7.9) | (10.4) | (23.7) | (52.3) | | | | | | |
| 서울 | 927 | 72 | 68 | 108 | 214 | 465 | - | - | - | - | - | - |
| 부산 | 229 | 3 | 7 | 11 | 43 | 165 | 13(6) | - | - | - | 1(1) | - |
| 대구 | 215 | 6 | 21 | 30 | 48 | 224 | 2(2) | 1(1) | 1(1) | - | - | - |
| 인천 | 361 | 17 | 39 | 46 | 113 | 146 | 107(37) | 1(1) | 1(1) | - | 1(1) | 1(1) |
| 광주 | 70 | - | - | - | 16 | 54 | - | - | - | - | - | - |
| 대전 | 169 | 8 | 5 | 10 | 42 | 104 | - | - | - | - | - | - |
| 울산 | 130 | 4 | 2 | 6 | 13 | 123 | 2(2) | - | - | - | - | - |
| 경기 | 1,172 | 118 | 101 | 117 | 276 | 484 | 27(18) | 1(1) | - | - | - | - |
| 강원 | 178 | 4 | 7 | 8 | 41 | 119 | - | - | - | - | - | - |
| 충북 | 175 | 9 | 17 | 19 | 27 | 103 | - | - | - | - | - | - |
| 충남 | 106 | 11 | 11 | 16 | 33 | 33 | - | - | - | - | - | - |
| 전북 | 168 | 28 | 39 | 37 | 43 | 29 | - | - | - | - | - | - |
| 전남 | 159 | 1 | 1 | 9 | 64 | 63 | 7(4) | - | - | - | - | - |
| 경북 | 293 | 18 | 16 | 40 | 62 | 158 | 10(7) | - | - | - | - | - |
| 경남 | 270 | 11 | 34 | 31 | 73 | 122 | - | - | - | - | - | - |
| 제주 | 58 | - | 1 | 1 | 1 | 55 | - | - | - | - | - | -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시군구 부모모니터링 운영현황 조사」(2013년 6월 말 기준) 결과임.

시도별로는 전북이 컨설팅 대상이 16.7%로 가장 많고, 충남과 경기도가 10%대이다. 서울과 경북도 6~7%대로 전체 비율과 동일 수준이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행정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시정명령이 195건으로 많고, 운영정지나 자격정지, 자격취소는 소수이다. 특히 인천지역은 행정조치가 37개소에 대해 107건이 발생하여 시도 중에서 가장 많다(표 III-2-18 참조).

2) 결과 공개

부모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해당 어린이집에 공개하는지를 조사하였다. <표 III-2-19>와 같이, 모니터링 결과를 전혀 알려주지 않는다는 비율이 16.2%이고, 결과를 알려줄 경우 모니터링 결과 전체와 총점만 알려준다는 비율이 30%, 나머지는 10%대이다.

지역별로 대도시는 총점,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은 모니터링 결과 전체를 알려주는 경우가 많다. 특히, 대도시는 컨설팅 대상 여부를 알려주는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편이다.

〈표 III-2-19〉 부모모니터링 결과 어린이집 통지 여부

단위: %(명)

| 구분 | 전혀 알려주지 않음 | 총점 | '미흡'항목 | 컨설팅 대상 여부 | 모니터링 결과 전체 | 기타 | 계(수) |
|------|------------|------|--------|-----------|------------|-----|------------|
| 전체 | 16.2 | 28.7 | 11.4 | 10.2 | 29.3 | 4.2 | 100.0(167) |
| 대도시 | 19.6 | 37.0 | 10.9 | 17.4 | 15.2 | - | 100.0(46) |
| 중소도시 | 17.5 | 25.4 | 6.3 | 9.5 | 34.9 | 6.3 | 100.0(63) |
| 읍면지역 | 12.1 | 25.9 | 17.2 | 5.2 | 34.5 | 5.2 | 100.0(58)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모모니터링에 관한 보육공무원 조사」 결과임.

보육전문가는 심층면담에서 모니터링 결과를 어린이집에 공개할 경우 자발적인 서비스 질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총점 13점 미만의 어린이집 컨설팅 시 부모모니터링 시 지적받은 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채 미흡한 상태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였다. 시정 의지가 없는 어린이집도 있지만, 시정 의지가 있어도 어떤 것이 문제인지 인식하지 못하는 어린이집이 많으므로 모니터링 시 미흡한 점에 대한 해당 어린이집의 컨설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3) 결과 활용

부모모니터링 결과 활용 방법에 대해 평가인증 조력대상 선정 시 활용한다는 의견이 40.1%로 가장 많았다. 지도점검 기초자료 활용도 20%로 적지 않은 응답 비율을 나타내었다. 부모모니터링 사업으로만 활용한다는 지역도 38.3%로 높은 편이다.

지역별로 보면, 대도시는 평가인증 조력대상 선정 시, 중소도시는 부모모니터링 사업으로만 활용하는 경우가 많고, 지도점검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는 비율은 읍면지역일수록 높았다.

〈표 III-2-20〉 부모모니터링 결과 활용

| 구분 | 단위: %(명) | | | | |
|------|-----------------|--------------------|----------------|-----|------------|
| | 부모모니터링 사업으로만 활용 | 평가인증 조력 대상 선정 시 활용 | 지도점검 기초 자료로 활용 | 기타 | 계(수) |
| 전체 | 38.3 | 40.1 | 21.0 | 0.6 | 100.0(167) |
| 대도시 | 37.0 | 52.2 | 10.9 | - | 100.0(46) |
| 중소도시 | 44.4 | 33.3 | 22.2 | - | 100.0(63) |
| 읍면지역 | 32.8 | 37.9 | 27.6 | 1.7 | 100.0(58)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모모니터링에 관한 보육공무원 조사」 결과임.

자. 사후관리(컨설팅)

1) 현황

2013년 6월 기준 컨설팅 대상 어린이집은 총 129개소이며, 사업량이 많은 경기지역이 42개소로 전체 실적의 1/3을 차지한다. 다음으로 경남, 인천, 경북 순이다.

〈표 III-2-21〉 컨설팅 현황

| 구분 | 단위: 개소 | | | | | | | | | | | | | | | | |
|----|--------|----|----|----|----|----|----|----|----|----|----|----|----|----|----|----|----|
| | 전체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개소 | 129 | - | 2 | 12 | 13 | - | 8 | 4 | 42 | 6 | 6 | 1 | 8 | - | 11 | 16 | -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시군구 부모모니터링 운영현황 조사」(2013년 6월 말 기준) 결과임.

2) 컨설팅 대상 선정기준의 적절성

컨설팅은 모니터링 결과점수가 총점 13점 이하인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 선정기준인 13점의 적절성에 대해 의견을 조사한 결과, 보육공무원은 적절하다는 의견이 과반수를 차지하였고,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10% 정도이었다. 지역별로도 전체 응답과 유사하나 도시지역일수록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편, 보육정보센터 담당자는 보육공무원과 다르게 적절하다는 의견이 절반 정도이고, 상향조정이 40% 정도로 높다. 지역별로는 시군구보다 시도 보육정보센터 담당자들이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소 많았다.

〈표 III-2-22〉 컨설팅 대상 어린이집 기준점수

단위: %(명)

| 보육공무원 | | | | | 보육정보센터 | | | | |
|-------|----------|------|----------|------------|--------|----------|------|----------|------------|
| 구분 | 하향 조정 필요 | 적절 | 상향 조정 필요 | 계(수) | 구분 | 하향 조정 필요 | 적절 | 상향 조정 필요 | 계(수) |
| 전체 | 3.0 | 84.4 | 12.6 | 100.0(167) | 전체 | 5.9 | 55.9 | 38.2 | 100.0(34) |
| 대도시 | 2.2 | 82.6 | 15.2 | 100.0(46) | 시도 | 13.3 | 46.7 | 40.0 | 100.0(15) |
| 중소도시 | 1.6 | 84.1 | 14.3 | 100.0(63) | 시군구 | - | 63.2 | 36.8 | 100.0(19) |
| 읍면지역 | 5.2 | 86.2 | 8.6 | 100.0(58) | | | | |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모모니터링에 관한 보육공무원·보육관계자 조사」 결과임.

심층면담에서도 보육전문가와 부모요원 모두 컨설팅 대상 어린이집의 기준 점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13점 이상으로 미흡을 받지 않았지만, 문제가 있는 어린이집이 많다는 의견이 전반적이었다. 따라서 현행 채점방식으로는 서비스 질에 문제가 있는 어린이집이 컨설팅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채점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3) 사후관리(컨설팅) 운영의 어려움

보육공무원을 대상으로 사후관리 운영의 어려움을 조사하였다. 먼저 조사대상 중 컨설팅 대상이 있는 지역은 32.9%인 1/3정도이고, 중소도시가 많았다.

컨설팅 대상이 있는 지역은 사후관리 운영의 어려움으로 보육정보센터의 지원인력 부족과 어린이집의 비협조적 태도, 컨설턴트 부족을 들었다. 지역별로 보면, 대도시와 읍면지역은 전체 응답과 비슷한 수준이나 중소도시는 사후관리에 대한 어린이집의 비협조적 태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부모모니터링에 대한 어린이집의 인식 개선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표 III-2-23〉 컨설팅 어린이집 유무 및 사후관리 운영의 어려움

단위: %(명)

| 구분 | 컨설팅 대상 여부 | | 사후관리 운영의 어려움 | | | | | | |
|------|-----------|-------|-----------------|-----------------|-------------------------|--------------------|------|------|-----------|
| | 있음 | (수) | 컨설팅 턴트 부족 | 컨설팅 일정 조정 | 보육정보센 터의 지원 인력 부족 | 어린이집 비협조적 태도 | 기타 | 없음 | 계(수) |
| 전체 | 32.9 | (167) | 14.3 | 6.1 | 30.6 | 28.6 | 16.3 | 4.1 | 100.0(49) |
| 대도시 | 37.0 | (46) | 13.3 | 6.7 | 40.0 | 20.0 | 6.7 | 13.3 | 100.0(15) |
| 중소도시 | 54.0 | (63) | 16.7 | 6.7 | 23.3 | 33.3 | 20.0 | - | 100.0(30) |
| 읍면지역 | 6.9 | (58) | - | - | 50.0 | 25.0 | 25.0 | - | 100.0(4)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모모니터링에 관한 보육공무원 조사」 결과임.

4) 사후관리(컨설팅) 확인의 필요성 및 확인 방법

컨설팅 대상 어린이집으로 선정되면, 시도 보육정보센터에서 컨설턴트가 파견되고, 전체 항목이 아닌 '미흡' 항목에 대해 개선할 수 있는 컨설팅이 이루어진다.

<표 III-2-24>는 사후관리가 이루어진 후 후속조치의 필요성 및 그 방법을 나타낸다. 보육공무원의 경우, 사후관리(컨설팅) 확인의 필요성에 대해 80%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았고, 그 방법으로 부모모니터링과 컨설팅 추가 실시 모두 적절한 방법이라고 답하였다. 기타 의견으로 자치구 담당공무원의 확인이 소수 있었다. 지역별로는 대도시가 타 지역에 비해 필요하다는 비율이 다소 높았다.

보육정보센터 담당자는 공무원보다 필요하다는 의견이 90% 이상으로 높고, 부모모니터링 추가 실시와 컨설팅 추가 실시가 각각 41.2%로 높다. 지역별로도 전체 응답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표 III-2-24〉 사후관리 확인의 필요성 및 확인 방법

단위: %(명)

| 구분 | 보육공무원 | | | | 계(수) | 구분 | 보육정보센터 | | | | 계(수) |
|------|----------|------------------|-----------------|--------|------------|-----|----------|----------------------|-----------------|--------|------------|
| | 필요 없음 | 모니터링 추가 실시 | 컨설팅 추가 실시 | 기 타 | | | 필요 없음 | 모니 터링 추가 실시 | 컨설팅 추가 실시 | 기 타 | |
| 전체 | 21.0 | 39.5 | 34.1 | 5.4 | 100.0(167) | 전체 | 5.9 | 41.2 | 41.2 | 11.8 | 100.0(34) |
| 대도시 | 15.2 | 41.3 | 32.6 | 10.9 | 100.0(46) | 시도 | 6.7 | 40.0 | 46.7 | 6.7 | 100.0(15) |
| 중소도시 | 25.4 | 30.2 | 41.3 | 3.2 | 100.0(63) | 시군구 | 5.3 | 42.1 | 36.8 | 15.8 | 100.0(19) |
| 읍면지역 | 20.7 | 48.3 | 27.6 | 3.4 | 100.0(58) | | | | | | |

본 연구를 위한 「부모모니터링에 관한 보육공무원·보육관계자 조사」 결과임.

아. 부모모니터링단 처우

1) 활동 수당

부모모니터링단의 활동 수당은 1개소 기준 25,000원이다. 활동수당의 적절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보육공무원 절반 정도는 적당하다는 의견이었으나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46.7%로 높은 편이다. 지역별로는 읍면지역이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도시지역에 비해 10%p 정도 높았다(표 III-2-25 참조).

한편, 보육정보센터 담당자는 적당하다는 의견보다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다. 지역과 상관없이 상향조정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반적이었다.

활동수당 차등 지급 방법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 정도로 다수이고, 다음으로 읍면지역만 교통비 추가 지급, 거주지와 대상 어린이집 거리에 따라 교통비 추가 지급 순이다. 지역별로 보면, 읍면지역은 교통비 추가 지원, 중소도시는 지역별 수당 차등지급 비율이 높았다.

〈표 III-2-25〉 활동 수당 및 차등 지급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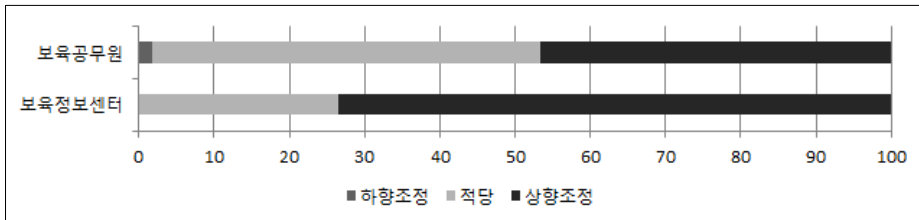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 활동수당 조정 | | | 활동 수당 차등 지급 | | | | | (수) |
|--------|---------|------|-------|-------------|-------------|---------------|---------------------------|-----|-------|
| | 하향 조정 | 적당 | 상향 조정 | 동일 수당 지급 | 지역별 수당 차등지급 | 읍면지역 교통비 추가지원 | 거주지와 대상 어린이집 거리 따라 교통비 지원 | 기타 | |
| 보육공무원 | | | | | | | | | |
| 전체 | 1.8 | 51.5 | 46.7 | 51.5 | 4.8 | 32.9 | 10.8 | - | (167) |
| 대도시 | 2.2 | 56.5 | 41.3 | 67.4 | 4.3 | 17.4 | 10.9 | - | (46) |
| 중소도시 | 1.6 | 54.0 | 44.4 | 52.4 | 7.9 | 33.3 | 6.3 | - | (63) |
| 읍면지역 | 1.7 | 44.8 | 53.4 | 37.9 | 1.7 | 44.8 | 15.5 | - | (58) |
| 보육정보센터 | | | | | | | | | |
| 전체 | - | 26.5 | 73.5 | 17.6 | 11.8 | 35.3 | 32.4 | 2.9 | (34) |
| 시도 | - | 26.7 | 73.3 | 20.0 | 20.0 | 26.7 | 26.7 | 6.7 | (15) |
| 시군구 | - | 26.3 | 73.7 | 15.8 | 5.3 | 42.1 | 36.8 | - | (19)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모모니터링에 관한 보육공무원·보육관계자 조사」 결과임.

심층면담에서 보육전문가와 부모요원 모두 활동수당이 적다는 의견이 전반적이었다. 규모가 큰 어린이집의 경우 초과 시간이 발생하나 이에 대한 추가 수당이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또한 대상 어린이집 교통편

이 여의치 않을 경우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경우 개인 부담이 크다고 하였다. 부모요원과 보육전문가 모두 활동수당을 상향조정하거나 어린이집 위치에 따라 교통비를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부모요원은 활동수당 적정선으로 35,000원을 제시하였다.



[그림 III-2-2] 활동수당 조정에 대한 의견

<표 III-2-26>은 활동수당 상향 조정 시 적정 금액을 나타낸다. 적정 금액으로 보육공무원 42.7%는 3만원이라고 답하였고, 5만원도 22.7%를 차지한다. 한편, 보육정보센터 담당자는 5만원이 다빈도이나 3~4만원대도 각각 20%대로 많았다.

<표 III-2-26> 활동수당 상향조정 시 적정금액

| 구분 | 단위: %(명) | | | | | | | 계(수) |
|--------|----------|-------|------|-------|------|-----|------|-----------|
| | 3만원 | 3.5만원 | 4만원 | 4.5만원 | 5만원 | 7만원 | 10만원 | |
| 보육공무원 | 42.7 | 13.3 | 10.7 | - | 22.7 | 8.0 | 2.6 | 100.0(75) |
| 보육정보센터 | 24.0 | 20.0 | 20.0 | 4.0 | 28.0 | - | 4.0 | 100.0(25)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모모니터링에 관한 보육공무원·보육관계자 조사」 결과임.

2) 1일 활동량 및 상해보험 가입의 필요성

부모모니터링단은 1일 2개소까지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보육공무원은 적당하다는 의견이 70%대로 높은 편이다. 하향조정 16.2%, 상향조정 9.6% 정도 되었다. 보육정보센터 의견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당하다는 의견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다(표 III-2-27 참조).

현재 안심부모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만 자체 예산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부모모니터링단의 상해보험 가입 관련 의견을 살펴보았다.

보육공무원은 필요하다가 64.7%로 불필요하다는 의견보다 많았다. 지역별로는 중소도시가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보육정보센터 담당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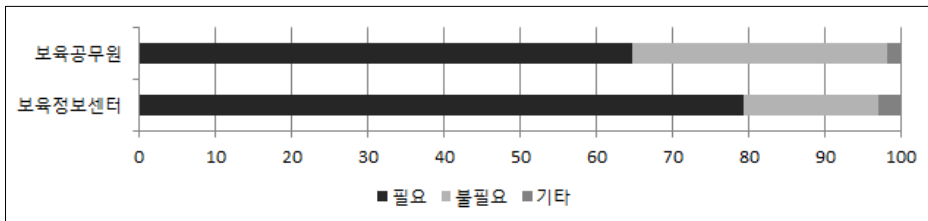
들은 보육공무원보다 필요하다는 의견이 80% 정도로 높아 필요성에 대해 더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시군구 보육정보센터가 시도보다 높았다.

〈표 III-2-27〉 1일 활동량 및 상해보험 가입의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 1일 활동 감소수 | | | 상해 보험 가입 필요성 | | | (수) |
|--------|-----------|------|------|--------------|------|-----|-------|
| | 하향조정 | 적당 | 상향조정 | 필요 | 불필요 | 기타 | |
| 보육공무원 | | | | | | | |
| 전체 | 16.2 | 74.3 | 9.6 | 64.7 | 33.5 | 1.8 | (167) |
| 대도시 | 8.7 | 89.1 | 2.2 | 52.2 | 43.5 | 4.3 | (46) |
| 중소도시 | 11.1 | 69.8 | 19.0 | 74.6 | 25.4 | - | (63) |
| 읍면지역 | 27.6 | 67.2 | 5.2 | 63.8 | 34.5 | 1.7 | (58) |
| 보육정보센터 | | | | | | | |
| 전체 | 14.7 | 82.4 | 2.9 | 79.4 | 17.6 | 2.9 | (34) |
| 시도 | 13.3 | 80.0 | 6.7 | 66.7 | 26.7 | 6.7 | (15) |
| 시군구 | 15.8 | 84.2 | - | 89.5 | 10.5 | - | (19)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모모니터링에 관한 보육공무원·보육관계자조사」 결과임.



[그림 III-2-3] 부모모니터링단 상해보험 가입의 필요성

3. 부모모니터링의 효과

가. 서비스 질 수준의 일치성

보육공무원과 보육정보센터 담당자 대상으로 부모모니터링 결과와 서비스 질 일치도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보육공무원은 대체로 일치한다 74.3%와 거의 일치한다 3.6%로 77.9% 정도가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 지역규모별로도 일치한다는 의견이 전반적이다. 중소도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30% 정도로 높으나 지역

규모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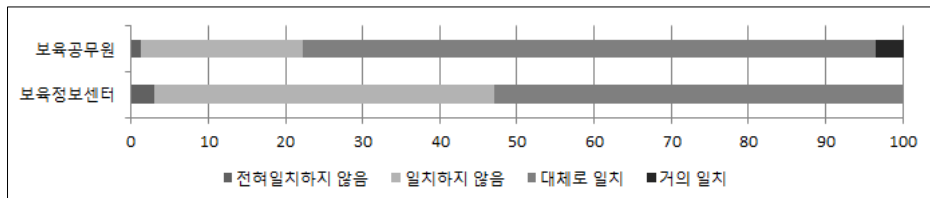
〈표 III-3-1〉 모니터링 결과와 서비스 질 일치도

단위: %(명)

| 보육공무원 | | | | | | | 보육정보센터 | | | | | | |
|-------|----------------------|----------------|---------------|----------|------------|-----|--------|----------------------|----------------|---------------|----------|------------|------|
| 구분 | 전혀 일치 하지 않음 | 일치 하지 않음 | 대체 로 일치 | 거의 일치 | 계(수) | 평균 | 구분 | 전혀 일치 하지 않음 | 일치 하지 않음 | 대체 로 일치 | 거의 일치 | 계(수) | 평균 |
| 전체 | 1.2 | 21.0 | 74.3 | 3.6 | 100.0(167) | 2.8 | 전체 | 2.9 | 44.1 | 52.9 | - | 100.0(34) | 2.5 |
| 대도시 | - | 19.6 | 78.3 | 2.2 | 100.0(46) | 2.8 | 시도 | 6.7 | 53.3 | 40.0 | - | 100.0(15) | 2.3 |
| 중소도시 | 3.2 | 27.0 | 65.1 | 4.8 | 100.0(63) | 2.7 | 시군구 | - | 36.8 | 63.2 | - | 100.0(19) | 2.6 |
| 읍면지역 | - | 15.5 | 81.0 | 3.4 | 100.0(58) | 2.9 | t | | | | | | -1.6 |
| F | | | | | | 1.7 | | | | | | | |

본 연구를 위한 「부모모니터링에 관한 보육공무원·보육관계자 조사」 결과임.

반면에 보육정보센터 담당자는 일치한다는 의견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거의 차이가 없어 아직은 부모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시도 담당자들이 시군구보다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신뢰를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일치 정도는 지역 간 차이 없이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었다(표 III-3-1 참조).



[그림 III-3-1] 부모모니터링 결과와 보육서비스 질의 일치정도

나. 어린이집의 어려움과 인식 개선

어린이집 대상으로 부모모니터링의 어려움을 조사한 양미선 외(2013)의 연구에 따르면,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도점검, 평가인증 등 반복 점검으로 인한 업무 과중이라고 답하였고, 다음으로 부모모니터링단의 전문성 부족과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이해 부족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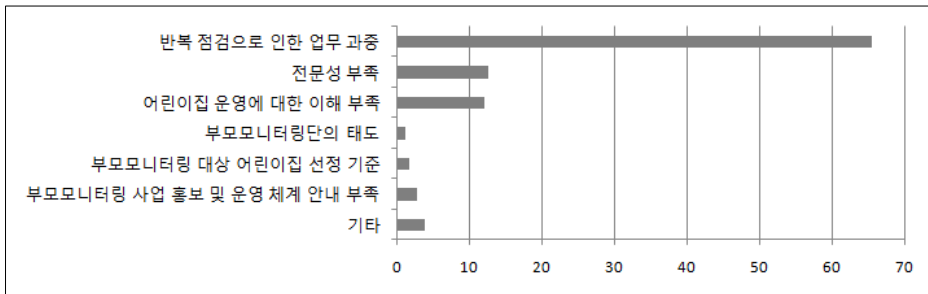
어린이집 유형별로 보면, 반복점검으로 인한 업무 과중이 다수를 차지한다. 특히 국공립과 법인어린이집은 전문성 부족을 지적하는 비율이 다른 어린이집 유형보다 높았다.

〈표 III-3-2〉 부모모니터링 시 어려움

단위: %(개소)

| 구분 | 반복 점검으로 인한 업무 과중 | 전문성 부족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이해 부족 | 부모 모니터링 단 태도 | 부모모니터링 대상 어린이집 선정 기준 | 부모모니터링 사업 홍보 및 운영 체계 안내 부족 | 기타 | 계(수) |
|-----|------------------|--------|-------------------|--------------|----------------------|----------------------------|-----|------------|
| 전체 | 65.4 | 12.7 | 12.1 | 1.2 | 1.8 | 2.9 | 3.9 | 100.0(511) |
| 국공립 | 58.6 | 17.2 | 13.1 | 2.0 | 2.0 | 3.0 | 4.0 | 100.0(99) |
| 법인 | 62.7 | 16.4 | 10.0 | 1.8 | 1.8 | 3.6 | 3.6 | 100.0(110) |
| 민간 | 70.3 | 5.9 | 11.9 | 1.0 | 2.0 | 3.0 | 5.9 | 100.0(101) |
| 가정 | 71.3 | 11.3 | 13.8 | - | 1.3 | - | 2.5 | 100.0(80) |
| 공공형 | 65.3 | 12.4 | 12.4 | 0.8 | 1.7 | 4.1 | 3.3 | 100.0(121) |

자료: 양미선·정주영·임지희(2013). 어린이집 및 유치원 운영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육아정책연구소.



[그림 III-3-2] 부모모니터링 시 어려움

이처럼 어린이집이 부모모니터링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어 사업 추진이 쉽지 않다. 어린이집의 부모모니터링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방법에 대해 조사하였다(표 III-3-3 참조).

보육공무원은 평가인증과 상이한 지표 개선이 시급하다고 하였고, 다음으로 부모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개선, 부모모니터링단의 자질 향상을 제안하였다. 지역별로 도시일수록 평가인증 지표와 상이한 지표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았고, 읍면지역일수록 부모모니터링단의 자질 향상과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표 III-3-3〉 부모모니터링에 대한 인식 개선 방법

단위: %(명)

| 구분 | 평가인증 지표와 지표 개선 | 확인방법 상이한 개선 | 부모모니터링 단 자질 향상 | 부모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개선 | 기타 | 계(수) |
|--------|----------------------|-------------------|-------------------|-----------------------------|------|------------|
| 보육공무원 | | | | | | |
| 전체 | 38.9 | 10.8 | 19.8 | 26.3 | 4.2 | 100.0(167) |
| 대도시 | 47.8 | 8.7 | 17.4 | 26.1 | - | 100.0(46) |
| 중소도시 | 39.7 | 3.2 | 20.6 | 33.3 | 3.2 | 100.0(63) |
| 읍면지역 | 31.0 | 20.7 | 20.7 | 19.0 | 8.6 | 100.0(58) |
| 보육정보센터 | | | | | | |
| 전체 | 44.1 | 2.9 | 32.4 | 5.9 | 14.7 | 100.0(34) |
| 시도 | 26.7 | 6.7 | 40.0 | 6.7 | 20.0 | 100.0(15) |
| 시군구 | 57.9 | - | 26.3 | 5.3 | 10.5 | 100.0(19)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모모니터링에 관한 보육공무원·보육관계자 조사」 결과임.

보육정보센터 담당자도 보육공무원과 동일하게 평가인증 지표와 상이한 지표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부모모니터링단의 자질 향상을 지적하였다. 지역별로 다소 의견 차이를 보였는데, 시도는 평가인증과 상이한 지표 개선보다 부모모니터링단의 자질 향상에 대한 의견이 많았고, 시군구 담당자는 반대로 지표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더 인식하고 있었다.

2) 효과성

<표 III-3-4>는 부모모니터링이 부모의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성 제고와 어린이집의 서비스 질 개선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인지를 조사한 것이다.

먼저, 부모의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성 제고 효과에 대해 보육공무원은 대체로 그렇다 40.1%, 매우 그렇다 4.8%로 절반 정도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모니터링이 아직 사업초기 단계로 안정화가 이루어진다면 신뢰성 제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로는 대도시가 부모모니터링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시도 지역이 부모모니터링 홍보 및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동의 정도는 5점 평균 3.4점으로 높은 편이며 대도시가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지역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표 III-3-4〉 부모모니터링의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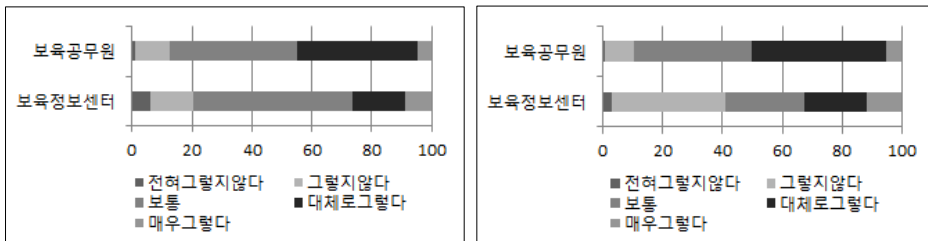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 부모의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성 제고 | | | | | | 어린이집 서비스 질 개선 도움 정도 | | | | | | (수) |
|--------|---------------------|--------|------|---------|--------|------|---------------------|--------|------|---------|--------|-------|-------|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 | 대체로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평균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대체로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평균 | |
| 보육공무원 | | | | | | | | | | | | | |
| 전체 | 1.2 | 11.4 | 42.5 | 40.1 | 4.8 | 3.4 | 0.6 | 9.6 | 39.5 | 44.9 | 5.4 | 3.4 | (167) |
| 대도시 | - | 2.2 | 39.1 | 54.3 | 4.3 | 3.6 | - | 4.3 | 34.8 | 56.5 | 4.3 | 3.6 | (46) |
| 중소도시 | 3.2 | 19.0 | 39.7 | 31.7 | 6.3 | 3.2 | 1.6 | 15.9 | 47.6 | 30.2 | 4.8 | 3.2 | (63) |
| 읍면지역 | - | 10.3 | 48.3 | 37.9 | 3.4 | 3.3 | - | 6.9 | 34.5 | 51.7 | 6.9 | 3.6 | (58) |
| F | | | | | | 3.8* | | | | | | 5.4** | |
| 보육정보센터 | | | | | | | | | | | | | |
| 전체 | 5.9 | 14.7 | 52.9 | 17.6 | 8.8 | 3.1 | 2.9 | 38.2 | 26.5 | 20.6 | 11.8 | 3.0 | (34) |
| 시도 | 6.7 | 26.7 | 46.7 | 13.3 | 6.7 | 2.9 | - | 46.7 | 26.7 | 20.0 | 6.7 | 2.9 | (15) |
| 시군구 | 5.3 | 5.3 | 57.9 | 21.1 | 10.5 | 3.3 | 5.3 | 31.6 | 26.3 | 21.1 | 15.8 | 3.1 | (19) |
| t | | | | | | -1.2 | | | | | | -0.6 |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모모니터링에 관한 보육공무원·보육관계자 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한편, 보육정보센터 담당자는 부모의 어린이집 신뢰성 제고에 대한 기대감이 보육공무원보다 크지 않았다. 그렇다는 비율이 26.4%로 보육공무원의 절반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시군구가 시도보다 부모모니터링에 대한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높았다(표 III-3-4 참조).



[그림 III-3-3] 부모의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성 제고 및 어린이집 서비스 질 개선 효과

부모모니터링이 어린이집의 서비스 질 개선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보육공무원 절반 정도는 도움이 된다고 보았고, 지역 중 중소도시의 비율이 가장 낮았다. 동의정도는 5점 평균 3.4점으로 높고,

지역 간에 차이가 유의하였다.

그러나 보육정보센터 담당자는 공무원만큼 서비스 질 개선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도움된다는 응답보다 도움되지 않는다는 비율이 다소 높았다. 지역 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으나 시군구보다 시도 보육정보센터 담당자들이 부모모니터링의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표 III-3-4 참조).

4. 정책 시사점

2013년 6월 말 기준 부모모니터링 현황 자료와 보육공무원 167명과 보육정보센터 담당자 34명을 대상으로 부모모니터링 운영 관련 실태 및 요구 조사결과 등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현행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체계에 대한 고려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부모모니터링 사업운영, 교육, 컨설팅 운영주체로 보육공무원은 보육정보센터를 지적하였고, 보육정보센터 담당자는 운영은 시군구, 교육과 컨설팅은 보육정보센터가 적절하다고 보았다. 또한 담당공무원은 사업운영의 어려움으로 업무과중과 일정조정 어려움 등을 들었다.

둘째, 부모모니터링 사업예산 편성 조정이 필요함을 나타내었다. 2013년 부모모니터링 예산은 수당과 사전교육 1회만을 인정한다. 예산편성 시 추가될 항목으로 부모모니터링단 수당, 교육비, 보육정보센터 담당인력 수당 등을 꼽았다.

셋째, 부모모니터링단 사전교육 강화와 보수교육 신설 등이 필요함을 나타내었다. 모니터링 인력교체 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상설화하고, 모니터링단 자질 향상을 위해 정기적인 보수교육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보수교육 주기에 대해 보육공무원은 반기, 보육정보센터 담당자는 반기와 분기가 적절하다고 답하였다.

넷째, 부모모니터링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현재 부모모니터링단은 시도 및 시군구가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이를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운영체계가 전무하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해 보육공무원 과반수가 필요하다고 보았고, 보육정보센터 담당자 90% 이상이 이에 동의하였다.

다섯째, 운영매뉴얼 개선이 필요함을 나타내었다. 부모모니터링 사업운영 매

뉴얼의 충분성에 대해 보육공무원 30% 정도는 부족하다고 하였고, 보육보센터 담당자는 64.7%가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운영 매뉴얼 개선 시 추가할 내용으로 보육공무원은 주요 상황별 FAQ와 50개 문항에 대한 설명, 부모모니터링단 역할 및 진행순서, 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방법을 꼽았고, 보육정보센터 담당자는 50개 문항 설명, 주요 상황별 FAQ, 부모모니터링단 역할 및 진행순서를 들었다.

여섯째, 부모모니터링 활동 수당 상향조정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부모모니터링단 활동 수당으로 1개소 기준 25,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활동수당의 적절성에 대해 보육공무원 절반 정도는 적당하다고 하였고, 46.7%는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보육정보센터 담당자는 적당하다는 의견보다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일곱째, 부모모니터링단 상해보험 가입이 필요함을 나타내었다. 부모모니터링단 상해보험 가입의 필요성에 대해 보육공무원 64.7%와 보육정보센터 담당자 79.4%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읍면지역이 도시지역보다 필요성에 대해 더 인식하고 있었다.

여덟째, 부모모니터링 사업 홍보 및 어린이집의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나타내었다. 부모모니터링 사업 홍보 및 안내의 충분성에 대해 보육공무원 40%와 보육정보센터 담당자 82.3%가 부족하다는 의견이었다. 또한 컨설팅 시 어려움 중의 하나로 어린이집의 비협조적인 태도가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IV. 부모모니터링 지표

제4장에서는 부모모니터링 지표 관련 의견을 살펴보고, 평가인증 지표와의 차이점과 모니터링 시 문제점을 진단하여 부모모니터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표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1. 지표 관련 의견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장에서는 부모모니터링 지표에 대한 논란이 많아 사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 지표 관련 의견을 6개 문항으로 정리하여 보육공무원과 보육정보센터 담당자가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를 질문하였다.

〈표 IV-1-1〉 부모모니터링 지표 관련 의견에 대한 동의정도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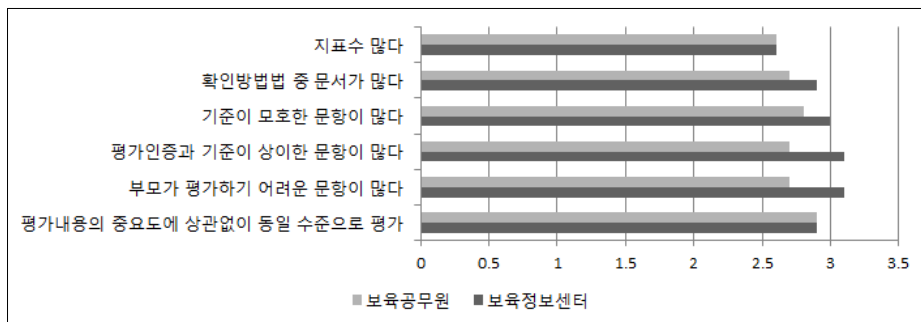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 전혀 동의 하지 않음 | 동의 하지 않음 | 동의 | 매우 동의 | 계(수) | 평균 |
|-------------------------------|----------------------|----------------|------|----------|------------|-----|
| 보육공무원 | | | | | | |
| 지표수가 많다 | 1.2 | 47.3 | 40.7 | 10.8 | 100.0(167) | 2.6 |
| 확인방법 중 문서가 많다 | 0.6 | 34.1 | 56.9 | 8.4 | 100.0(167) | 2.7 |
| 기준이 모호한 문항이 많다 | 1.8 | 26.5 | 64.5 | 7.2 | 100.0(167) | 2.8 |
| 평가인증과 기준이 상이한 문항이 많다 | 1.8 | 34.7 | 55.7 | 7.8 | 100.0(167) | 2.7 |
| 부모가 평가하기 어려운 문항이 많다 | 2.4 | 34.3 | 56.0 | 7.2 | 100.0(167) | 2.7 |
| 평가내용의 중요도에 상관없이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한다 | 1.2 | 18.1 | 74.7 | 6.0 | 100.0(167) | 2.9 |
| 보육정보센터 | | | | | | |
| 지표수가 많다 | - | 52.9 | 38.2 | 8.8 | 100.0(34) | 2.6 |
| 확인 방법 중 문서가 많다 | - | 32.4 | 47.1 | 20.6 | 100.0(34) | 2.9 |
| 기준이 모호한 문항이 많다 | 2.9 | 14.7 | 58.8 | 23.5 | 100.0(34) | 3.0 |
| 평가인증과 기준이 상이한 문항이 많다 | 2.9 | 5.9 | 64.7 | 26.5 | 100.0(34) | 3.1 |
| 부모가 평가하기 어려운 문항이 많다 | - | 20.6 | 50.0 | 29.4 | 100.0(34) | 3.1 |
| 평가내용의 중요도에 상관없이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한다 | 2.9 | 20.6 | 61.8 | 14.7 | 100.0(34) | 2.9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모모니터링에 관한 보육공무원·보육관계자 조사」 결과임.

보육공무원은 6개 문항에 대해 50~80% 정도가 동의하였고, 평가내용의 중요도에 상관없이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한다는 의견에 가장 많은 80.7%가 동의하였다. 평가인증과 기준이 상이한 문항이 많다는 의견에도 과반수가 넘는 63.5%가 찬성하였다. 동의 정도는 4점 척도로 평균 2.6~2.9점으로 높은 편이다.

보육정보센터 담당자는 보육공무원보다 동의비율이 전반적으로 높다. 평가인증과 기준이 상이한 문항이 많다 91.2%, 기준이 모호한 문항이 많다 82.3%, 부모가 평가하기 어려운 문항이 많다는 평가내용의 중요도에 상관없이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한다는 의견에 80% 정도가 동의하였다.



[그림 IV-1-1] 부모모니터링 지표 관련 의견

<표 IV-1-2>에서 <표 IV-1-4>는 각 문항에 대한 지역규모별 차이를 살펴본 것이다.

지표수가 많다는 의견에 대해 읍면지역 보육공무원은 도시지역에 비해 동의하는 비율이 높았다. 동의 정도도 읍면지역일수록 높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반면에 보육정보센터 담당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52.9%로 다소 높고, 시군구에 비해 시도 담당자의 동의비율이 높으나 유의한 차이는 아니다.

확인방법 중 문서가 많다는 의견도 읍면지역일수록 동의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 또한 지역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읍면지역이 4점 평균 2.9점으로 높다. 보육정보센터 담당자도 보육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높은 비율로 찬성하였으며, 시도 담당자가 시군구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높다.

〈표 IV-1-2〉 부모모니터링 지표 관련 의견 1

단위: %(명)

| 구분 | 지표수가 많다 | | | | | 확인 방법 중 문서가 많다 | | | | | (수) |
|----------|----------------------|----------------|------|----------|------|----------------------|----------------|------|----------|------|-------|
| | 전혀 동의 하지 않음 | 동의 하지 않음 | 동의 | 매우 동의 | 평균 | 전혀 동의 하지 않음 | 동의 하지 않음 | 동의 | 매우 동의 | 평균 | |
| 보육공무원 | | | | | | | | | | | |
| 전체 | 1.2 | 47.3 | 40.7 | 10.8 | 2.6 | 0.6 | 34.1 | 56.9 | 8.4 | 2.7 | (167) |
| 대도시 | 4.3 | 54.3 | 34.8 | 6.5 | 2.4 | 2.2 | 43.5 | 52.2 | 2.2 | 2.5 | (46) |
| 중소도시 | - | 55.6 | 33.3 | 11.1 | 2.6 | - | 36.5 | 54.0 | 9.5 | 2.7 | (63) |
| 읍면지역 | - | 32.8 | 53.4 | 13.8 | 2.8 | - | 24.1 | 63.8 | 12.1 | 2.9 | (58) |
| <i>F</i> | | | | | 4.3* | | | | | 4.0* | |
| 보육정보센터 | | | | | | | | | | | |
| 전체 | - | 52.9 | 38.2 | 8.8 | 2.6 | - | 32.4 | 47.1 | 20.6 | 2.9 | (34) |
| 시도 | - | 40.0 | 53.3 | 6.7 | 2.7 | - | 26.7 | 40.0 | 33.3 | 3.1 | (15) |
| 시군구 | - | 63.2 | 26.3 | 10.5 | 2.5 | - | 36.8 | 52.6 | 10.5 | 2.7 | (19) |
| <i>t</i> | | | | | 0.9 | | | | | 1.3 |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모모니터링에 관한 보육공무원·보육관계자 조사」 결과임.

기준이 모호한 문항이 많다는 평가인증과 기준이 상이한 문항이 많다는 의견에 대해, 중소도시 보육공무원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동의비율이 높았다. 기준이 모호한 문항이 많다는 의견은 지역 간 차이가 유의하다.

〈표 IV-1-3〉 부모모니터링 지표 관련 의견 2

단위: %(명)

| 구분 | 기준이 모호한 문항이 많다 | | | | | 평가인증과 기준 상이한 문항이 많다 | | | | | (수) |
|----------|----------------------|----------------|------|----------|------|----------------------|----------------|------|----------|-----|-------|
| | 전혀 동의 하지 않음 | 동의 하지 않음 | 동의 | 매우 동의 | 평균 | 전혀 동의 하지 안함 | 동의 하지 않음 | 동의 | 매우 동의 | 평균 | |
| 보육공무원 | | | | | | | | | | | |
| 전체 | 1.8 | 26.5 | 64.5 | 7.2 | 2.8 | 1.8 | 34.7 | 55.7 | 7.8 | 2.7 | (167) |
| 대도시 | 4.4 | 33.3 | 57.8 | 4.4 | 2.6 | 6.5 | 34.8 | 54.3 | 4.3 | 2.6 | (46) |
| 중소도시 | - | 20.6 | 68.3 | 11.1 | 2.9 | - | 28.6 | 60.3 | 11.1 | 2.8 | (63) |
| 읍면지역 | 1.7 | 27.6 | 65.5 | 5.2 | 2.7 | - | 41.4 | 51.7 | 6.9 | 2.7 | (58) |
| <i>F</i> | | | | | 3.1* | | | | | 2.4 | |
| 보육정보센터 | | | | | | | | | | | |
| 전체 | 2.9 | 14.7 | 58.8 | 23.5 | 3.0 | 2.9 | 5.9 | 64.7 | 26.5 | 3.1 | (34) |
| 시도 | - | 13.3 | 53.3 | 33.3 | 3.2 | - | - | 73.3 | 26.7 | 3.3 | (15) |
| 시군구 | 5.3 | 15.8 | 63.2 | 15.8 | 2.9 | 5.3 | 10.5 | 57.9 | 26.3 | 3.1 | (19) |
| <i>t</i> | | | | | 1.2 | | | | | 1.0 |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모모니터링에 관한 보육공무원·보육관계자 조사」 결과임.

보육정보센터 담당자는 보육공무원보다 높은 비율로 동의하고, 동의정도도 4점 평균 3점으로 높은 편이다. 시도 담당자가 시군구보다 동의 정도가 높다.

<표 IV-1-4>와 같이, 부모가 평가하기 어려운 문항이 많다는 의견에 읍면지역 보육공무원이 도시지역보다 높은 비율로 동의하였다. 그러나 동의정도는 유의하지 않다. 보육정보센터 담당자는 보육 공무원보다 동의비율이 높으나 동의정도는 차이가 유의하지 않다.

평가내용의 중요도에 상관없이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한다는 문항에 대해 80% 내외가 동의하였고 지역 차가 거의 없다. 보육정보센터 담당자는 지역 간에 다소 차이를 보여 시도보다 시군구 담당자의 동의비율이 다소 높다.

<표 IV-1-4> 부모모니터링 지표 관련 의견 3

단위: %(명)

| 구분 | 부모가 평가하기 어려운 문항이 많다 | | | | | 평가내용의 중요도에 상관없이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한다 | | | | | (수) |
|----------|---------------------|---------|------|-------|-----|-------------------------------|---------|------|-------|------|-------|
| | 전혀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 | 매우 동의 | 평균 | 전혀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 | 매우 동의 | 평균 | |
| 보육공무원 | | | | | | | | | | | |
| 전체 | 2.4 | 34.3 | 56.0 | 7.2 | 2.7 | 1.2 | 18.1 | 74.7 | 6.0 | 2.9 | (166) |
| 대도시 | 4.3 | 32.6 | 56.5 | 6.5 | 2.7 | 4.3 | 19.6 | 69.6 | 6.5 | 2.8 | (46) |
| 중소도시 | 1.6 | 41.3 | 49.2 | 7.9 | 2.6 | - | 21.0 | 69.4 | 9.7 | 2.9 | (62) |
| 읍면지역 | 1.8 | 28.1 | 63.2 | 7.0 | 2.8 | - | 13.8 | 84.5 | 1.7 | 2.9 | (58) |
| <i>F</i> | | | | | 0.6 | | | | | 0.6 | |
| 보육정보센터 | | | | | | | | | | | |
| 전체 | - | 20.6 | 50.0 | 29.4 | 3.1 | 2.9 | 20.6 | 61.8 | 14.7 | 2.9 | (34) |
| 시도 | - | 13.3 | 40.0 | 46.7 | 3.3 | - | 33.3 | 53.3 | 13.3 | 2.8 | (15) |
| 시군구 | - | 26.3 | 57.9 | 15.8 | 2.9 | 5.3 | 10.5 | 68.4 | 15.8 | 2.9 | (19) |
| <i>t</i> | | | | | 1.8 | | | | | -0.6 |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모모니터링에 관한 보육공무원·보육관계자 조사」 결과임.

현행 부모모니터링 평가는 확인결과를 ○, ×로 표기하고 항목별 확인 개수에 따라 미흡, 보통, 우수 등으로 채점한다. 예를 들어 관찰내용이 6개인 경우, 확인사항이 2개 이하이면 미흡, 3~4개 보통, 5개 이상 우수로 평가하게 된다. 이처럼 관찰내용의 중요도에 관계없이 영역별 확인 개수로 우수, 보통, 미흡을 결정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지표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보육공무원과 보육정보센터 담당자가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보육공무원 70%와 보육정보센터 담당자는

이보다 많은 90% 이상이 지표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 지역별로는 읍면지역 보육공무원과 시도 보육정보센터 담당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다. 필요정도는 지역에 관계없이 비슷한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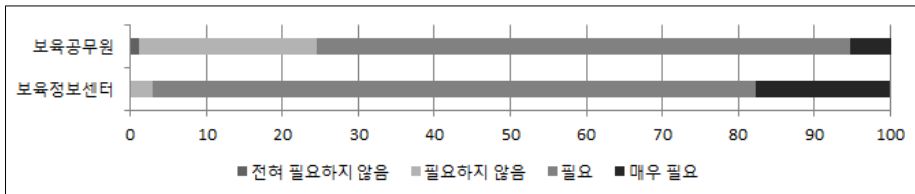
〈표 IV-1-5〉 지표 개선의 필요성 및 점수평정 개선안에 대한 동의정도

단위: %(명)

| 구분 | 지표개선의 필요 정도 | | | | | 점수 평정 개정안에 대한 동의 | | | | | (수) |
|----------|-------------|---------|------|-------|-----|------------------|---------|------|-------|------|-------|
| | 전혀 필요하지 않음 | 필요하지 않음 | 필요 | 매우 필요 | 평균 | 전혀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 | 매우 동의 | 평균 | |
| 보육공무원 | | | | | | | | | | | |
| 전체 | 1.2 | 23.4 | 70.1 | 5.4 | 2.8 | 1.2 | 19.9 | 76.5 | 2.4 | 2.8 | (167) |
| 대도시 | - | 28.3 | 71.7 | - | 2.7 | - | 13.0 | 84.8 | 2.2 | 2.9 | (46) |
| 중소도시 | 1.6 | 20.6 | 66.7 | 11.1 | 2.9 | 1.6 | 24.2 | 71.0 | 3.2 | 2.8 | (63) |
| 읍면지역 | 1.7 | 22.4 | 72.4 | 3.4 | 2.8 | 1.7 | 20.7 | 75.9 | 1.7 | 2.8 | (58) |
| <i>F</i> | | | | | 1.2 | | | | | 1.1 | |
| 보육정보센터 | | | | | | | | | | | |
| 전체 | - | 2.9 | 79.4 | 17.6 | 3.1 | - | 17.6 | 82.4 | - | 2.8 | (34) |
| 시도 | - | - | 73.3 | 26.7 | 3.3 | - | 26.7 | 73.3 | - | 2.7 | (15) |
| 시군구 | - | 5.3 | 84.2 | 10.5 | 3.1 | - | 10.5 | 89.5 | - | 2.9 | (19) |
| <i>t</i> | | | | | 1.4 | | | | | -1.2 |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모모니터링에 관한 보육공무원·보육관계자 조사」 결과임.

지표 개선의 한 방법으로 각 문항(관찰내용)에 대해 각각 1점을 부여하여 평가하고, 총점을 기준으로 컨설팅 대상을 선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보육공무원과 보육정보센터 담당자 80% 내외가 찬성하였고, 동의정도는 지역별 유의한 차이 없이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었다.



[그림 IV-1-2] 부모모니터링 지표 개선의 필요정도

2. 지표의 적절성

가. 영역·항목·문항 및 관찰내용의 적절성

부모모니터링 지표는 4개 영역, 13개 항목, 50개 관찰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IV-2-1>은 이에 대한 적절성을 나타낸다. 보육공무원은 영역 95.2%, 항목 91.6%, 문항·관찰 내용 80.8%가 적절하다고 답하였다. 지역별로 보면, 영역과 항목에 대해 읍면지역이 도시지역보다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문항·관찰 내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응답비율은 읍면지역일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보육정보센터 담당자 의견을 보면, 영역과 항목에 대해서는 적절하다는 응답이 80~90%로 높은 편이나 문항·관찰내용에 대해서는 50% 정도만 적절하다고 보았다. 지역별로 보면, 시군구보다 시도 담당자가 영역, 항목, 문항·관찰내용 모두에 대해 줄일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IV-2-1> 부모모니터링 지표 영역·항목·문항내용의 적절성

단위: %(명)

| 구분 | 영역(4개 영역) | | | 항목(13개 항목) | | | 문항·관찰내용 | | | (수) |
|--------|-----------|------|----------|------------|------|----------|----------|------|----------|-------|
| | 줄일 필요 있음 | 적절 | 늘일 필요 있음 | 줄일 필요 있음 | 적절 | 늘일 필요 있음 | 줄일 필요 있음 | 적절 | 늘일 필요 있음 | |
| 보육공무원 | | | | | | | | | | |
| 전체 | 2.4 | 95.2 | 2.4 | 6.6 | 91.6 | 1.8 | 16.8 | 80.8 | 2.4 | (167) |
| 대도시 | 2.2 | 95.6 | 2.2 | 6.5 | 91.3 | 2.2 | 13.0 | 84.8 | 2.2 | (46) |
| 중소도시 | 3.2 | 93.7 | 3.2 | 7.9 | 90.5 | 1.6 | 17.5 | 79.4 | 3.2 | (63) |
| 읍면지역 | 1.7 | 96.6 | 1.7 | 5.2 | 93.1 | 1.7 | 19.0 | 79.3 | 1.7 | (58) |
| 보육정보센터 | | | | | | | | | | |
| 전체 | 8.8 | 91.2 | - | 17.6 | 82.4 | - | 41.2 | 52.9 | 5.9 | (34) |
| 시도 | 13.3 | 86.7 | - | 20.0 | 80.0 | - | 46.7 | 53.3 | - | (15) |
| 시군구 | 5.3 | 94.7 | - | 15.8 | 84.2 | - | 36.8 | 52.6 | 10.5 | (19)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모모니터링에 관한 보육공무원·보육관계자 조사」 결과임.

나. 확인방법의 적절성

부모모니터링 확인방법은 문서, 관찰, 면담 3가지로 이루어진다. 이에 대한 적절성 정도도 살펴보았다. 보육공무원은 문서, 관찰, 면담 각각에 대해 80~90% 정도가 적절하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적절성 정도는 문서와 면담이 4점 평균

2.9점으로 관찰 3.1점보다 낮은 수준이다.

한편, 보육정보센터 담당자는 관찰이나 면담에 대해 보육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적절하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으나 문서는 보육공무원보다 낮은 70% 정도만 적절하다고 보았다. 적절성 점수는 문서가 4점 평균 2.8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관찰은 시도 담당자보다 시군구가 더 적절하다고 답하였다.

〈표 IV-2-2〉 부모모니터링 확인방법의 적절성

단위: %(명)

| 구분 | 문서 | | | | | 관찰 | | | | | 면담 | | | | | (수) |
|----------|--------|------|------|-------|------|--------|-----|------|-------|-------|--------|------|------|-------|------|-------|
| | 매우 부적절 | 부적절 | 적절 | 매우 적절 | 평균 | 매우 부적절 | 부적절 | 적절 | 매우 적절 | 평균 | 매우 부적절 | 부적절 | 적절 | 매우 적절 | 평균 | |
| 보육공무원 | | | | | | | | | | | | | | | | |
| 전체 | 1.2 | 11.4 | 83.8 | 3.6 | 2.9 | - | 2.4 | 88.0 | 9.6 | 3.1 | - | 9.0 | 87.4 | 3.6 | 2.9 | (167) |
| 대도시 | - | 10.9 | 82.6 | 6.5 | 3.0 | - | 2.2 | 87.0 | 10.9 | 3.1 | - | 6.5 | 87.0 | 6.5 | 3.0 | (46) |
| 중소도시 | 1.6 | 15.9 | 77.8 | 4.8 | 2.9 | - | 3.2 | 84.1 | 12.7 | 3.1 | - | 7.9 | 88.9 | 3.2 | 3.0 | (63) |
| 읍면지역 | 1.7 | 6.9 | 91.4 | - | 2.9 | - | 1.7 | 93.1 | 5.2 | 3.0 | - | 12.1 | 86.2 | 1.7 | 2.9 | (58) |
| <i>F</i> | | | | | 0.7 | | | | | 0.5 | | | | | | 1.1 |
| 보육정보센터 | | | | | | | | | | | | | | | | |
| 전체 | 3.0 | 27.3 | 54.5 | 15.2 | 2.8 | - | 3.0 | 72.7 | 24.2 | 3.2 | - | 6.1 | 81.8 | 12.1 | 3.1 | (34) |
| 시도 | - | 35.7 | 57.1 | 7.1 | 2.7 | - | 7.1 | 85.7 | 7.1 | 3.0 | - | 7.1 | 85.7 | 7.1 | 3.0 | (15) |
| 시군구 | 5.3 | 21.1 | 52.6 | 21.1 | 2.9 | - | - | 63.2 | 36.8 | 3.4 | - | 5.3 | 78.9 | 15.8 | 3.1 | (19) |
| <i>t</i> | | | | | -0.7 | | | | | -2.4* | | | | | -0.7 |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모모니터링에 관한 보육공무원·보육관계자 조사」 결과임.

* $p < .05$

다. 세부지표의 적절성

부모모니터링 사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보육정보센터 담당자를 대상으로 건강관리, 식단 및 조리관리, 위생관리, 물리적 환경에 대한 안전관리 4개 영역 50개 관찰내용의 적절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건강관리 영역은 예방접종, 응급조치체계, 정기건강검진 3개 항목 총 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방접종 항목에서 입소 30일 이내 영유아 예방접종 확인과 생활기록부에 예방접종 사항 기록 관리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20% 정도로 높았다. 정기건강검진 영역 중 보육교직원의 건강진단결과 감염병이 의심되거나 판명되는 자는 완치 시까지 휴직 또는 면직 조치한다는 문항은 다른 문항에 비해 부적절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건강관리 영역 관찰내용의 적절성 정도는 4점 척도로 평균 3.1~3.7점 대로 높은 편이다.

〈표 IV-2-3〉 건강관리 세부지표의 적절성

단위: %(명), 점

| 구분 | 매우 부적절 | 부적절 | 대체로 적절 | 매우 적절 | 계(수) | 4점 평균 |
|--|--------|------|--------|-------|-----------|-------|
| 예방접종 | | | | | | |
| 1. 입소 30일 이내 영유아 예방접종 확인 | 8.8 | 11.8 | 38.2 | 41.2 | 100.0(34) | 3.12 |
| 2. 필수 예방접종 받지 아니한 영유아 보호자 안내지도 | 2.9 | - | 41.2 | 55.9 | 100.0(34) | 3.50 |
| 3. 생활기록부에 예방접종 사항 기록 관리 | 5.9 | 14.7 | 38.2 | 41.2 | 100.0(34) | 3.15 |
| 응급조치체계 | | | | | | |
| 1. 영유아에게 위급상태가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 이송체계 | - | 5.9 | 20.6 | 73.5 | 100.0(34) | 3.68 |
| 2. 영유아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비상 약품 및 간이 의료기구 등을 비치하여 관리 | - | 2.9 | 20.6 | 76.5 | 100.0(34) | 3.74 |
| 3. 식중독 및 전염병 등 의심되는 증상 발견 시 시군구청 보육담당부서 및 보건소에 신고체계 구축 | 5.9 | 5.9 | 23.5 | 64.7 | 100.0(34) | 3.47 |
| 정기건강검진 | | | | | | |
| 1. 영유아와 보육교직원 건강검진 연 1회 실시, 증빙서류 비치 | 2.9 | 8.8 | 20.6 | 67.6 | 100.0(34) | 3.53 |
| 2. 치료 요하는 영유아 보호자와 협의하여 조치, 전염성 질환 감염 시 격리 치료 | 2.9 | 2.9 | 29.4 | 64.7 | 100.0(34) | 3.56 |
| 3. 보육교직원의 건강진단결과 감염병이 의심되거나 판명되는 자는 완치 시까지 휴직 또는 면직 조치 | 2.9 | 11.8 | 26.5 | 58.8 | 100.0(34) | 3.41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모모니터링에 관한 보육관계자 조사」 결과임.

<표 IV-2-4>와 같이, 식단 및 조리관리는 식단 및 조리관리, 식재료 관리, 영양관리 3개 항목, 총 1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식단 및 조리관리 관찰내용의 적절성을 살펴보면, 음식 조리(크기, 맛 등) 영유아가 먹기에 적절하다 관찰내용만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20% 이상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10% 미만이다.

〈표 IV-2-4〉 급식관리 세부지표의 적절성

단위: %(명), 점

| 구분 | 매우 부적절 | 부적절 | 대체로 적절 | 매우 적절 | 계(수) | 4점 평균 |
|--|--------|------|--------|-------|-----------|-------|
| 식단 및 조리관리 | | | | | | |
| 1. 영양사 작성한 식단표 대로 제공 | - | 8.8 | 32.4 | 58.8 | 100.0(34) | 3.50 |
| 2. 급식은 어린이집 직접 조리, 제공 | - | 2.9 | 23.5 | 73.5 | 100.0(34) | 3.71 |
| 3. 음식 조리(크기, 맛 등) 영유아 먹기 적절 | - | 20.6 | 23.5 | 55.9 | 100.0(34) | 3.35 |
| 4. 당일에 조리한 음식 당일에 소비 원칙준수 (50인이상은 2시간 이내 배식, 섭취) | - | 5.9 | 20.6 | 73.5 | 100.0(34) | 3.68 |
| 5. 50인이상) 급식 제공 어린이집 급단급식소 신고 운영, 조리사 배치 | - | 2.9 | 20.6 | 76.5 | 100.0(34) | 3.74 |

(표 IV-2-4 계속)

| 구분 | 매우 부적절 | 부적절 | 대체로 적절 | 매우 적절 | 계(수) | 4점 평균 |
|---|-----------|------|-----------|----------|-----------|----------|
| 식재료 관리 | | | | | | |
| 1. 식재료 보관규정(입고날짜기입, 냉동·냉장·온실보관, 유통기한 준수) 준수 | 2.9 | 5.9 | 20.6 | 70.6 | 100.0(34) | 3.59 |
| 2. 식단표상의 식재료 원산지 표기대로 구입 | 5.9 | 8.8 | 20.6 | 64.7 | 100.0(34) | 3.44 |
| 3. 식재료 보관장소 청결 위생적, 식품과 소모품 별도 구분 관리 | - | - | 29.4 | 70.6 | 100.0(34) | 3.71 |
| 4. (50인이상)집단급식소 식재료 검수일지 작성, 관리 | 11.8 | 5.9 | 26.5 | 55.9 | 100.0(34) | 3.26 |
| 영양관리 | | | | | | |
| 1. 급식은 탄수화물, 단백질 및 지방섭취 균형 제공 | 5.9 | 23.5 | 20.6 | 50.0 | 100.0(34) | 3.15 |
| 2. 제철 과일 및 채소 등 주3회 이상 간식 제공 | 2.9 | 8.8 | 29.4 | 58.8 | 100.0(34) | 3.44 |
| 3. 특별한 음식 필요로 하는 영아·유아 보호자 요구 반영하여 음식 제공 | 2.9 | 17.6 | 35.3 | 44.1 | 100.0(34) | 3.21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모모니터링에 관한 보육관계자 조사」 결과임.

식재료 관리 항목에서는 식단표 상의 식재료 원산지 표기대로 구입과 (50인 이상) 집단급식소 식재료 검수일지 작성 및 관리의 부적절 응답이 15% 내외로 높고, 영양관리에서는 급식은 탄수화물, 단백질 및 지방섭취 균형 제공과 특별한 음식을 필요로 하는 영유아의 경우 보호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음식을 제공한다는 관찰내용은 20%가 넘는다.

<표 IV-2-5>는 위생관리 영역 관찰내용의 적절성을 나타낸다. 위생관리는 급식위생관리, 조리실 청결, 시설·설비 위생 3개 항목 총 12개 관찰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급식위생관리 항목 중 조리직원이 위생모, 위생복, 위생화 등을 착용하고 조리한다는 부적절하다는 응답비율이 15%에 근접하여 나머지 관찰내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조리실 청결관리 항목의 3개 관찰 내용 중 조리실 청결, 주방용구의 세척, 살균 및 소독에 대한 사항과 후드, 환풍기 설치, 출입문 방충, 방서 설비, 바닥 천장 등의 청결 상태도 10% 이상이 부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6개 문항으로 구성된 시설설비 위생 항목에서는 현관, 복도, 계단, 화장실, 세면실 등 청결 유지와 정기 소독 및 대청소 실시 관찰내용에 대해 15~20% 정도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었다.

<표 IV-2-5> 위생관리 세부지표의 적절성

단위: %(명), 점

| 구분 | 매우 부적절 | 부적절 | 대체로 적절 | 매우 적절 | 계(수) | 4점 평균 |
|---|--------|------|--------|-------|-----------|-------|
| 급식위생관리 | | | | | | |
| 1. 조리직원 위생모, 위생복, 위생화 등 착용, 조리 | 2.9 | 11.8 | 29.4 | 55.9 | 100.0(34) | 3.38 |
| 2. 급식 및 배식관리 청결 위생 | - | 8.8 | 17.6 | 73.5 | 100.0(34) | 3.65 |
| 3. 식수, 우유, 모유, 이유식 등 위생적 관리 | 2.9 | 2.9 | 23.5 | 70.6 | 100.0(34) | 3.62 |
| 조리실 청결 | | | | | | |
| 1. 조리실 청결, 식기, 도마, 칼, 행주, 기타 주방 용구 세척 살균 및 소독 | 2.9 | 8.8 | 17.6 | 70.6 | 100.0(34) | 3.56 |
| 2. 어류, 육류, 채소류 취급 칼, 도마 각각 구분 사용 | 2.9 | - | 23.5 | 73.5 | 100.0(34) | 3.68 |
| 3. 후드, 환풍기 설치, 출입문 방충·방서 설비, 바닥, 천장 등 청결 | - | 11.8 | 20.6 | 67.6 | 100.0(34) | 3.56 |
| 시설·설비 위생 | | | | | | |
| 1. 현관, 복도, 계단, 화장실, 세면실 등 청결 유지 | 2.9 | 14.7 | 23.5 | 58.8 | 100.0(34) | 3.38 |
| 2. 보육실의 놀잇감 및 영유아 침구 청결 유지 | - | 2.9 | 23.5 | 73.5 | 100.0(34) | 3.71 |
| 3. 칫솔, 칫솔컵 매일 소독하여 청결 유지 | - | 2.9 | 32.4 | 64.7 | 100.0(34) | 3.62 |
| 4. 정기 소독 및 대청소 실시 | 2.9 | 17.6 | 23.5 | 55.9 | 100.0(34) | 3.32 |
| 5. 실내환기, 청소 등 수시 실시, 실내공기질 유지 관리 | 2.9 | 8.8 | 35.3 | 52.9 | 100.0(34) | 3.38 |
| 6. 어린이집 석면 관리(430㎡이상의 어린이집) | 5.9 | 5.9 | 29.4 | 58.8 | 100.0(34) | 3.41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모모니터링에 관한 보육관계자 조사」 결과임.

물리적 환경에 대한 관리, 인적환경에 대한 안전관리, 차량안전관리, 아동학대 예방 및 조치 등으로 구성된 물리적 환경에 대한 안전관리의 적절성은 <표 IV-2-6>과 같다. 앞서 살펴본 영역에 비해 전반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응답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먼저, 물리적 환경에 대한 관리 항목 6개 관찰내용 중 어린이집 실내·외 모든 공간 안전점검표 비치하고 매일 매일 안전점검을 실시한다에 대해 25% 이상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었다.

인적환경에 대한 안전관리 항목에서 보육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계획 실시, 부모도 안전교육에 참여하도록 안내한다는 내용은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29.4%로 높은 편이다. 아동복지법상의 안전교육 기준에 의거하여 영유아 안전교육을 계획하고 실시한다는 관찰내용 또한 25% 가까이가 부적절하다고 답하였다.

차량 안전관리 항목과 아동학대 예방 및 조치 항목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5~10% 사이로 응답자 대부분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표 IV-2-6〉 안전관리 세부지표의 적절성

단위: %(명), 점

| 구분 | 매우 부적절 | 부적절 | 대체로 적절 | 매우 적절 | 계(수) | 4점 평균 |
|---|-----------|------|-----------|----------|-----------|----------|
| 물리적 환경에 대한 관리 | | | | | | |
| 1. 어린이집 실내·외 모든 공간 안전점검표 비치, 매일·매월 안전점검 | 11.8 | 14.7 | 35.3 | 38.2 | 100.0(34) | 3.00 |
| 2. 실내외 시설·설비 및 놀이시설 안전장치 | - | - | 26.5 | 73.5 | 100.0(34) | 3.74 |
| 3. 영유아용 실내·외 놀이감 안전 | - | 5.9 | 20.6 | 73.5 | 100.0(34) | 3.68 |
| 4. 세면대 수도와 정수기 등 안전조치 | - | - | 29.4 | 70.6 | 100.0(34) | 3.71 |
| 5. 비상약품 및 투약용기, 위험물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장소 별도 보관 | - | 5.9 | 23.5 | 70.6 | 100.0(34) | 3.65 |
| 6. 화재 등 긴급사태 대비한 안전시설 및 설비 관리, 대처 방안 구축 | - | 5.9 | 23.5 | 70.6 | 100.0(34) | 3.74 |
| 인적환경에 대한 안전관리 | | | | | | |
| 1. 아동복지법상의 안전교육 기준에 의거하여 영유아 안전교육 계획, 실시 | 14.7 | 8.8 | 23.5 | 52.9 | 100.0(34) | 3.15 |
| 2. 보육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계획 실시, 부모도 안전교육 참여 안내 | 2.9 | 26.5 | 29.4 | 41.2 | 100.0(34) | 3.09 |
| 3. 소방훈련 매월 계획·실시·평가 | - | 2.9 | 29.4 | 67.6 | 100.0(34) | 3.65 |
| 4. 영유아 장소이동, 일과 중 교사 교체시 영유아 인수인계과정 구축 | 8.8 | 8.8 | 23.5 | 58.8 | 100.0(34) | 3.32 |
| 차량 안전관리 | | | | | | |
| 1. 어린이집 통학버스 신고필증 구비 | - | - | 20.6 | 79.4 | 100.0(34) | 3.79 |
| 2. 차량 안전설비 구비 및 관리 | 2.9 | 2.9 | 20.6 | 73.5 | 100.0(34) | 3.65 |
| 3. 차량안전수칙 비치 및 숙지, 차량안전점검표 안전점검 실시 | - | - | 26.5 | 73.5 | 100.0(34) | 3.74 |
| 4. 차량운전일지 및 등·하원일지 작성, 차량 안전운행 | 5.9 | 2.9 | 26.5 | 64.7 | 100.0(34) | 3.50 |
| 아동학대 예방 및 조치 | | | | | | |
| 1. 모든 보육교직원 아동학대예방에 관한 외부 기관 교육 이수 | - | 11.8 | 26.5 | 61.8 | 100.0(34) | 3.50 |
| 2. 모든 보육교직원 신고의무자로서의 역할 인지, 아동학대 발견시 신고 및 상담전화 이용 방법 숙지 | 5.9 | - | 20.6 | 73.5 | 100.0(34) | 3.62 |
| 3. 모든 보육교직원 자체 아동학대예방교육 진행 | - | 11.8 | 23.5 | 64.7 | 100.0(34) | 3.53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모모니터링에 관한 보육관계자 조사」 결과임.

3. 부모모니터링과 평가인증 지표 비교

최근 어린이집 문서 간소화 정책에 따라 평가인증도 문서 확인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지표를 개선하고 있다. 그러나 부모모니터링은 평가인증에서도 구비하지 않는 문서로 확인하고 있어 현장에서는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제도라며 반

말이 적지 않다. 앞서 살펴본 3장에서도 보육공무원과 보육정보센터 담당자 모두 부모모니터링 지표 중 평가인증 지표와 기준이 상이한 문항이 많다는 문제에 대해 의견이 같이 하고 있어 부모모니터링과 평가인증 지표의 평가방법과 그 기준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 분석하고 이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건강관리, 식단 및 조리관리, 위생관리, 물리적 환경에 대한 안전관리 4개 영역의 50개 관찰내용과 관련있는 평가인증 지표 확인방법과 기준을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가. 건강관리

<표 IV-3-1>은 부모모니터링 건강관리와 평가인증 영역5 건강과 영양, 영역6 안전 영역의 확인방법을 비교한 것이다. 건강영역 9개 관찰내용 중 8개가 문서를 통해 확인하고, 면담이나 관찰은 3개 정도이다. 평가인증도 대부분 문서로 평가하나 관찰과 면담을 병행하는 문항이 많다.

<표 IV-3-1> 부모모니터링과 평가인증 지표 비교: 건강관리

| 부모모니터링 | | | | 평가인증 | | | |
|-------------------------------------|----|----|----|---|----|----|----|
| 지표 | 관찰 | 면담 | 문서 | 지표 | 관찰 | 면담 | 문서 |
| 1. 영유아 예방 접종 | | | | | | | |
| 1) 예방접종 여부 확인 | | | ○ | 대5-10(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건강관리) | | ○ | ○ |
| 2) 필수예방접종 안내지도 | | | ○ | | | | |
| 3) 생활기록부에 예방접종관련 기록 관리 | | | ○ | | | | |
| 2. 응급 조치 체계 | | | | | | | |
| 1) 위급상황 대비 의료기관 이송 체계 | | | ○ | 대5-9(아프거나 다친 영유아 보호) | ○ | ○ | ○ |
| 2) 비상약품 및 간이 의료기구 등 비치 관리 | ○ | | | 대5-9(아프거나 다친 영유아 보호) 대6-5(실내외 위험한 물건 보관) | ○ | ○ | ○ |
| 3) 식중독 및 전염병 등 증상 발견 시 신고체계 | | ○ | ○ | 대5-10(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건강관리) | | ○ | ○ |
| 3. 정기 건강 검진 | | | | | | | |
| 1) 영유아와 보육교직원 건강검진 실시 및 증빙서류 비치 | | | ○ | 대5-10(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건강관리) | | ○ | ○ |
| 2) 치료를 요하는 영유아에 대한 조치 및 전염성 질환 시 조치 | | | ○ | | | | |
| 3) 감염병 의심 및 판명된 보육교직원 조치 | | ○ | ○ | | | | |

자료: 보건복지부(2013). 2013 아이사랑부모모니터링단 운영매뉴얼.

보건복지부(2013). 2013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40인 이상 어린이집).

정기 건강검진 항목 중 영유아의 건강검진 실시와 그 증빙서류 보관은 부모 모니터링과 평가인증이 그 기준이 동일하지만 건강검진 실시 시기에서 차이가 난다. 부모모니터링의 경우, 전년도 검진을 실시한 경우 당해년도 연말까지 검진하도록 하고 있으나, 평가인증은 영유아별로 전년도 건강검진 실시 시기를 기준으로 당해연도 관찰일까지 1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미도래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즉, 부모모니터링과 평가인증 간에 건강검진 실시 인정 시기에 대한 기준이 상이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감염병 의심 및 판명된 보육교직원의 질환 완치후 복직시에 전염성 질환 완치소견서 제출의 경우, 평가인증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따라서 어린이집은 부모모니터링을 위해 이와 관련한 문서를 추가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표 IV-3-2〉 부모모니터링과 평가인증 지표 비교: 건강관리

| 부모모니터링 | | 평가인증 |
|------------|---|--------------------------|
| 내용 | 확인내용 | |
| 3. 정기 건강검진 | ① 영유아와 보육교직원 건강검진 실시 및 증빙서류 비치 ③ 감염병 의심 및 판명된 보육교직원 조치 | 대5-10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건강관리) |
| | · 전년도에 검진을 실시한 경우, 당해연도는 연말까지 검진을 하면 됨 · 전염성 질환 완치후 복직시 전염성질환 완치 소견서 | |

나. 급식관리

급식관리 영역은 12개 관찰 내용 중 7개를 문서로 확인한다. 건강관리 영역에 비해 관찰로 확인하는 내용이 많으나 주요 확인 방법은 문서이다.

급식관리 영역 중 평가인증 지표와 상이한 관찰내용은 급식 음식 당일 조리 및 당일 소비 원칙 준수 항목이다. 당일 조리, 당일 소비 원칙은 평가인증과 동일하나 부모모니터링은 50인 이상 집단배식소로 등록된 어린이집의 경우, 2시간 이내 배식 및 섭취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항을 추가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또한 평가인증에서는 확인하지 않는 50인 이상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신고운영 및 조리사 배치, 원산지 표기 및 식재료 보관 장소 및 관리, 50인 이상 집단급식소 식재료 검수일지 작성 관리 등이 부모모니터링 지표에 포함되어 있다.

<표 IV-3-3> 부모모니터링과 평가인증 지표 비교: 급식관리

| 부모모니터링 | | | | 평가인증 | | | |
|-------------------------------------|----|----|----|--|----|----|----|
| 지표 | 관찰 | 면담 | 문서 | 지표 | 관찰 | 면담 | 문서 |
| 4. 식단 및 조리 관리 | | | | | | | |
| 1)영양사가 작성한 식단표에 따른 제공 | ○ | | ○ | 대5-11(영유아를 위한 급식) 대5-12(영유아를 위한 간식) | ○ | | ○ |
| 2)급식 직접 조리 및 제공 | ○ | | | | | | |
| 3)영유아에게 적절한 음식 조리 | ○ | | | 대5-11(영유아를 위한 급식) | ○ | | ○ |
| 4)음식 당일 조리 당일 소비 원칙 준수 | ○ | ○ | | 대5-11(영유아를 위한 급식) | ○ | | ○ |
| 5)(50인 이상)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신고·운영, 조리사 배치 | | | ○ | | | | |
| 5. 식재료 관리 | | | | | | | |
| 1)식재료 보관 규정 준수 | ○ | | | 대5-6(식자재, 조리 및 배식 과정의 위생적 관리) | ○ | | |
| 2)식단표상의 식재료 원산지 표기 대로 구입 | ○ | | ○ | | | | |
| 3)식재료 보관 장소 위생 및 식품과 소모품 별도 관리 | ○ | | | | | | |
| 4)(50인 이상) 집단급식소 식재료 검수일지 작성 관리 | | | ○ | | | | |
| 6. 영양관리 | | | | | | | |
| 1)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균형 있게 제공 | | | ○ | 대5-11(영유아를 위한 급식) 대5-12(영유아를 위한 간식) | ○ | | ○ |
| 2)비타민과 무기질 균형 공급 | | | ○ | 대5-12(영유아를 위한 간식) | ○ | | ○ |
| 3)특별한 음식 필요한 영유아 보호자 요구 반영한 음식 제공 | | ○ | ○ | | | | |

자료: 보건복지부(2013). 2013 아이사랑부모모니터링단 운영매뉴얼.
 보건복지부(2013). 2013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40인 이상 어린이집).

<표 IV-3-4> 부모모니터링과 평가인증 지표 상세비교: 급식관리

| 부모모니터링 | | | 평가인증 |
|---------------|------------------------|--------------------------------|--------------------|
| 구분 | 내용 | 확인내용 | |
| 4. 식단 및 조리 관리 | ④ 음식 당일 조리 당일 소비 원칙 준수 | · 집단배식소(50인 이상) 2시간 이내 배식 및 섭취 | 대5-11 (영유아를 위한 급식) |

다. 위생관리

위생관리 영역은 12개 관찰내용 중 4개를 문서로 확인한다. 위생관리 영역에서 주목할 사항은 평가인증에서는 관찰로 이루어지는 내용을 문서로 확인하는 것이다.

조리실과 조리도구 및 기타 주방용구 위생관리의 경우, 부모모니터링은 급식 위생관리 체크리스트로 확인하나 평가인증은 조리도구 사용 및 청결유지 상태를 관찰로 평가한다.

현관, 복도, 계단, 화장실, 세면실 등 실내 공간 청결 유지도 마찬가지로 평가인증에서는 관찰로 확인하나 부모모니터링은 위생관리 체크리스트로 확인하고 있다. 이 외에 정기적인 소독 및 대청소 실시, 실내공기질 유지도 관리일지나 외부업체에 의한 관리 문서로 확인한다. 이처럼 부모모니터링은 관찰 가능한 사항을 문서만으로 확인하고 있다.

〈표 IV-3-5〉 부모모니터링과 평가인증 지표 비교: 위생관리

| 부모모니터링 | | | | 평가인증 | | | |
|---|----|----|----|-------------------------------|----|----|----|
| 지표 | 관찰 | 면담 | 문서 | 지표 | 관찰 | 면담 | 문서 |
| 7. 급식 위생 관리 | | | | | | | |
| 1) 조리직원 위생모, 위생복, 위생화 등 착용 | ○ | | | | | | |
| 2) 급식 및 배식 위생 관리 | ○ | | | 대5-6(식자재, 조리 및 배식 과정의 위생적 관리) | ○ | | |
| 3) 식수, 우유, 모유, 이유식 등 관리 | ○ | | | | | | |
| 8. 조리실 청결 | | | | | | | |
| 1) 조리실 및 조리도구, 기타 주방용구 위생관리 | ○ | | ○ | 대5-5(조리실의 공간과 설비의 위생적 관리) | ○ | | |
| 2) 어류, 육류, 채소용 칼과 도마 구분 사용 | ○ | | | | | | |
| 3) 후드, 환풍기 설치 및 출입문 방충·방서 설비, 바닥, 천장 등 청결 | ○ | | | | | | |
| 9. 시설·설비 위생 | | | | | | | |
| 1) 현관, 복도, 계단, 화장실, 세면실 등 청결 | ○ | | | 대5-1(실내공간의 청결) | ○ | | |
| | | | | 대5-4(화장실과 세면장 청결) | ○ | | |
| 2) 보육실 놀잇감 및 영유아 침구 청결 | ○ | | | 대5-1(실내 공간의 청결) | ○ | | |
| | | | | 대5-3(놀잇감의 청결) | ○ | | |
| 3) 칫솔 및 칫솔컵 소독 및 청결 | ○ | | | 대5-7(영유아와 보육교사의 청결 유지) | ○ | | |
| 4) 정기적인 소독 및 대청소 실시 | | ○ | ○ | 대5-1(실내 공간의 청결) | ○ | | |
| 5) 실내환기, 청소 등을 수시 실시 및 실내 공기 질 유지관리 | ○ | | ○ | 대5-2(보육실 환기, 채광, 조명, 온도관리) | ○ | | |
| 6) 어린이집 석면안전관리 | | | ○ | | | | |

자료: 보건복지부(2013). 2013 아이사랑부모모니터링단 운영매뉴얼.

보건복지부(2013). 2013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40인 이상 어린이집).

특히 시설설비위생 항목의 어린이집 석면안전관리의 경우, 국공립, 법인, 민간어린이집은 2012년 4월부터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건축물 석면조사 실

시, 결과보존,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 및 교육이수, 유지관리기준 준수 및 이에 관한 보고 등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이 사항은 평가인증과 지도점검에서도 확인하지 않는 사항으로 논의가 필요하다.

〈표 IV-3-6〉 부모모니터링과 평가인증 지표 상세비교: 위생관리

| 부모모니터링 | | | 평가인증 |
|-------------|------------------------------------|-------------------------------------|-------------------------------------|
| 구분 | 내용 | 확인내용 | |
| 8. 조리실 청결 | ① 조리실 및 조리도구, 기타 주방용구 위생관리 | · 급식위생관리 체크리스트 | 대5-5 (조리실의 공간과 설비의 위생적 관리) |
| 9. 시설·설비 위생 | ① 현관, 복도, 계단, 화장실, 세면실 등 청결 | · 위생관리체크리스트 정기 관리 | 대5-1(실내공간의 청결) 대5-4(화장실과 세면장 청결) |
| | ④ 정기적인 소독 및 대청소 실시 | · 정기적인 소독 및 대청소 관련 일지(외부업체의뢰시 관련문서) | 대5-1(실내 공간의 청결) |
| | ⑤ 실내환기, 청소 등을 수시 실시 및 실내 공기 질 유지관리 | ·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및 관리 자료 | 대5-2(보육실 환기, 채광, 조명, 온도관리) |

라. 안전관리

안전관리 영역은 17개 관찰내용 중 10개를 문서로 확인한다. 관찰을 병행하는 관찰내용도 있으나 문서의 비중이 높다.

〈표 IV-3-7〉 부모모니터링과 평가인증 지표 비교: 안전관리

| 부모모니터링 | | | | 평가인증 | | | |
|--------------------------------------|----|----|----|--------------------------------------|----|----|----|
| 지표 | 관찰 | 면담 | 문서 | 지표 | 관찰 | 면담 | 문서 |
| 10. 물리적 환경에 대한 관리 | | | | | | | |
| 1)실내·외 모든 공간 안전점검표 비치, 매일·매월 안전점검 실시 | ○ | | ○ | 대6-2(실내시설의 안전관리) 대6-3(실외시설의 안전관리) | ○ | | |
| 2)실내·외 시설·설비 및 놀이시설 안전장치 | ○ | | | 대6-2(실내시설의 안전관리) 대6-3(실외시설의 안전관리) | ○ | | |
| 3)실내·외 놀잇감 안전 | ○ | | | 대6-4(실내외놀잇감의 안전관리) | ○ | | |
| 4)세면대 수도와 정수기 등 안전장치 | ○ | | | 대6-2(실내시설의 안전관리) | ○ | | |
| 5)비상약품 및 투약용기, 위험물 별도 보관 | ○ | | | 대6-5(실내외 위험한 물건의 보관) | ○ | | |
| 6)긴급 사태 대비한 안전시설 및 설비 관리, 및 대처방안 | ○ | ○ | | 대6-9(비상사태를 대비한 시설 및 설비와 대처방안) | ○ | | ○ |

(표 IV-3-7 계속)

| 부모모니터링 | | | | 평가인증 | | | |
|---|----|----|----|------------------------|----|----|----|
| 지표 | 관찰 | 면담 | 문서 | 지표 | 관찰 | 면담 | 문서 |
| 11. 인적 환경에 대한 안전관리 | | | | | | | |
| 1)영유아 안전교육 계획실시 | | | ○ | 대6-10(안전교육과 정기적인 소방훈련) | | | ○ |
| 2)보육교직원 대상 안전교육 계획 실시, 부모 안전교육 참여 안내 | | | ○ | | | | |
| 3)소방훈련 매월 계획·실시·평가 | | | ○ | | | | |
| 4)영유아 인수인계 과정 관리 | | ○ | ○ | 대6-7(영유아의 안전한 인계과정) | ○ | ○ | ○ |
| 12. 차량 안전관리 | | | | | | | |
| 1)어린이집 통학버스신고필증 구비 | | | ○ | 대6-8(어린이집 안전한 차량운행) | | | |
| 2)차량 안전설비 설치, 관리 | ○ | | | | | | |
| 3)차량안전수칙 비치 숙지, 차량안전점검표에 의한 안전점검 실시 | | ○ | ○ | | | ○ | ○ |
| 4)차량운행일지, 등·하원일지 작성 | | | ○ | | | | |
| 13. 아동학대 예방 및 조치 | | | | | | | |
| 1)모든 보육교직원 외부기관(아동보호전문기관, 보육정보센터 등)의 아동학대 예방교육 이수 | | ○ | ○ | | | | |
| 2)모든 보육교직원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역할, 아동 학대 발견 시 신고 및 상담전화 이용방법 숙지 | | ○ | | | | | |
| 3)모든 보육교직원 대상 자체 아동학대예방교육 진행 | | | ○ | | | | |

자료: 보건복지부(2013). 2013 아이사랑부모모니터링단 운영매뉴얼.
 보건복지부(2013). 2013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40인 이상 어린이집).

〈표 IV-3-8〉 부모모니터링과 평가인증 지표 상세 비교: 안전관리

| 부모모니터링 | | |
|------------------|---|---|
| 구분 | 내용 | 확인내용 |
| 9. 시설·설비 위생 | ⑥ 어린이집 석면안전관리 (연면적 430m ² 이상 어린이집) | · 석면조사 실시 및 결과기록, 보관 · 석면관리에 관리 보고 및 자료 제출 |
| 13. 아동학대 예방 및 조치 | ① 모든 보육교직원 외부기관 아동학대 예방교육 이수 | ·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 이수 증빙 |
| | ② 모든 보육교직원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역할 및 아동 학대 발견 시 신고 및 상담전화 이용 방법 숙지 | · 모든 보육교직원 아동학대신고의무자 역할숙지 · 아동학대 신고방법 숙지 · 아동학대 신고전화 보육실 비치 |
| | ③ 모든 보육교직원 대상 자체 아동학대예방교육 진행 | · 다양한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시 여부 (교사연수계획, 교사교육일지 등) |

물리적 환경에 대한 관리 지표 중 실내·외 모든 공간의 안전점검표 비치 및 안전점검 실시는 관찰과 문서로 확인하는데, 평가인증에서는 이와 관련된 지표를 2012년에 삭제하였다. 아동학대 예방 및 조치 관리의 경우, 아동복지법 시행

령 개정에 따라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연 8시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평가인증과 지도점검에서도 평가하지 않는 사항으로 관찰내용에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평가인증에서 관찰로 확인하는 많은 사항을 부모모니터링은 문서로 추가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장에서는 평가인증 대비용 문서와 부모모니터링용 문서를 별도로 구비하는 등 업무 과중을 겪고 있다. 정부의 문서 간소화 정책에 따라 확인 방법을 대폭 조정할 필요가 있다.

4. 정책 시사점

부모모니터링 지표의 적절성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부모모니터링 지표 개선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지표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보육공무원 70%가 인식하고 있었고, 보육정보센터 담당자는 이보다 많은 90% 이상이 이에 동의하였다. 또한 지역에 관계없이 지표 개선에 대한 동의정도가 비슷한 수준이었다.

둘째, 부모모니터링 지표는 평가인증과 기준을 동일하게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보육공무원은 평가인증과 기준이 상이한 문항이 많다는 문항에도 과반수가 넘는 71.7%가 찬성하였고 보육정보센터 담당자는 보육공무원보다 높은 비율로 평가인증과 기준이 상이한 문항이 많다는 의견에 동의하였다.

셋째, 부모모니터링 지표의 확인방법과 평가방법을 개선할 필요성을 나타내었다. 보육공무원과 보육정보센터 담당자 확인방법 중 문서가 많다는 점에 동의하였고, 평가내용에 상관없이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한다는 점에 보육공무원과 보육정보센터 담당자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였다. 또한 확인방법의 적절성에 대해 보육공무원은 대체로 적절하다고 평가하였으나 보육정보센터 담당자는 문서의 적절성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가 낮았다.

V. 정책 제언

본 연구는 부모모니터링 구성 및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담당하는 시도 및 시군구 보육공무원과 보육정보센터 담당자의 요구를 분석하였다. 이 외에도 부모모니터링 지표의 적절성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부모모니터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책 방안을 도출하고 지표 개선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정책 제언은 부모모니터링 운영 효율화 방안과 부모모니터링 지표 개선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1. 부모모니터링 운영 효율화 방안

가. 부모모니터링 성격 및 역할 재정립

부모모니터링은 사업을 착수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사업 목적과 달리 ‘제2의 지도점검’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이는 부모모니터링 선정기준이나 지표 개발 등이 철저한 검증없이 급하게 진행된 데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부모모니터링은 박근혜정부 국정과제이며, 2014년 예산이 두 배로 증액되어 사업 초기인 현 시점에서 그 성격과 역할을 확고히 하여 추진해 나가야 한다.

부모모니터링은 부모가 주체가 되어 부모의 눈으로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수준을 점검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현재 부모모니터링 운영체계는 부모가 아닌 보육전문가가 운영 주체이고, 모니터링인지 컨설팅인지 사업 목적이 불명확하다.

부모모니터링에서 부모가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 선정기준을 엄격히 하고, 사전교육 및 보수교육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또한 사업 명칭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모니터링으로서의 역할 강화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부모모니터링이 컨설팅 기능을 강화할 경우, 평가인증 컨설팅과 맞물려 현장에 혼선을 줄 수 있으므로 평가인증과 역할 분담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나.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체계 개편

시도 및 시군구가 사업운영을 맡고, 보육정보센터가 사전교육 및 컨설턴트 파견업무를 담당하는 현 운영체제를 유지한다. 일부 지역에서 외부기관에 사업 운영을 비롯한 교육, 컨설팅을 위탁하고 있으나 시도 및 시군구 단위로 사업을 운영한다.

부모모니터링 사업운영, 교육, 컨설팅 운영주체로 보육공무원은 보육정보센터를 지적하였고, 보육정보센터 담당자는 운영은 시군구, 교육과 컨설팅은 보육정보센터가 적절하다고 보았다. 보육공무원은 업무과중을 비롯한 부모모니터링 파견 일정 조정, 어린이집의 비협조적인 태도, 부모모니터링단의 중도 이탈자 발생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부모모니터링 사업 운영주체로 보육정보센터를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사업운영과 컨설팅이 한 기관에서 이루어질 경우, 객관성을 보장하기 어려우므로 현 운영체제가 적절하다.

다. 부모모니터링 사업에 적합한 예산 편성

부모모니터링 사업 예산에 수당, 사전교육 및 보수교육 운영비, 사업 운영비, 보육정보센터 담당인력 수당 등을 편성한다. 2013년 부모모니터링 예산은 수당과 사전교육 1회만을 인정하도록 편성되어 사업이 경직되어 운영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지역이 배정된 예산을 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모모니터링 예산편성 조정의 필요성에 대해 보육공무원 70%, 보육정보센터 90% 이상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예산편성 시 추가될 항목으로 보육공무원과 보육정보센터 담당자는 부모모니터링단 수당 증액, 교육예산, 보육정보센터 담당인력 수당을 들었다. 기타 의견으로 사업운영비나 교육 수당 등이 있었다. 따라서 2014년 예산편성 시 부모모니터링단 수당, 교육비, 보육정보센터 담당인력 수당 등을 추가 편성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인다.

라. 부모모니터링단 사전교육 강화 및 보수교육 신설

부모모니터링단의 사전교육을 강화하고, 인력 교체 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상설화하며, 보수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조사 참여지역 중 94%가 사전교육을 실시하였고, 도시지역이 읍면지역보다 사전교육을 실시하였다는 비

율이 높았다. 또한 모니터링단 교체 인력에 대한 교육은 신규 인력 발생 시마다 사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가 40% 정도이었고, 나머지 23.6%는 일정 정원이 모이면 교육하거나 일부 지역은 월 또는 분기, 반기마다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였다. 심층면담에서 보육전문가는 사전교육의 내용이나 양이 적절하였다고 하였으나 부모요원은 사전교육이 부모모니터링 역할을 이해하는 데 부족하여 모니터링 파견 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보수교육 필요성에 대해 보육공무원과 보육정보센터 담당자 모두 인식하고 있었고, 교육주기는 보육공무원은 반기, 보육정보센터 담당자는 반기와 분기가 비슷한 수준이었다.

현장에서는 부모모니터링단의 자질에 대한 논란이 자주 일어나고 있으므로 사전교육을 강화한다. 사전교육은 부모모니터링단의 지표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내용 2일, 현장실습 3회(1일 1회 기준) 총 5일(1주일)동안 진행한다. 현장실습은 1조에 10명 이내의 소집단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며, 어린이집 규모별로 실시한다. 교체 인력에 대한 교육은 매달 실시하되, 교육 일정은 사전교육과 동일하게 운영한다.

또한 부모모니터링단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보수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한다. 보수교육은 지표에 대한 심화과정으로 구성하며, 운영자와 부모모니터링단 간의 소통의 장으로도 활용한다.

마. 부모모니터링단 처우 개선

1) 단기 방안: 부모모니터링단의 활동수당 차별화 및 현실화

부모모니터링단의 활동 수당을 차별화 및 현실화한다. 부모모니터링단 부모와 보육전문가 간 업무 기여도나 전문성에서 차이가 발생하므로 활동수당은 차등 지급하고, 현행 25,000원에서 부모는 30,000원, 보육전문가는 35,000원으로 인상한다. 보육공무원의 부모모니터링 사업운영의 어려움 중 하나가 부모모니터링단의 중도 이탈자 발생이었다. 초기 구성인원 중 38.9%가 중도에 이탈하나 인원충원은 이중 30% 정도만 이루어지고 있어 사업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탈자 발생 주요 원인은 비정기적인 활동으로 인해 일정 보수 보장이 어려워져 직장에 취업한다는 이유가 가장 많았다.

활동수당의 적절성에 대해 보육공무원 46.7%와 보육정보센터 담당자 73.5%가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상향조정 시 적정금액으로 보육공무원은 3만원

이 가장 많았고, 보육정보센터 담당자는 3만원, 3만 5천원, 5만원 등 의견이 다양하였다. 부모모니터링단 활동수당을 많이 올리는 것도 모니터링단 모집에 도움이 되겠으나 사업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부모는 30,000원, 보육전문가는 35,000원으로 인상한다. 2013년보다 20~40% 인상된 금액으로 1일 2개소 모니터링 시 부모는 6만원, 보육전문가는 7만원의 수당을 받게 된다.

2) 중장기 방안: 부모모니터링단 상해보험 가입

부모모니터링단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상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보육공무원 64.7%와 보육정보센터 담당자 80% 정도가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 서울시는 자체 예산으로 안심부모모니터링단과 동일한 기준으로 부모모니터링단의 상해보험을 가입해 주고 있다. 전북도 자체 예산으로 상해보험을 가입해 주고 있다. 부모모니터링단은 이동이 많아 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사고발생 시 치료비 등의 비용 부담이 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부모모니터링단 상해보험 가입을 위해 추가 예산 확보가 불가피하므로 예산 확보 후 추진한다.

바. 대상선정 기준 마련

부모모니터링 대상 어린이집은 무작위로 선정하며, 평가인증 받은 해에는 부모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 규정을 마련한다. 보육공무원 조사에서 대상 선정기준으로 지도점검 시 시정명령·행정처분 어린이집 우선 선정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무작위 선정, 민간·가정어린이집 우선 선정 순으로 나타나 지역에 따라 선정기준이 상이함을 알 수 있다. 지도점검에서 시정명령·행정처분 어린이집을 우선 선정할 경우, 낙인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 부모모니터링이 '제2의 지도점검'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어려우므로 대상 어린이집을 무작위 선정하며, 부모모니터링 확인 내용이 평가인증 지표와 동일하게 할 경우에는 평가인증 받은 해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사. 컨설팅 대상 어린이집의 사후관리 체계 마련

컨설팅 어린이집의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미흡 사항에 대해 컨설팅이

이루어진 후 확인 절차의 필요성에 대해 보육공무원 80%, 보육정보센터 담당자 90%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그 방법으로 부모모니터링이나 컨설팅을 추가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반적이었다. 현행 부모모니터링 운영 체계에서는 미흡 사항에 대해 컨설팅이 이루어지나 이후 개선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확인 절차가 전무하다. 부모모니터링이 보육서비스의 질 개선에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컨설팅 후 부모모니터링을 추가 실시하고, 여전히 미흡 사항으로 지적될 경우에는 개선될 때까지 컨설팅을 실시한다.

사. 운영매뉴얼 개선

부모모니터링 운영매뉴얼 내용을 보강하여 부모모니터링단의 이해를 돕는다. 부모모니터링 사업운영 매뉴얼의 충분성에 대해 보육공무원 30%, 보육정보센터 담당자 64.7%가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운영매뉴얼 개정 시 추가할 사항으로 보육공무원은 주요 상황별 FAQ, 50개 문항에 대한 설명, 부모모니터링단 역할 및 진행순서, 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방법 순으로 많이 선택하였고, 보육정보센터 담당자는 보육공원과 다르게 50개 문항에 대한 설명, 주요 상황별 FAQ, 부모모니터링단 역할 및 진행순서 순으로 꼽았다.

현재 부모모니터링단의 소개, 활동, 지표해설, 관련 양식으로 구성된 매뉴얼에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주요 상황별 FAQ, 50개 문항에 대한 설명, 부모모니터링단 역할 및 진행순서, 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방법 등을 보강한다.

아. 사업홍보를 통한 부모모니터링 인식 전환

부모모니터링 사업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하여 어린이집 대상의 홍보를 강화한다. 보육공무원 조사에서 사업운영의 어려움의 하나로 어린이집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들었다. 부모모니터링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어린이집의 협조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사업 취지 및 효과, 운영체계, 지표 등 사업 전반에 대해 어린이집 홍보를 강화한다. 또한 부모모니터링 대상 어린이집 가운데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포상 등의 보상체계를 마련하여 어린이집이 자발적으로 부모모니터링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자 장기 방안: 부모모니터링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부모모니터링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현재 부모모니터링단은 시도 및 시군구가 개별적으로 운영하며, 이를 통합관리하는 운영체계가 전문한 실정이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해 보육공무원 과반수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보육정보센터 담당자도 이에 대해 동의하였다. 담당 보육공무원은 업무 과중과 파견일정 조정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하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현재 보육업무를 통합·관리하는 어린이집통합시스템을 활용하여 부모모니터링 사업을 관리한다. 부모모니터링단 인력 및 파견일정 관리, 모니터링 및 컨설팅 결과 관리, 업무연락 등이 one-stop으로 이루어져 담당자의 업무 경감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한 모니터링 및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팩스나 이메일 등으로 보고하는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다.

2. 지표 개선(안)

가. 구성

부모모니터링 지표 개선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영역과 항목은 기존 형태를 최대한 유지한다.

둘째, 평가인증과 기준, 확인방법을 동일하게 맞춰 부모모니터링에 따른 추가적인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셋째, 확인방법 중 문서는 최소화한다.

넷째, 기준이 모호한 관찰내용은 명확하게 하고, 구체적인 예를 보강하여 부모모니터링단의 이해를 돕는다.

개정한 부모모니터링 지표의 영역별 항목 및 관찰내용은 <표 V-2-1>과 같다. 기존 지표와 동일하게 건강관리, 급식관리, 위생관리, 안전관리 4개 영역, 13개 항목으로 구성하였으나, 관찰내용은 50개에서 40개로 축소하였다.

〈표 V-2-1〉 부모모니터링 지표 변경 전후 구성 비교

| 변경 전 | | | 개정(안) | | |
|------|----|------|-------|----|------|
| 영역 | 항목 | 관찰내용 | 영역 | 항목 | 관찰내용 |
| 건강관리 | 3 | 9 | 건강관리 | 3 | 8 |
| 급식관리 | 3 | 12 | 급식관리 | 3 | 8 |
| 위생관리 | 3 | 12 | 위생관리 | 3 | 10 |
| 안전관리 | 4 | 17 | 안전관리 | 4 | 14 |
| 4 | 13 | 50 | 4 | 13 | 40 |

나. 확인 및 점수 산출방법

확인방법은 관찰, 면담, 문서 현행방법을 유지한다. 확인 여부는 ○, ×에서 미흡(0점), 보통(1점), 우수(2점) 3단계로 확인하며, 각 문항의 점수를 합산한 점수를 총점으로 한다(부록 2 참조).

컨설팅 대상은 40개 지표 중 30% 정도가 미흡한 경우, 즉, 총점 27점 이하인 어린이집을 선정한다.

다. 영역별 구성

1) 건강관리

건강관리 영역은 3개 항목 8개 관찰내용으로 개정하였고, 구체적인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입소 30일 이내 예방접종은 모니터링 시 확인이 어려우므로 삭제하였다. 또한 관찰내용 순서를 안내지도 확인 후 예방접종 사실 및 생활기록부를 확인하도록 변경하였으며, 문장 서술이 어색한 일부 문항을 수정하였다. 응급조치체계에서 비상약품 및 간이의료기구 등에 대한 종류를 평가인증과 동일하게 제시하였다(부록 2 참조).

건강관리 영역의 관찰내용별 확인방법 및 구체적인 변경내용은 <부록 표 V-2-1>과 부록 2의 「부모모니터링 매뉴얼 개정(안)」에 제시하였다.

〈표 V-2-2〉 부모모니터링 지표 및 확인방법 수정사항: 건강관리

| 지표 | 변경 전 | 개정(안) |
|-------------|--|---|
| 1. 영유아 예방접종 | ① 입소 30일 이내에 영유아의 예방접종 사실을 확인한다. | ①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예방접종을 안내 지도한다. |
| | ② 필수예방접종을 받지 아니한 영유아는 보호자에게 예방접종을 안내 지도한다. | ② 영유아의 예방접종 사실을 확인하고 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
| | ③ 생활기록부에 예방접종 사항을 기록 관리한다. | - |
| 2. 응급조치체계 | ① 영유아에게 위급상태가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 이송체계를 갖추고 있다. | ① 영유아에게 위급상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의료기관 이송체계를 갖추고 있다. |
| | ② 영유아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비상약품 및 간이 의료기구 등을 비치하여 관리하고 있다. | ② 비상약품 및 간이 의료기구 등은 영유아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비치하여 관리하고 있다. |
| | ③ 식중독 및 전염병 등 의심되는 증상 발견 시 시군구청 보육담당부서 및 보건소에 신고체계를 갖추고 있다. | ③ 식중독 및 전염병 등이 의심되는 증상 발견 시에 대비하여 시군구청 보육담당부서 및 보건소의 신고체계를 갖추고 있다. |
| 3. 정기건강검진 | ①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에 대한 건강검진을 연1회 실시하고, 그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있다. | ①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건강검진을 연1회 실시하고, 그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다. |
| | ② 치료를 요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경우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 치료토록 조치한다. | ② 치료를 요하는 영유아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경우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 치료하도록 조치한다. |
| | ③ 보육교직원의 건강진단결과 감염병이 의심되거나 판명되는 자는 완치 시까지 휴직 또는 면직 조치를 한다. | ③ 보육교직원의 건강진단결과 감염병이 의심되거나 판명되는 자는 완치 시까지 휴직 또는 면직 조치한다. |

2) 급식관리

급식관리 영역은 3개 항목 8개 관찰내용으로 개정하였다. 이 영역은 식단 및 조리관리, 식재료 관리, 영양관리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영양 및 식단관리, 조리관리, 식재료관리 항목으로 조정하고 항목별로 문항을 배치하였다.

식단 및 조리관리 항목에서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신고·운영 및 조리사 배치는 50인 이상 어린이집의 법적 의무사항이므로 삭제하였다.

식재료 관리 항목에서 식단표상의 식재료 원산지 표기대로 구입은 식재료 보관규정 준수에서 확인 가능하고, 식재료 검수일지 작성·관리는 평가인증에서도 평가사항이 아니므로 추가적인 기록·관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삭제하였다.

영양관리 항목은 식단관리 항목과 통합하였고, 3개 관찰내용 중 제철 야채 및 과일 주 3회 이상 간식 제공 문항만 유지하고 나머지는 삭제하였다. 특히, 식단

표가 영유아의 건강과 발달 및 영양 권장량 등이 고려되어 작성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확인이 부가적이라고 판단되어 삭제하였다.

급식관리 영역의 관찰내용별 확인방법 및 구체적인 변경내용은 <부록 표 V-2-2>와 부록 2 「부모모니터링 매뉴얼 개정(안)」에 제시하였다.

〈표 V-2-3〉 부모모니터링 지표 및 확인방법 수정사항: 급식관리

| 지표 | 관찰 내용 | 개정(안) | |
|---------------|---|---------------|---|
| 4. 식단 및 조리 관리 | ①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표대로 제공한다.(100인미만은 보육정보센터, 보건소 등 제공 식단) | 4. 영양 및 식단 관리 | ①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표대로 제공한다.(100인미만은 보육정보센터, 보건소 등 제공 식단) |
| | ② 급식은 어린이집에서 직접 조리하여 제공한다. | | ② 제철 과일 및 채소 등을 주3회 이상 간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
| | ③ 음식의 조리(크기, 맛 등)가 영유아가 먹기에 적절하다. | 5. 조리 관리 | ③ 음식의 조리(크기, 맛 등)가 영유아가 먹기에 적절하다. |
| | ④ 당일에 조리한 음식은 당일에 소비하는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50인 이상은 2시간 이내 배식, 섭취함) | | ① 급식은 어린이집에서 직접 조리하여 제공한다. |
| | ⑤ (50인이상) 급식을 제공하는 어린이집은 집단급식소로 신고 운영하고 조리사를 배치하고 있다. | | ② 당일에 조리한 음식은 당일에 소비하는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 |
| 5. 식재료 관리 | ① 식재료 보관규정(입고날짜기입, 냉동·냉장·실온보관, 유통기한 준수)을 준수하고 있다. | 6. 식재료 관리 | ① 식재료 보관규정(입고날짜기입, 냉동·냉장·실온보관, 유통기한)을 준수하고 있다. |
| | ② 식단표상의 식재료는 원산지 표기대로 구입하고 있다. | | ② 식단표상의 식재료는 원산지 표기대로 구입하고 있다. |
| | ③ 식재료 보관장소는 청결하고 위생적이며, 식품과 소모품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 | ③ 식재료 보관장소는 청결하고 위생적이며, 식품과 소모품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
| | ④ (50인이상) 집단급식소를 식재료 검수일지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다. | | |
| 6. 영양 관리 | ① 급식은 탄수화물, 단백질 및 지방섭취를 균형있게 제공하고 있다. | - | |
| | ② 비타민과 무기질을 균형있게 공급하기 위해 제철 과일 및 채소 등을 주3회 이상 간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 - | |
| | ③ 특별한 음식을 필요로 하는 영아나 유아에게는 그 보호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음식을 제공한다. | - | |

3) 위생관리

위생관리 영역은 3개 항목 10개 관찰내용으로 개정하였다. 구체적인 개정사항

을 살펴보면, 급식위생관리 영역의 조리실 청결 항목에서 조리실 및 조리도구, 기타 주방용구 위생관리 확인 방법 중 급식위생관리 체크리스트 확인사항을 삭제하였다. 또한 조리직원의 위생모, 위생복, 위생화 등의 착용 및 조리 관찰내용에서 가정어린이집은 위생화 착용 예외 시설로 매뉴얼에 명시하였다.

〈표 V-2-4〉 부모모니터링 지표 및 확인방법 수정사항: 위생관리

| 지표 | 관찰 내용 | 개정(안) |
|-------------|--|---|
| 7. 급식 위생 관리 | ① 조리직원은 위생모, 위생복, 위생화 등을 착용하고 조리한다. | ① 조리직원은 위생모, 위생복, 위생화 등을 착용하고 조리한다. |
| | ② 급식 및 배식관리가 청결하고 위생적이다. | ② 급·배식 도구가 청결하고 급배식 과정이 위생적이다. |
| | ③ 식수, 우유, 모유, 이유식 등 관리가 위생적이다.(컵, 젓병 등 1회 사용 및 소독관리 철저) | ③ 식수, 우유, 모유, 이유식 등 관리가 위생적이다.(컵, 젓병 등을 소독 관리하여 청결하게 사용) |
| 8. 조리실 청결 | ① 조리실은 청결하며, 식기, 도마, 칼, 행주, 기타 주방 용구를 세척 살균 및 소독한다. | ① 조리실이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② 조리도구 사용이 청결하고, 식기, 도마, 칼, 행주, 기타 주방 용구를 세척, 살균, 및 소독한다. |
| | ② 어류, 육류, 채소류를 취급하는 칼과 도마는 각각 구분하여 사용한다. | - |
| | ③ 후드, 환풍기가 설치되어 있고 출입문에 방충·방서 설비가 되어 있으며 바닥, 천장 등이 청결하다. | ③ 후드, 환풍기가 설치되어 있고 출입문에 방충·방서 설비가 되어 있다. |
| 9. 시설 설비 위생 | ① 현관, 복도, 계단, 화장실, 세면실 등이 청결하게 유지하고 있다. | ① 어린이집의 모든 공간(보육실, 현관, 복도, 계단, 화장실, 세면실)이 청결하게 유지·관리 되고 있다. |
| | ② 보육실의 놀잇감 및 영유아의 침구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있다. | ② 보육실의 놀잇감이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다. ③ 영유아가 사용하는 침구가 청결하게 유지 관리되고 있다. |
| | ③ 칫솔 상태가 바르고, 칫솔, 칫솔컵은 매일 소독하여 청결하게 유지하고 있다. | ④ 영유아가 사용하는 수건, 칫솔, 칫솔컵 등이 청결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다. |
| | ④ 어린이집 청결과 위생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소독 및 대청소를 실시하고 있다. | - |
| | ⑤ 실내환기, 청소 등을 수시로 하여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관리하고 있다. | - |
| | ⑥ 어린이집의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430㎡이상의 어린이집). | - |

조리실 청결 항목에서 벽, 바닥, 천장, 조리도구 등 조리실의 전반적인 청결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문항을 추가하였으며, 후드, 환풍기 등의 설비 설치와 관리 항목을 분리하여 문항을 구성하였다.

시설·설비 위생 항목에서는 실내 공간에 대한 정기적인 소독 및 대청소 실시를 현관, 복도 등을 포함하는 실내공간 청결 유지와 통합하여 수정하였다. 또한 위생관리 체크리스트를 삭제하고 확인방법을 문서대신 관찰로 조정하였다. 보육실의 놀잇감 및 영유아 침구 관리 문항에서 놀잇감과 침구는 성격이 다른 별개의 물품으로 문항을 분리하여 구성하였다. 칫솔 상태 관찰내용도 영유아가 이로 물거나 형태를 변형시킬 경우 확인이 불명확하므로 삭제하였다. 실내공기질 관리와 석면안전관리는 문서로만 확인이 가능하고, 부모모니터링단이 해당분야의 전문지식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삭제하였다.

위생관리 영역의 관찰내용별 확인방법 및 구체적인 변경내용은 <부록 표 V-2-3>과 부록 2 「부모모니터링 매뉴얼 개정(안)」에 제시하였다.

4) 안전관리

안전관리 영역은 4개 영역 14개 관찰내용으로 조정하였다. 구체적인 수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안전관리 영역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관리 항목 중 문서 확인 의존도가 높은 실내·외 모든 공간 안전점검표 비치, 매일·매월 안전점검 실시 관찰내용을 삭제하였다. 안전점검표 작성은 평가인증에서도 2012년에 삭제한 지표이다. 이 외에 비상약품 및 투약용기 관리는 앞서 설명한 건강관리 영역의 비상약품 관리와 중복되는 관찰내용이므로 삭제하였고,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위험물의 구체적인 예를 매뉴얼에 제시하였다.

인적 환경에 대한 안전관리 항목의 영유아 안전교육과 소방훈련 계획·실시 관찰내용을 통합하여 구성하였다. 평가인증에서도 안전교육과 소방훈련을 하나의 지표로 구성하여 사용하고 있어 동일하게 관찰내용을 수정하였다. 이와 함께 부모의 안전교육 참여 안내 사항은 어린이집에서 교육안내는 가능하나 부모참여는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삭제하였다. 또한 영유아의 인수인계는 영유아 등·하원 시 안전한 인수인계로 관찰 범위를 축소하였다.

차량안전관리 항목에서 차량안전점검표에 의한 차량 안전점검 확인방법 중 문서를 삭제하고, 등·하원 지도교사와 차량운전자의 차량안전수칙 숙지 여부를 면

담으로 실시하도록 하였다. 차량안전점검표는 평가인증에서도 삭제한 지표로 기준을 동일하게 맞추었다.

〈표 V-2-5〉 부모모니터링 지표 및 확인방법 수정사항: 안전관리

| 지표 | 관찰 내용 | 개정(안) |
|----------------------|---|---|
| 10. 물리적인 환경에 대한 안전관리 | ① 어린이집 실내외 모든 공간에 안전점검표를 비치하며 매일·매월 안전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다. | - |
| | ② 실내외 시설·설비 및 놀이시설에 안전장치(끼임방지, 모서리보호대)가 되어 있으며, 위험요소가 없다. | ① 실내외 시설·설비 및 놀이시설에 안전장치(끼임방지, 모서리보호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위험요소가 없다. |
| | ③ 영유아가 사용하는 실내외 놀잇감이 영유아에게 안전하다. | ② 영유아가 사용하는 실내외 놀잇감이 영유아에게 안전하다. |
| | ④ 세면대 수도와 정수기 등에 화상위험이 없도록 안전조치가 되어 있다. | ③ 세면대에 수도와 정수기 등에 화상위험이 없도록 안전조치가 되어 있다. |
| | ⑤ 비상약품 및 투약용기, 위험물을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장소에 별도로 보관하고 있다. | ④ 위험물은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장소에 별도로 보관하고 있다. |
| | ⑥ 화재 등 긴급 사태를 대비한 안전시설 및 설비가 잘 관리되며, 긴급사태에 대한 대처 방안을 갖추고 있다. | ⑤ 화재 등 긴급 사태를 대비한 안전시설 및 설비가 잘 관리되며, 긴급사태에 대한 대처 방안을 갖추고 있다. |
| 11. 인적 환경에 대한 안전관리 | ① 아동복지법 안전교육 기준에 의거하여 영유아 안전교육을 계획하며 실시하고 있다. | ① 영유아 안전교육과 소방훈련을 계획하여 실시하고 있다. |
| | ② 보육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계획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부모도 안전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 ② 보육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계획하여 실시하고 있다. |
| | ③ 소방훈련을 매일 계획·실시·평가하고 있다. | - |
| | ④ 영유아의 장소이동이나 일과 중 교사 교체 시 영유아에 대한 인수인계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 ③ 영유아 등·하원시 안전한 인계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
| 12. 차량 안전관리 | ① 어린이집의 모든 통학버스의 신고필증을 구비하고 있다. | ① 어린이집의 모든 통학차량의 신고필증을 구비하고 있다. |
| | ② 차량 안전설비(경광등, 차량용소화기, 차량용 구급상자, 개별 안전띠 및 안전필증을 받은 영아용 보호 장구 등)를 갖추고 관리하고 있다. | ② 어린이집의 모든 통학차량은 차량안전설비(경광등, 차량용소화기, 차량용 구급상자, 개별 안전띠 및 안전필증을 받은 영아용 보호 장구 등)를 갖추고 관리되고 있다. |
| | ③ 차량안전수칙을 비치하여 숙지하고, 차량안전점검표에 의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③ 등하원 지도교사와 차량운전자는 차량안전수칙을 비치하여 숙지하고 있다. |
| | ④ 차량운행일지 및 등·하원일지를 작성하여 안전하게 차량을 운행한다. | ④ 차량운행일지 및 등·하원일지를 작성하여 안전하게 차량을 운행한다. |

(표 V-2-5 계속)

| 지표 | 관찰 내용 | 개정(안) |
|------------------|---|--|
| 13. 아동학대 예방 및 조치 | ① 모든 보육교직원은 아동학대예방에 관한 외부기관(아동보호전문기관, 보육정보센터 등)의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 | ① 보육교직원은 아동학대예방에 관한 외부기관(아동보호전문기관, 보육정보센터 등)의 교육을 이수하였거나, 기관 자체적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
| | ② 모든 보육교직원이 신고의무자로서의 역할을 알고 있으며 아동학대 발견시 신고 및 상담전화를 이용할 줄 안다(☎ 1577-1391, 127). | ② 보육교직원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의 역할을 알고 있으며, 아동 학대 발견 시 신고 및 상담전화를 이용할 줄 안다. |
| | ③ 모든 보육교직원에게 자체적으로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 - |

아동학대 예방 및 조치 항목의 3개 문항에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모든 보육교직원의 범위를 원장, 보육교사, 취사부, 차량운전사 등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모든 자로 명시하였다. 또한 아동학대 외부 교육 이수와 기관 자체 실시 문항은 통합하여 하나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안전관리 영역의 관찰내용별 확인방법 및 구체적인 변경내용은 <부록 표 V-24>와 부록 2 「부모모니터링 매뉴얼 개정(안)」에 제시하였다.

3. 맺는말

본 보고서는 부모모니터링단의 안정적 정착 및 부모의 어린이집 운영 참여 통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 지표를 개선하고, 부모모니터링단의 전문성 향상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연구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국내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관련 법 및 제도, 통계자료 등을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부모모니터링 구성 및 운영, 지표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16개 시도 및 시군구 담당 공무원과 보육정보센터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메일 조사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담당 공무원 및 보육정보센터, 부모모니터링 사업 위탁기관 담당자와 부모요원 및 보육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책 제언을 도출하고, 지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부모모니터링에서 부모가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 선정기준을 엄격히 하고, 사전 및 보수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부모모니터링 사업 예산에 수당 및 사전교육 및 보수교육 운영비, 사업 운영비, 보육정보센터 담당인력 수당 등 추가 편성하여야 한다. 또한 부모모니터링단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활동수당은 1개소 기준 25,000원에서 30,000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상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부모모니터링 운영매뉴얼에 주요 상황별 FAQ, 50개 문항에 대한 설명, 부모모니터링단 역할 및 진행순서, 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방법 등을 보강하고, 사업의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지표는 건강관리, 급식관리, 위생관리, 안전관리 4개 영역, 13개 항목, 40개 관찰내용으로 조정한다.

부모모니터링 사업이 박근혜정부 국정과제로서 안착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및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실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표 개선을 비롯한 운영 개선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김인경(2013). 한국 보육정책의 현황과 과제. KDI-OECD 공동 컨퍼런스 '한국의 사회정책 과제' KDI 자료집. KDI.
- 보건복지부(2012). 어린이집 지도점검 매뉴얼 공무원용.
- 보건복지부(2013). 2013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40인 이상 어린이집)
- 보건복지부(2013). 아이사랑 부모모니터링 매뉴얼.
- 보건복지부(2013).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2013). 전국 어린이집 운영자료.
- 보건복지부(각 년도). 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부(각 년도). 보육통계
- 서문희·양미선·김은설·최윤경·유해미·손창균·이혜민(2012). 2012년 전국보육실태 조사-가구조사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서문희·최윤경·김문정(2011). 2011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 서수경·양민석·안현미(2012). 2012 서울시 안심보육모니터링단 운영 결과보고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양미선·정주영·임지희(2013). 어린이집 및 유치원 운영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양일선·이보숙·신서영·이해영·김혜영·박문경·김영신·이호진(2010). 보육시설 급식 운영관리 매뉴얼 개발. 보건복지부.
- 유희정·이옥·서문희·윤선영·최영신·강정희·주재선·이미화(2003). 보육사업의 공공화 및 다양화 실행방안 연구. 여성부.
- 이미화·서문희·이정원·이정림·도남희·권미경·양미선·손창균·김경미(2012).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어린이집조사 보고-

부 록

부록 1. 부록 표

부록 2. 부모모니터링 매뉴얼 개정(안)

부록 3. 보육공무원 조사표

부록 4. 보육관계자 조사표

부록 1. 부록 표

〈부록 표 II-1-1〉 부모모니터링 지표 시도 변경내용

| 지역 | 추가사항 |
|--------------------------------|--|
| 전북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단급식소, 차량운행, 석면 안전관리 대상 여부 확인 추가 2. 추가 예방접종 시 생활기록부에 기록해야 함(추가 서류는 불필요) 3. 운전자 안전교육 여부 확인 추가 4. 지표1(외부기관 교육 이수) 확인시 올해 안의 계획도 인정됨 5. 지표 확인 방법(관찰) 추가 |
| 경기 양주 · 과천 · 오산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기도 「아이사랑 부모모니터링 운영 매뉴얼」 2. 부모협력사항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방접종 사실 확인과 같이 부모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부모협력사항으로 명시 3. 가정 어린이집 등 보육현실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생복은 앞치마로 대체가능, 위생화는 받드시 장화가 아니어도 됨 - 식재료 관리시 입고 날짜 기입은 1차 농산물에 한함 4. 모호한 규정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급식제공(3-6)의 경우 특별한 음식을 필요로 하는 조건 및 음식제공을 구체적으로 명시 - 환아격리관리(3-2)의 휴원을 요하는 질병 중 유행성 감기는 비현실적이므로 적용 예외 처리 - 1시간 이내 5. 어린이집 특장점: 원장 면담 통해 특장점 결과보고서에 기록 6. 모니터링 순서 원장실 혹은 사무실→현관→복도 및 계단→보육실→화장실→조리실 및 식재료 보관실→실외시설,실내외놀이터 및 통학차량 7. 모니터링 순서에 따른 문항 재배치 |
| 대구 중구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설 유형 (일반, 영아전담, 장애아전담, 휴일보육, 장애아통합, 방과후통합, 시간연장형, 24시간) 2. 지적사항, 수범사항, 종합의견 3. 영역 및 관찰항목 변경(총 48개) <ol style="list-style-type: none"> I. 급식위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간식 제공(6) - 식재료 관리(3) - 조리실 청결(4) - 시설 위생(4) II. 시설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시설의 안전성(11) - 비상재해대비 시설설비 및 안전관리(6) - 안전교육(3) III. 아동건강 및 인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건강(7) - 아동인권: 학대예방(2), 정서수용(1), 보호(1) |

| 지역 | 추가사항 |
|----|---|
| | 4. 점검결과 상, 중, 하 평가 - 기타(지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 - 문항을 필수 이행사항과 일반사항으로 나눔 - 일반현황 기입 추가 5. 급·간식 책임자 자격증유무와 제시여부 6. 안전교육 실시 횟수, 시간, 참가자 수 7. 차량운행에 관한 사항 |

〈부록 표 III-1-1〉 보육전문가 추가 선정요건

| 구분 | 빈도 | 구분 | 빈도 |
|-------------------|----|-------------------|----|
| 보육현장경력 | | 직급 | |
| 보육근무경력자 | 5 | 어린이집 원장 | 3 |
| 보육근무경력 1년 | 1 | 영유아 관련학과 교수 및 강사 | 4 |
| 보육근무경력 2년 | 6 | 보육업무 경력의 공무원 | 2 |
| 보육근무경력 3년 | 1 | 보육정보센터장 | 2 |
| 보육근무경력 5년 | 5 | 아동협의회의원 | 1 |
| 보육교사 1급 자격증 소지자 | 1 | 전공이수 및 자격증 | |
| 보육정보센터 전문요원 경력 2년 | 2 | 유아교육 전공 이수자 | 4 |
| | | 보육관련 학과 석사이상 취득한자 | 1 |
| | |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 4 |
| | | 보육근무경력자 | 2 |

〈부록 표 III-1-2〉 부모 추가 선정요건

| 구분 | 빈도 | 구분 | 빈도 |
|-------------------------|----|-----------------|----|
|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 부모 | | 육아경험이 있는 부모 | |
|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 경험이 있는 부모 | 11 |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 | 5 |
| 어린이집 이용 경력 1년 이하인 부모 | 1 | 아동양육경험이 있는 부모 | 6 |
| 최근 2년 내 어린이집 이용 경험있는 부모 | 1 |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 | 1 |
| 평가인증 어린이집 자녀맡긴 경험 2년이상 | 1 | 다자녀가구 부모 우선 선정 | 1 |
| 보육전문가 | | 모니터링 유경험 부모 | 4 |
| 보육전공자 | 3 | | |
| 보육관련 자격증 소지자 | 1 | | |
| 보육근무경력자 | 1 | | |
| 평가인증담당 보육전문요원 3년 | 1 | | |
| 운영위원회 참여자 | 2 | | |

〈부록 표 III-1-3〉 컨설턴트 추가 선정요건

| 구분 | 빈도 | 구분 | 빈도 |
|------------------------|----|---------------------|----|
| 원장 및 보육교직원 | | 교수 및 보육관련 공무원 | |
| 어린이집원장경력 10년 | 1 | 보육업무 경력 공무원 | 1 |
| 보육근무경력 5년 | 1 | 보육관련학과 교수 | 3 |
| 보육근무경력자 | 2 | 부모 | |
| 평가인증 2회 90점 이상 인증받은 원장 | 1 | 모니터링 경험있는 어린이집 이용부모 | 1 |
| 보육관련 자격있는 어린이집 이용 부모 | 1 | | |
| 유아전문기관 3개월 이상 유경험자 | 1 | | |

〈부록 표 III-1-1〉 부모모니터링 행정조치 현황

단위: 건(개소)

| 시도 | 시군구 | 행정조치 | | | | | |
|----|-----|----------|-------|------|------|------|------|
| | | 시정명령 | 운영정지 | 자격정지 | 자격취소 | 과태료 | 고발 |
| 부산 | 사상구 | 1(1) | - | - | - | 1(1) | - |
| | 기장군 | 12(5) | - | - | - | - | - |
| 대구 | 북구 | 1(1) | 1(1) | 1(1) | - | - | - |
| | 달서구 | 1(1) | - | - | - | - | - |
| 인천 | 남동구 | 1(1) | 1(1) | 1(1) | - | 1(1) | 1(1) |
| | 부평구 | 105(35) | - | - | - | - | - |
| 울산 | 서구 | 1(1) | - | - | - | - | - |
| | 북구 | 2(2) | - | - | - | - | - |
| 경기 | 파주시 | 13(10) | - | - | - | - | - |
| | 구리시 | 2(2) | - | - | - | - | - |
| | 포천시 | 1(1) | 1(1) | - | - | - | - |
| 강원 | 가평군 | 10(4) | - | - | - | - | - |
| | 오산시 | 1(1) | - | - | - | - | - |
| | 춘천시 | 5(5) | (1폐쇄) | - | 1(1) | - | 1(1) |
| 전남 | 삼척시 | 1(1) | - | - | - | - | - |
| | 양양군 | 1(1) | - | - | - | - | - |
| 경북 | 나주시 | 4(1) | - | - | - | - | - |
| | 영광군 | 3(3) | - | - | - | - | - |
| 경남 | 구미시 | 10(7) | - | - | - | - | - |
| | 하동군 | 20(20) | - | - | - | - | - |
| 전체 | | 195(103) | 4(4) | 2(2) | 1(1) | 2(2) | 2(2) |

주: 각 시군구 내부자료(2013년 6월 말 기준)

〈부록 표 V-2-1〉 부모모니터링 지표 및 확인방법 수정사항: 건강관리

| 현행 지표 | | | | 개정(안) | | | |
|-------------------------------------|----|----|----|-------------------------------------|----|----|----|
| 지표 | 관찰 | 면담 | 문서 | 지표 | 관찰 | 면담 | 문서 |
| 1. 영유아 예방 접종 | | | | | | | |
| 1) 예방접종 여부 확인 | | | ○ | 1) 필수예방접종 안내지도 | | | ○ |
| 2) 필수예방접종 안내지도 | | | ○ | 2) 예방접종 여부 확인 및 기록관리 | | | ○ |
| 3) 생활기록부에 예방접종관련 기록 관리 | | | ○ | - | | | |
| 2. 응급 조치 체계 | | | | | | | |
| 1) 위급상황 대비 의료기관 이송 체계 | | | ○ | 1) 위급상황 대비 의료기관 이송 체계 | | | ○ |
| 2) 비상약품 및 간이 의료기구 등 비치 관리 | ○ | | | 2) 비상약품 및 간이 의료기구 등 비치 관리 | ○ | | |
| 3) 식중독 및 전염병 등 증상 발견 시 신고체계 | | ○ | ○ | 3) 식중독 및 전염병 등 증상 발견 시 신고체계 | | ○ | ○ |
| 3. 정기 건강 검진 | | | | | | | |
| 1) 영유아와 보육교직원 건강검진 실시 및 증빙서류 비치 | | | ○ | 1)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건강 검진 | | | ○ |
| 2) 치료를 요하는 영유아에 대한 조치 및 전염성 질환 시 조치 | | | ○ | 2) 치료를 요하는 영유아에 대한 조치 및 전염성 질환 시 조치 | | | ○ |
| 3) 감염병 의심 및 판명된 보육교직원 조치 | | ○ | ○ | 3) 감염병 의심 및 판명된 보육교직원에 대한 조치 | | ○ | ○ |

〈부록 표 V-2-2〉 부모모니터링 지표 및 확인방법 수정사항: 급식관리

| 부모모니터링 | | | | 개정(안) | | | |
|-------------------------------------|----|----|----|--------------------------|----|----|----|
| 지표 | 관찰 | 면담 | 문서 | 지표 | 관찰 | 면담 | 문서 |
| 4. 식단 및 조리 관리 | | | | 4. 영양 및 식단 관리 | | | |
| 1)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표에 따른 제공 | ○ | | ○ | 1)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표에 따른 제공 | ○ | | ○ |
| 2) 급식 직접 조리 및 제공 | ○ | | | 2) 제철 과일 주 3회 제공 | ○ | | ○ |
| 3) 영유아에게 적절한 음식 조리 | ○ | | | 3) 영유아에게 적절한 음식 제공 | ○ | | |
| | | | | 5. 조리 관리 | | | |
| 4) 음식 당일 조리 당일 소비 원칙 준수 | ○ | ○ | | 1) 급식 직접 조리 및 제공 | ○ | | |
| 5) (50인이상)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신고·운영, 조리사 배치 | | | ○ | 2) 음식 당일 조리, 당일 소비 원칙 준수 | ○ | ○ | |

(부록 표 V-2-2 계속)

| 부모모니터링 | | | | 개정(안) | | | |
|-----------------------------------|----|----|----|--------------------------------|----|----|----|
| 지표 | 관찰 | 면담 | 문서 | 지표 | 관찰 | 면담 | 문서 |
| 5. 식재료 관리 | | | | 6. 식재료 관리 | | | |
| 1)식재료 보관 규정 준수 | ○ | | | 1)식재료 보관 규정 준수 | ○ | | |
| 2)식단표상의 식재료 원산지 표기대로 구입 | ○ | | ○ | 2)식단표상의 식재료 원산지 표기대로 구입 | ○ | | ○ |
| 3)식재료 보관 장소 위생 및 식품과 소모품 별도 관리 | ○ | | | 3)식재료 보관 장소 위생 및 식품과 소모품 별도 관리 | ○ | | |
| 4)(50인 이상) 집단급식소 식재료 접수일지 작성 관리 | | | ○ | - | | | |
| 6. 영양관리 | | | | | | | |
| 1)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균형 있게 제공 | | | ○ | - | | | |
| 2)비타민과 무기질 균형 공급 | | | ○ | - | | | |
| 3)특별한 음식 필요한 영유아 보호자 요구 반영한 음식 제공 | | ○ | ○ | - | | | |

〈부록 표 V-2-3〉 부모모니터링 지표 및 확인방법 수정사항: 위생관리

| 부모모니터링 | | | | 개정(안) | | | |
|--|----|----|----|-----------------------------|----|----|----|
| 지표 | 관찰 | 면담 | 문서 | 지표 | 관찰 | 면담 | 문서 |
| 7. 급식 위생 관리 | | | | | | | |
| 1)조리직원 위생모, 위생복, 위생화 등 착용 | ○ | | | 1)조리직원 위생모, 위생복, 위생화 등 착용 | ○ | | |
| 2)급식 및 배식 위생 관리 | ○ | | | 2)급식 및 배식 위생 관리 | ○ | | |
| 3)식수, 우유, 모유, 이유식 등 관리 | ○ | | | 3)식수, 우유, 모유, 이유식 등 관리 | ○ | | |
| 8. 조리실 청결 | | | | | | | |
| 1)조리실 및 조리도구, 기타 주방용구 위생관리 | ○ | | ○ | 1)조리실의 청결관리 | ○ | | |
| 2)어류, 육류, 채소용 칼과 도마 구분 사용 | ○ | | | 2)조리도구의 청결 | ○ | | |
| 3)후드, 환풍기 설치 및 출입문 방충·방서 설비, 바닥, 천장 등 청결 | ○ | | | 3)후드, 환풍기 설치 및 출입문 방충·방서 설비 | ○ | | |
| 9. 시설·설비 위생 | | | | | | | |
| 1)현관, 복도, 계단, 화장실, 세면실 등 청결 | ○ | | ○ | 1)어린이집 모든 공간의 청결 유지 및 소독 | ○ | | |
| 2)보육실 놀잇감 및 영유아 침구 청결 | ○ | | | 2)보육실 놀잇감 청결유지·관리 | ○ | | |
| | | | | 3)영유아용 침구 청결유지·관리 | ○ | | |
| 3)칫솔 및 칫솔컵 소독 및 청결 | ○ | | | 4)수건, 칫솔·칫솔컵 청결 유지·관리 | ○ | | |
| 4)정기적인 소독 및 대청소 실시 | | ○ | ○ | - | | | |
| 5)실내환기, 청소 등을 수시 실시 및 실내 공기 질 유지관리 | ○ | | ○ | - | | | |
| 6)어린이집 석면안전관리 | | | ○ | - | | | |

〈부록 표 V-2-4〉 부모모니터링 지표 및 확인방법 수정사항: 안전관리

| 부모모니터링 | | | | 개정(안) | | | |
|---|----|----|----|--|----|----|----|
| 지표 | 관찰 | 면담 | 문서 | 지표 | 관찰 | 면담 | 문서 |
| 10. 물리적 환경에 대한 관리 | | | | | | | |
| 1)실내·외 모든 공간 안전점검표 비치, 매일·매월 안전점검 실시 | ○ | | ○ | - | | | |
| 2)실내·외 시설·설비 및 놀이시설 안전장치 | ○ | | | 1)실내 시설·설비 및 놀이시설 안전장치 | ○ | | |
| 3)실내·외 놀잇감 안전 | ○ | | | 2)실내·외 놀잇감 안전 | ○ | | |
| 4)세면대 수도와 정수기 등 안전조치 | ○ | | | 3)세면대 수도와 정수기 등 안전조치 | ○ | | |
| 5)비상약품 및 투약용기, 위험물 별도 보관 | ○ | | | 4)위험물 별도 보관 | ○ | | |
| 6)긴급 사태 대비한 안전시설 및 설비 관리, 및 대처방안 | ○ | ○ | | 5)긴급 사태 대비한 안전시설 및 설비 관리, 및 대처방안 | ○ | ○ | |
| 11. 인적 환경에 대한 안전관리 | | | | | | | |
| 1)영유아 안전교육 계획실시 | | | ○ | 1)영유아 안전교육·소방훈련 계획·실시 | | | ○ |
| 2)보육교직원 대상 안전교육 계획 실시, 부모 안전교육 참여 안내 | | | ○ | 2)보육교직원 대상 안전교육 계획 실시 | | | ○ |
| 3)소방훈련 매월 계획·실시·평가 | | | ○ | | | | |
| 4)영유아 인수인계 | ○ | ○ | | 3)영유아 등하원시 안전한 인수인계 | | ○ | ○ |
| 12. 차량 안전관리 | | | | | | | |
| 1)어린이집 통학버스신고필증 구비 | | | ○ | 1)어린이집 통학버스 신고필증 구비 | | | ○ |
| 2)차량 안전설비 설치, 관리 | ○ | | | 2)차량 안전설비 설치, 관리 | ○ | | |
| 3)차량안전수칙 비치 숙지, 차량안전점검표에 의한 안전점검 실시 | | ○ | ○ | 3)등하원 지도교사 및 차량운전자의 차량안전수칙 숙지 | | ○ | |
| 4)차량운행일지, 등·하원일지 작성 | | | ○ | 4)차량운행일지, 등·하원일지 작성 | | | ○ |
| 13. 아동학대 예방 및 조치 | | | | | | | |
| 1)모든 보육교직원 외부기관의 아동학대 예방교육 이수 | | ○ | ○ | 1)보육교직원 외부기관의 아동학대 예방교육 또는 기관 자체적으로 교육 진행 | | ○ | ○ |
| 2)모든 보육교직원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역할, 아동 학대 발견 시 신고 및 상담전화 이용방법 숙지 | | ○ | | 2)보육교직원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역할, 아동 학대 발견 시 신고 및 상담전화 이용방법 숙지 | | ○ | |
| 3)모든 보육교직원 대상 자체 아동학대예방교육 진행 | | | ○ | - | | | |

부록 2. 부모모니터링 매뉴얼 개정(안)

1. 건강관리

| 항목 (1-1) | 영유아 예방접종 | | 점수 | | |
|-------------|---|---|--|------------|------------|
| |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안내와 예방접종 관리가 잘 되고 있는가? | | 우수 (2점) | 보통 (1점) | 미흡 (0점) |
| 지표 | ①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예방접종을 안내 지도한다. ② 영유아의 예방접종 사실을 확인하고 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보 관한다. | | | | |
| 지표 설명 | ① 예방접종 안내·지도는 입소 1주일 이내에 실시하며, 확인결과 예방접종을 받지 아니한 영유아에게는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도록 보호자에게 추가적으로 안내지 도함. ② 영유아 예방접종 여부 확인 및 관리는 생활기록부에 기록 관리함. 단, 영유아의 예방접종 실시는 일차적으로 부모 책임으로, 어린이집은 미접종 여부에 대해 영유아 부모에게 안내하는 책임만 있음. 해당 어린이집에 예방접종을 받지 아 니한 영유아가 있는 경우 부모에게 정기적으로 예방접종 실시에 대해 안내하고 그 안내사항을 기록·보관하였는지 확인함.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영유아보육법」 제31조 | | | | |
| 확인 방법 | 문서 | ○ | • 통신문, 예방접종안내자료, 부모수첩 등 • 예방접종증명서 및 이에 준하는 증명자료, 생활기록부 | | |
| | 관찰 | | | | |
| | 면담 | | ① 필수예방접종 안내 가정통신문, 예방접종 안내자료, 부모수첩 등 확인 ② 생활기록부 상의 예방접종 여부 및 내역에 관한 기록 확인 | | |
| 총평 | | | 총점 | | |
| | | | | | |
| 컨설팅 의뢰 | □ 의뢰 | | □ 미의뢰 | | |
| | | | | | |

| 항목 (1-3) | 정기건강검진 | | 점수 | | |
|-------------|--|-----------------------|--|------------|------------|
| |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건강검진과 전염성 질환에 대한 관리가 잘 되고 있는가? | | 우수 (2점) | 보통 (1점) | 미흡 (0점) |
| 지표 | ① 영유아와 보육교직원 건강검진을 연1회 실시하고, 그 증빙서류를 보관한다. | | | | |
| | ② 치료를 요하는 영유아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경우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 치료토록 조치한다. | | | | |
| | ③ 보육교직원의 건강진단결과 감염병이 의심되거나 판명되는 자는 완치 시까지 휴직 또는 면직 조치를 한다. | | | | |
| 지표 설명 | <p>① 모든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은 매년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의 건강검진 시기 재원아: 영유아별로 전년도에 실시한 시기를 기준으로 당해연도 관찰일에 1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미도래한 것으로 간주 신규 입소아동: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시기에 따라 건강검진 실시 여부 확인 - 보육교직원의 건강검진 보육교직원 건강검진: 미임용 보육교직원 중 매일 1개월 이상 지속적인 근무자와 어린이집에서 함께 거주하는 자까지 건강검진 실시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함. - 어린이집 보육 실습생 건강검진: 어린이집 보육실습생도 건강검진 서류 구비해야 함. <p>② 치료를 요하는 영유아에 대해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혹은 —이심되는 경우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 치료토록 조치를 취함.</p> <p>③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판명된자는 완치 시까지 휴직면직 등의 조치를 취함.</p> <p>※근거: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3조, 「영유아보육법」 제32조</p> | | | | |
| 확인 방법 | 문서 | <input type="radio"/>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건강검진 결과서(검사결과 통보서) • 신규채용 보육교직원의 채용신체검사서 • 전염성 질환 대책 문서, 전염성 질환 완치 소견서 등 | | |
| | 관찰 | | | | |
| | 면담 | <input type="radio"/> | | | |
| | <p>①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이 연 1회 실시한 건강검진 서류(신규보육교직원은 채용신체검사서) 확인</p> <p>② 전염성 질환에 감염 또는 의심되거나 치료를 요하는 경우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 치료할 수 있도록 보호자에게 안내 및 격리 조치 등 확인</p> <p>③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전염성 질환 완치 소견서를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p> | | | | |
| 총평 | | | | 총점 | |
| 컨설팅 의뢰 | <input type="checkbox"/> 의뢰 | | <input type="checkbox"/> 미의뢰 | | |
| | | | | | |

2. 급식관리

| 항목 (2-1) | 영양 및 식단관리 | | 점수 | | |
|-------------|---|--|--|------------|------------|
| | 영유아에게 영양적으로 균형 있는 급·간식을 제공하고 있는가? | | 우수 (2점) | 보통 (1점) | 미흡 (0점) |
| 지표 | ①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표대로 제공한다. (100인미만은 보육정보센터, 보건소 등 제공 식단) | | | | |
| | ② 제철 과일 및 채소 등을 주 3회 이상 간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 | | | |
| | ③ 음식의 조리(크기, 맛 등)가 영유아가 먹기에 적절하다. | | | | |
| 지표 설명 | <p>① 급식은 정상적인 발달에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의하여 공급하되, 영유아 100인 미만을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인근 보육정보센터, 보건소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의 영양사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여야 함.</p> <p>② 제철 과일 및 채소 등을 주 3회 이상 간식으로 제공하되 한 주에 동일 품명의 과일 및 채소를 제공하는 것은 지양함.</p> <p>③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음식은 영유아의 건강을 위하여 너무 짜거나, 달거나, 맵지 않아야 하며 영유아가 먹기에 적절한 크기로 제공되어야 함.</p> <p>※ 근거: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4조 별표8호, 「영유아보육법」 제33조</p> | | | | |
| 확인 방법 | 문서 | <input type="radio"/>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단표, 급식일지, 조리일지, 등 • 급식으로 제공된 음식 관찰 | | |
| | 관찰 | <input type="radio"/> | | | |
| | 면담 | | | | |
| | | <p>①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표, 식단표대로 급·간식 제공 확인</p> <p>② 식단표의 주 3회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간식으로 제공 확인</p> <p>③ 급간식으로 제공되는 음식의 크기, 맛 등 확인</p> | | | |
| 총평 | | | 총점 | | |
| | | | | | |
| 컨설팅 의뢰 | <input type="checkbox"/> 의뢰 | | <input type="checkbox"/> 미의뢰 | | |
| | | | | | |

| 항목 (2-2) | 조리 관리 | | 점수 | | |
|-------------|--|-----------------------|---|------------|------------|
| | 영유아에게 안전한 급·간식을 제공하고 있는가? | | 우수 (2점) | 보통 (1점) | 미흡 (0점) |
| 지표 | ① 급식은 어린이집에서 직접 조리하여 제공한다. ② 당일에 조리한 음식은 당일에 소비하는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 | | | | |
| 지표 설명 | ① 급식은 어린이집에서 직접 조리하여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 내에서 조리가 불가능할 경우 그 사유와 대안을 마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② 조리음식을 재사용하지 않고 집단급식 시설의 경우 조리 후 2시간 이내 배식·섭취함. ※근거: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4조 별표8호, 「영유아보육법」 제33조 | | | | |
| 확인 방법 | 문서 | | • 어린이집에서 직접 조리한 급식 제공 하는지 확인 • 급·간식 조리 및 배식과정, 당일 조리 음식 당일 소비 여부 | | |
| | 관찰 | <input type="radio"/> | | | |
| | 면담 | <input type="radio"/> | ① 어린이집에서 직접 조리한 급식 제공 ② 급·간식 조리 및 배식과정, 당일 조리 음식 당일 소비 여부 | | |
| 총평 | | | 총점 | | |
| | | | | | |
| 컨설팅 의뢰 | <input type="checkbox"/> 의뢰 | | <input type="checkbox"/> 미의뢰 | | |
| | | | | | |

| 항목 (2-3) | 식재료 관리 | | 점수 | | |
|-------------|--|-----------------------|--|------------|------------|
| | 급간식의 식자재가 안전하고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 | 우수 (2점) | 보통 (1점) | 미흡 (0점) |
| 지표 | ① 식재료 보관규정(냉동·냉장·실온보관, 입고날짜, 유통기한 등)을 준수하고 있다. | | | | |
| | ② 식단표상의 식재료는 원산지 표기대로 구입하고 있다(쇠고기, 돼지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낙지 등). | | | | |
| | ③ 식재료 보관 장소는 청결하고 위생적이며, 식품과 소모품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 | | | |
| 지표 설명 | <p>① 식품 입고 날짜를 기입하고 식품에 표시된 보관규정에 따라 냉장·냉동 보관하며, 유통기한 무 표시 제품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1차 농산물 원형 그대로 보존 시 무 표시 가능)</p> <p>② 식단표 수정시, 동일식품군으로 사용하며, 그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함.</p> <p>③ 식재료 보관 장소가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어야 하며 식품과 소모품은 별도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여건상 부득이 함께 보관할 경우에는 서로 섞이지 않도록 분리 보관하고 식품과 소모품의 품명, 용도 등을 표시함.</p> <p>※근거: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호,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4조 별표8호,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5조,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호</p> | | | | |
| 확인 방법 | 문서 | <input type="radio"/>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고날짜, 유통기한 • 식단표, 식자재 구매영수증·거래명세서, 원산지 표기 등 • 식재료 보관 장소, 식품·소모품 관리 | | |
| | 관찰 | <input type="radio"/> | | | |
| 면담 | | | | | |
| | <p>① 식재료 입고날짜 기입 여부, 보관방법, 유통기한 준수, 보관장소(냉동,냉장,실온 보관 등) 확인</p> <p>② 식단표상의 원산지 표기대로 구매 여부 구매영수증 통해 확인</p> <p>③ 식재료 보관 장소 청결 여부, 식품·소모품 관리 확인</p> | | | | |
| 총평 | | | | 총점 | |
| | | | | | |
| 건설 의뢰 | <input type="checkbox"/> 의뢰 | | <input type="checkbox"/> 미의뢰 | | |
| | | | | | |

3. 위생관리

| 항목 (3-1) | 급식 위생관리 | | 점수 | | |
|-------------|--|---|--|------------|------------|
| | 조리직원의 청결이 유지되며 급식 및 배식이 위생적인가? | | 우수 (2점) | 보통 (1점) | 미흡 (0점) |
| 지표 | ① 조리직원은 위생모, 위생복, 위생화 등을 착용하고 조리한다. | | | | |
| | ② 급·배식 도구가 청결하고 배식과정이 위생적이다. | | | | |
| | ③ 식수, 우유, 모유, 이유식 등 관리가 위생적이다.(컵, 젓병 등을 소독 관리하여 청결하게 사용) | | | | |
| 지표 설명 | <p>① 어린이집 조리직원(영양사, 조리사, 취사부)은 위생모, 위생복, 위생화를 착용하여야 함. 단, 가정어린이집은 위생화 착용 대상에서 제외함.</p> <p>② 급배식 도구가 청결하여야 하며, 배식과정이 위생적이어야 함.</p> <p>③ 정수기, 컵, 젓병 등의 청결이 유지되어야 함.</p> <p>※근거: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4조 별표8호, 보육사업안내,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3조 별표8호</p> | | | | |
| 확인 방법 | 문서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리 직원의 복장상태 등 • 급배식 전용도구의 위생상태, 배식과정 • 식수, 우유, 모유, 이유식 및 컵, 젓병 등의 청결·소독 상태 | | |
| | 관찰 | ○ | | | |
| 면담 | | | | | |
| | <p>① 조리 직원의 복장상태 확인</p> <p>② 급배식 전용도구의 위생상태 및 배식과정의 위생 상태 확인</p> <p>③ 식수, 우유, 모유, 이유식 및 컵, 젓병 등 관리 및 소독상태 등 확인</p> | | | | |
| 총평 | | | | 총점 | |
| | | | | | |
| 컨설팅 의뢰 | <input type="checkbox"/> 의뢰 | | <input type="checkbox"/> 미의뢰 | | |
| | | | | | |

| 항목 (3-2) | 조리실 청결 | | 점수 | | |
|-------------|---|---|---|------------|------------|
| | 조리실 및 조리도구의 청결이 유지되며 세척, 살균 및 소독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 | 우수 (2점) | 보통 (1점) | 미흡 (0점) |
| 지표 | ① 조리실이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 | | | |
| | ② 후드, 환풍기가 설치되어 있고 출입문에 방충·방서 설비가 되고 있다. | | | | |
| | ③ 조리도구 사용이 청결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식기, 도마, 칼, 행주, 기타 주방 용구를 세척, 살균 및 소독한다. | | | | |
| 지표 설명 | <p>① 어린이집 내 조리실은 항상 청결을 유지관리하고 있음.</p> <p>② 후드, 환풍기가 설치되어 있고 환기·청소 등을 수시로 실시하여 청결을 유지해야 함(냉난방기 및 선풍기 가동 및 청결여부 확인)</p> <p>③ 조리도구의 청결을 위해 정기적으로 식기, 도마, 칼, 행주 그 밖에 주방 용구를 주 1회 정기적으로 세척·살균 및 소독함. 어류, 육류, 채소류를 취급하는 칼·도마는 각각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함</p> <p>※근거: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4조 별표8호,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3조 별표8호</p> | | | | |
| 확인 방법 | 문서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리실 내부(바닥, 벽, 천장 등) 청결 여부 • 후드, 환풍기, 냉난방기 및 선풍기 설치·가동 및 청결 여부 • 조리도구 청결 여부 및 주방 용구 세척, 살균, 소독 | | |
| | 관찰 | ○ | | | |
| | 면담 | | <p>① 조리실 내(바닥, 벽, 천장 등) 청결 상태 확인</p> <p>② 후드, 환풍기 설치 여부와 냉난방기 및 선풍기 가동 및 청결 상태 확인</p> <p>③ 조리도구의 청결, 위생상태 확인 및 주방 용구 세척, 살균 및 소독 여부 확인</p> | | |
| 총평 | | | 총점 | | |
| | | | | | |
| 컨설팅 의뢰 | □ 의뢰 | | □ 미의뢰 | | |
| | | | | | |

| 항목 (3-3) | 시설설비 비품위생 | | 점수 | | |
|-------------|--|----|------------------------------|---|------------|
| | 어린이집 시설 및 설비의 위생 및 안전이 유지 관리되고 있는가? | | 우수 (2점) | 보통 (1점) | 미흡 (0점) |
| 지표 | ① 어린이집의 모든 공간(보육실, 현관, 복도, 계단, 화장실, 세면실)이 청결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다. | | | | |
| | ② 보육실의 놀잇감이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다. | | | | |
| | ③ 영유아가 사용하는 침구가 청결하게 유지 관리되고 있다. | | | | |
| | ④ 영유아가 사용하는 수건, 칫솔, 칫솔컵이 청결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다. | | | | |
| 지표 설명 | <p>① 어린이집의 모든 실내 공간은 매일 청소하고, 청결상태도 매일 점검함. 모든 실내 공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2개월에 1회 이상 소독과 대청소 실시해야 하며, 현관은 항상 잘 정돈되어 있고, 복도와 통로, 계단과 창문 등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함, 모든 보육실의 바닥, 창문과 창틀, 교구장, 바구니, 사물함 뒤편 구석진 곳 등의 청결 상태를 잘 유지함</p> <p>- 화장실·침구·놀잇감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소독 실시하고 청결 관리</p> <p>-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사항들에 대해 수시 점검 보육실, 교재교구실, 조리실, 놀이터 등 어린이집 청소상태, 침구 및 기저귀 등의 위생상태, 욕실, 화장실, 세면도구 등의 청결 및 위생상태</p> <p>② 보육실의 놀잇감은 자주 세척, 소독하여 청결함을 유지함.</p> <p>③ 영유아용 침구는 정기적으로 세탁하고 일광 소독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함</p> <p>④ 영유아용 수건과 칫솔과 칫솔컵은 사용 후 세탁 및 세척하고, 매일 소독하고 관리함.</p> <p>※근거: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3조 별표8호</p> | | | | |
| | 확인 방법 | 문서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모든 공간(보육실, 현관, 복도, 계단, 화장실, 세면실 등) • 보육실의 놀잇감 • 영유아용 침구 • 영유아용 수건, 칫솔과 칫솔컵, 소독기 사용시 포함. | |
| | 관찰 | ○ | | | |
| | 면담 | | | | |
| | <p>① 어린이집 모든 공간(보육실, 현관, 복도, 계단, 화장실, 세면실 등)의 청결상태 확인</p> <p>② 보육실의 놀잇감 청결 상태 확인</p> <p>③ 영유아의 침구(개별 침구) 청결 상태 확인</p> <p>④ 영유아용 수건, 칫솔, 칫솔컵의 청결 상태 확인, 소독기 사용 시 청결 상태 확인</p> | | | | |
| 총평 | | | 총점 | | |
| | | | | | |
| 건설 의뢰 | <input type="checkbox"/> 의뢰 | | <input type="checkbox"/> 미의뢰 | | |
| | | | | | |

4. 안전관리

| 항목 (4-1) | 물리적 환경에 대한 안전관리 | | 점수 | | |
|-------------|---|--|--|------------|------------|
| | 어린이집 물리적 환경에 대한 안전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 | 우수 (2점) | 보통 (1점) | 미흡 (0점) |
| 지표 | ① 실내외 시설·설비 및 놀이시설에 안전장치(끼임 방지, 모서리보호대 등)가 되어 있으며, 위험요소가 없다. | | | | |
| | ② 영유아가 사용하는 실내외 놀잇감이 영유아에게 안전하다. (파손여부, 질, 재질 등) | | | | |
| | ③ 세면대 수도와 정수기 등에 화상위험이 없도록 안전조치가 되어 있다. | | | | |
| | ④ 위험물은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장소에 별도로 보관되고 있다. | | | | |
| | ⑤ 화재 등 긴급 사태를 대비한 안전시설 및 설비가 잘 관리되며,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갖추고 있다.(소화설비, 경보기, 비상구 및 비상계단, 유도등 등) | | | | |
| 지표 설명 | ① 시설·설비 및 놀이시설에 끼임 방지, 모서리 보호대 등의 안전장치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볼트·너트 등 이음장치 상태와 출입문(현관문)의 개폐를 관리하여야 함(*감전위험, 넘어짐, 미끄러짐, 추락위험 여부 등 포함) ② 놀잇감 등 물건이 파손되거나 칠이 벗겨지지 않고 재질이 유해하지 않아야 하며, 삼킬 가능성이 있는 물건이 없어야 함. ③ 온수량과 온수 온도조절에 대한 조치 및 정수기 온수에 안전조치가 되어 있어야 함. ④ 위험물은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장소에 별도로 보관해야 함. (위험물 예시: 강력접착제, 목공용 본드, 글루건, 실험용 알코올, 살충제, 방향제, 구강세정제, 액상비료, 물고기 사료, 성인용 화장품, 침핀, 건전지, 칼, 송곳, 스테이플러, 가시 식물, 화장실 내 각종 세제, 세척제, 표백제, 나프탈렌, 별기 압축기, 영아가 삼킬 수 있는 놀이감이나 활동자료 등) ⑤ 화재 등 긴급사태를 대비한 안전시설 및 설비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함 ※근거: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9조 별표1호,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3조 별표 8,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 | |
| 확인 방법 | 문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내외 시설·설비 및 놀이시설, 놀잇감 등의 위험요인 • 세면대 수도의 온수 온도 적절성(수도밸브), 정수기 온수 안전장치 • 위험물 보관상태 • 비상재해대비시설 및 설비 | ① 실내외 시설·설비 및 놀이시설, 놀잇감 등의 안전 상태 확인 ② 세면대 수도의 온수 온도 적절성(수도밸브), 정수기의 온수 안전장치 확인 ③ 비상약품 및 투약용기, 위험물(소독액, 아세톤 등)의 보관 상태 확인 ④ 비상재해대비시설 및 설비 관리상태, 긴급사태 대처 방안 확인 | | |
| | 관찰 | | | | |
| | 면담 | ○ | 총점 | | |
| 총평 | | | | | |
| 컨설팅 의뢰 | <input type="checkbox"/> 의뢰 | | <input type="checkbox"/> 미의뢰 | | |
| | | | | | |

| 항목 (4-2) | 인적 환경에 대한 안전관리 | | 점수 | | |
|-------------|---|-----------------------|--|------------|------------|
| | 어린이집 물리적 환경에 대한 안전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 | 우수 (2점) | 보통 (1점) | 미흡 (0점) |
| 지표 | ① 영유아 안전교육과 소방훈련을 계획하여 실시하고 있다. | | | | |
| | ② 보육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계획하여 실시하고 있다. | | | | |
| | ③ 영유아 등하원시 안전한 인계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 | | | |
| 지표 설명 | <p>① 영유아 안전교육과 소방훈련을 계획하고 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함.</p> <p>② 보육교직원은 안전교육지침을 숙지하여야 하며, 시·도 및 시·군·구 등에서 실시하는 안전관련 교육에 참여하여야 함.</p> <p>③ 영유아의 등·하원 시 반드시 보호자와 교사 간의 인수인계 과정이 필요하며, 보호자가 서면으로 제출한 '귀가동의서'에 따라 보호자 확인 후 인수인계 해야 함. 또한 영유아를 다른 성인에게 인계할 때는 보호자의 전화 확인 또는 서명 확인이 필요함.</p> <p>※근거: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3조 별표8</p> | | | | |
| 확인 방법 | 문서 | <input type="radio"/>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교육일지, 소방훈련일지 등 • 안전교육계획안 및 안전교육 안내 자료 • 귀가동의서, 등·하원기록표, 인수인계 과정 숙지 | | |
| | 관찰 | | | | |
| | 면담 | <input type="radio"/> | | | |
| | <p>① 안전교육일지, 소방훈련일지 등을 확인하여 계획·실행·평가 여부를 확인</p> <p>② 보육교직원 대상의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혹은 외부기관 의 안전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안내하고 있는지 확인)</p> <p>③ 귀가동의서 등을 통해 인계과정에 대한 규정 확인</p> | | | | |
| 총평 | | | | 총점 | |
| | | | | | |
| 컨설팅 의뢰 | <input type="checkbox"/> 의뢰 | | <input type="checkbox"/> 미의뢰 | | |
| | | | | | |

| 항목 (4-3) | 차량에 대한 안전관리 | | 점수 | | |
|-------------|--|---|----------------------------------|------------|------------|
| | 어린이집에서 운행하는 차량에 대한 안전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 | 우수 (2점) | 보통 (1점) | 미흡 (0점) |
| 지표 | ① 어린이집의 모든 통학차량의 신고필증을 구비하고 있다. | | | | |
| | ② 어린이집의 모든 통학차량은 차량안전설비(경광등, 차량용소화기, 차량용 구급상자, 개별 안전띠 및 안전필증을 받은 영아용 보호 장구 등)를 갖추고 관리되고 있다. | | | | |
| | ③ 등하원 지도교사와 차량운전자는 차량안전수칙을 비치하여 숙지하고 있다. | | | | |
| | ④ 차량운행일지 및 등·하원일지를 작성하여 안전하게 차량을 운행한다. | | | | |
| 지표 설명 | ① 통학차량 운행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요건을 구비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전세버스 운송 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차량도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함. | | | | |
| | ② 36개월 미만 영아는 영아용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하며, 유아와 교사는 개별 안전띠를 착용해야 함. 차량에는 경광등, 차량용소화기 등이 설치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함. ③ 어린이집 통학차량 내부에 안전수칙을 부착하고, 등하원 지도교사와 차량운전자는 이를 숙지하여야 함. ④ 등·하원 차량 운행 시 운전기사 및 보육교사 등 동승자는 영유아를 안전하게 담당 보육교사나 보호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영유아 등·하원일지를 작성하여 등하원 차량 이용 영유아가 안전하게 인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근거: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3조 별표8, 「도로교통법」 제52조 | | | | |
| 확인 방법 | 문서 | ○ | • 차량 신고필증 | | |
| | 관찰 | ○ | • 차량 안전설비 | | |
| 총평 | 면담 | ○ | • 차량안전수칙 | | |
| | | | • 차량운행일지 및 등·하원일지, 안전하게 인도하는지 여부 | | |
| 컨설팅 의뢰 | ① 차량 신고필증이 구비되어 있는지 확인 | | | | |
| | ② 차량 안전설비를 갖추고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 | | | | |
| | | ③ 차량안전수칙을 비치하며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 차량안전점검표를 비치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 | | | |
| | | ④ 차량운행일지와 등·하원일지를 작성하고 있는지 확인 | | | |
| | | | | 총점 | |
| | | □ 의뢰 | | □ 미의뢰 | |

| 항목 (4-4) | 아동학대 예방 및 조치 | | 점수 | | |
|-------------|---|-----------------------|--|------------|------------|
| | 아동학대 예방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 | 우수 (2점) | 보통 (1점) | 미흡 (0점) |
| 지표 | ① 보육교직원은 아동학대예방에 관한 외부기관(아동보호전문기관, 보육정보센터 등)의 교육을 이수하였거나, 기관 자체적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 | | | |
| | ② 보육교직원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의 역할을 알고 있으며, 아동 학대 발견 시 신고 및 상담전화를 이용할 줄 안다. | | | | |
| 지표 설명 | <p>① 보육교직원은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모든 자(원장, 보육교사, 취사부, 대체교사, 차량기사 등)를 말하며, 모니터링을 받는 시점 전으로 1년 내 교육 실시 및 이수하며, 외부기관(아동보호전문기관, 보육정보센터 등)에서 진행되는 교육 이외에 어린이집 자체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통해 지속적인 교사교육 실시하여야 함.</p> <p>②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신고의무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학대피해아동 발견 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해야 하며 모든 교직원 이 아동학대 신고 및 상담전화(☎ 1577~1391, 129) 번호를 알아야 함</p> <p>※근거: 「아동복지법」 제2조제4호, 제26조,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교육 자료집(2012)」, 아동복지법 제25조, 아동복지법 제75조</p> | | | | |
| 확인 방법 | 문서 | <input type="radio"/>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기관에서 실시한 아동학대예방교육 참석내용 (이수증 또는 수료증) 어린이집 내부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 기록 (보육일지 또는 어린이집 운영일지 등) 신고의무자로서의 역할을 알고 있으며 학대피해아동 발견 시 대처 방법 및 신고·상담전화 숙지여부 | | |
| | 관찰 | <input type="radio"/> | | | |
| | 면담 | <input type="radio"/> | | | |
| | <p>① 보육교직원 대상으로 외부기관 또는 기관 자체적으로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시하는지 기록 확인</p> <p>② 보육교직원이 신고의무자임을 인지하고 있으며 학대피해아동 발견 시의 대처방법을 물어보고 신고 및 상담전화 숙지여부 확인</p> | | | | |
| 총평 | | | 총점 | | |
| | | | | | |
| 컨설팅 의뢰 | <input type="checkbox"/> 의뢰 | | <input type="checkbox"/> 미의뢰 | | |
| | | | | | |

부록 3. 보육공무원 조사표

응답내용은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자료 작성의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부모모니터링」에 관한 시군구 조사

| | | | |
|----|------------|---|--------|
| 시도 | 구시군 읍면동 | - | 조사표 번호 |
| | | | |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부모모니터링 운영 효율화 방안」** 모색을 위한 시도 및 시군구 보육 담당자 대상 이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시는 내용은 향후 정부의 부모모니터링 관련 정책 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잠시 틈을 내시어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해 주신 모든 사항은 통계법에 따라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그 내용은 통계자료로만 이용되오니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1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 | | | |
|----------|--------------------|---|-----|
| 응답자 담당지역 | _____시·도 _____시·군구 | | |
| 전화번호 | () | - | Fax |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5. 일부 지역에서는 부모모니터링단 인원 교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귀 시도(시군구)는 2013년 10월말 기준으로 초기 모집인원, 중도이탈인원, 재충원 인원수를 각각 기입해 주십시오. (※ 교체 없을 경우 '0' 기입) (☞ 이탈 인원이 1명 이상인 경우 문항 5-1, 5-2로)

| 부모 | | | 보육전문가 | | | 컨설턴트 | | |
|-------|-------|--------|-------|-------|--------|-------|-------|--------|
| 초기 인원 | 이탈 인원 | 재충원 인원 | 초기 인원 | 이탈 인원 | 재충원 인원 | 초기 인원 | 이탈 인원 | 재충원 인원 |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5-1. 부모모니터링단 이탈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1가지 선택)

- ① 부모모니터링 활동이 꾸준하지 않아서 일정 보수 보장하는 곳으로 이동
 ② 활동 수당(1개소당 25,000원)이 적어서
 ③ 부모모니터링에 대한 이해 부족
 ④ 부모모니터링단의 책임감 부족
 ⑤ 부모모니터링단 역할의 어려움
 ⑥ 기타()

5-2. 부모모니터링단 인원이 감소된 경우 모니터링단을 어떻게 운영하십니까?(1가지 선택)

- ① 추가 모집
 ② 감소된 인원으로 활동량과 빈도 높여서
 ③ 감소된 인원으로 활동량과 운영기간을 늘려서
 ④ 기타()

6. 귀 시군구는 부모모니터링단의 인원교체 방지 대책으로 어떠한 방안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습니까? 또는 어떠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7. 현재 부모모니터링단 활동수당은 어린이집 1개소 당 25,000원으로, 하루 2개소 이상을 모니터링 할 경우 50,000원 정도를 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귀하는 1개소당 활동수당(25,000원)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절하지 않은 경우,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활동수당을 적어 주십시오.

- ① 하향 조정(원) ② 적당하다 ③ 상향 조정(원)

8. 현재 부모모니터링단 활동 대상 어린이집은 1일 2개소입니다. 이 기준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적절하다고 응답한 경우, 개소 수를 적어주십시오.

- ① 하향 조정 ② 적당하다 ③ 상향 조정(개소)

9. 현재 부모모니터링단 활동수당이 일괄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교통비 등이 추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지역별로 차등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등 지급 및 추가 지급 시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1가지 선택)

- ①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 수당 지급
 ② 지역에 따라 활동수당 차등 지급(☞ 차등 지급시 활동수당: 원)
 ③ 읍면지역에 교통비 추가 지원(☞ 교통비: 원) ⑤ 기타()
 ④ 모니터링단 거주지와 대상 어린이집 간 거리 기준하여 교통비 지원(☞ 교통비: 원)

10. 귀하는 부모모니터링단 활동기간 동안 상해 등에 대비하여 보험가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필요하다 ② 필요하지 않다 ③ 기타()

II. 부모모니터링단 교육

11. 귀 시도(시군구)는 부모모니터링단 대상의 사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까? 실시하였다면 총 몇 회 실시하였습니까?

- ① 실시 (회) ☞ 문항 11-1 ② 미실시(☞ 문항 12로)

11-1. (사전교육을 실시한 경우) 사전교육은 어떠한 형태로 운영하였습니까?(1가지 선택)

- ① 지표교육과 실무교육
- ② 지표교육과 실무교육, 현장교육 병행하여 실시
- ③ 기타()

12. 귀 시도(시군구)는 부모모니터링단 인력 교체가 있을 경우, 신규 부모 또는 보육전문가 대상으로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고 있습니까?(1가지 선택)

- ① 신규 인력 발생 시마다 교육 실시
- ② 일정 인원이 모아지면 교육 실시
- ③ 정기적(월별, 분기, 반기 등)으로 교육 실시
- ④ 기타()

13. 귀 시도(시군구)는 부모모니터링단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합니까? 실시한다면 어떠한 형태로 몇 회 운영하였습니까? (1가지 선택)

- ① 대집단 집합교육(_____ 회)
- ② 소그룹 교육(_____ 회) (※예: 워크샵, 자유포럼 등)
- ③ 기타()
- ④ 실시하지 않음

14. 현재 부모모니터링단 교육은 사전교육만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부모모니터링단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이 정기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가지 선택)

-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 ② 필요하지 않다
- ③ 대체로 필요하다(☞ 문항 14-1)
- ④ 매우 필요하다(☞ 문항 14-1)

14-1. (보수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1가지 선택)

- ① 분기
- ② 반기
- ③ 매월
- ④ 상시
- ⑤ 기타()

III. 부모모니터링 운영

15. 귀 시도(시군구)는 부모모니터링 대상 어린이집을 어떠한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습니까?(1가지 선택)

- ① 무작위 선정
- ② 지도점검 시 시정명령 또는 행정처분 어린이집 우선 선정
- ③ 민간, 가정어린이집 우선 선정
- ④ 어린이집연합회가 추천한 어린이집 선정
- ⑤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선정
- ⑥ 기타()

16. 귀하는 부모모니터링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있다면 순서대로 2가지만 골라 빈 칸에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 1순위 ()번 | 2순위 ()번 |
|--------------------------|-------------------------|
| ① 어린이집의 비협조적 태도(거부 및 반발) | ② 부모모니터링단의 파견일정(스케줄) 조정 |
| ③ 담당자(공무원)의 업무 과중 | ④ 보육정보센터와의 협력체계 부족 |
| ⑤ 부모모니터링단의 역할에 대한 이해 부족 | ⑥ 부모모니터링단의 중도이탈자가 많아서 |
| ⑦ 원거리 어린이집 배정 기피 | ⑧ 총 예산 중 운영경비 및 교육비 부족 |
| ⑨ 부모모니터링단 통합시스템 부재 | ⑩ 기타() |

17. 현재 부모모니터링단은 지역에 따라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운영하거나 별도 기관(예: 서울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담당)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모니터링단 사전교육 및 컨설팅은 보육정보센터가 맡고 있습니다. 부모모니터링단의 운영, 교육, 컨설팅 운영주체는 어떠한 기관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각각에 대하여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 | | |
|----------|----------|--------------|
| 운영: ()번 | 교육: ()번 | 컨설팅 운영: ()번 |
|----------|----------|--------------|

- ① 시도
- ② 시군구
- ③ 별도 보육관련 공공기관
- ④ 보육정보센터
- ⑤ 기타()

18. 귀하는 부모모니터링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스케줄 관리, 결과보고 입력, 모니터링단 재교육, 우수사례 공유, 사업관련 제안 등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필요 없다 ② 필요없다 ③ 필요하다 ④ 매우 필요하다

III-1. 부모모니터링 결과

19. 귀 시도(시군구)소속 부모모니터링단의 결과보고서 작성수준은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1가지 선택)
 ① 매우 부족하다 ② 부족하다 ③ 적당하다 ④ 충분하다 ⑤ 매우 충분하다
20. 귀 시도(시군구)는 부모모니터링 결과를 해당 어린이집에 알려줍니까? 공지할 경우, 결과에 대해 어느 정도 알려주고 있습니까?(1가지 선택)
 ① 전혀 알려주지 않는다 ② 총점만 알려준다 ③ 확인내용 중 '미흡' 항목만 알려준다 ④ 컨설팅 대상 여부만 알려준다
 ⑤ 모니터링 결과 전체를 알려준다 ⑥ 기타()
21. 귀 시도(시군구)는 부모모니터링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1가지 선택)
 ① 부모모니터링 사업으로만 활용 ② 평가인증 조력 대상 선정 시 활용
 ③ 지도점검 기초 자료로 활용 ④ 기타()

III-2. 부모모니터링 컨설팅

22. 현재 부모모니터링 결과 점수가 13점 이하 어린이집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점수(13점)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점수를 빈칸에 적어주십시오.
 ① 하향 조정 필요(점) ② 적절 ③ 상향 조정 필요(점)
23. 귀 시도(시군구)의 부모모니터링 사업 결과 컨설팅 대상 어린이집이 있습니까?(2013년 10말 기준)
 ① 있다(☞ 문항 23-1) ② 없다(☞ 문항 24으로)
- 23-1. ('① 있다' 고 응답한 경우) 사후관리(컨설팅) 운영의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1가지 선택)
 ① 컨설턴트 부족 ② 컨설팅 일정 조정
 ③ 보육정보센터의 지원 인력 부족 ④ 어린이집의 비협조적인 태도
 ⑤ 기타()
24. 부모모니터링 사후관리(컨설팅)는 모니터링 결과 중 '미흡' 항목에 대해 컨설팅한 후 결과보고서 제출로 사후관리가 종료됩니다. 사후관리 후에 어린이집의 개선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면 어떠한 방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1가지 선택)
 ① 필요없다 ② 부모모니터링 추가 실시 ③ 컨설팅 추가 실시 ④ 기타()
25. 귀하는 정부가 배포한 '아이부모모니터링단 운영매뉴얼' 내용이 사업을 운영하는 데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1가지 선택)
 ① 부족하다(☞ 문항 24-1) ② 적절하다 ③ 충분하다

25-1. (① 부족하다고 응답한 경우) 운영매뉴얼 중 어떠한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순서대로 두 가지만 골라 번호를 각각 전어 주십시오.

| 1순위 ()번 | 2순위 ()번 |
|---------------------|--------------------|
| ① 부모모니터링단 역할 및 진행순서 | ② 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 방법 |
| ③ 컨설팅 방법 | ④ 50개 문항에 대한 설명 |
| ⑤ 주요 상황별 FAQ | ⑥ 기타() |

III. 부모모니터링 지표

26. 부모모니터링 지표는 4개 영역 13개 항목, 5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역, 항목, 문항 수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줄이거나 늘릴 경우, 몇 개가 적당한 지 개수를 적어주십시오.

| 구분 | ① 줄일 필요가 있다 | ② 적절 | ③ 늘릴 필요가 있다 |
|-----------------------|-------------|------|-------------|
| 1) 영역(건강, 급식, 위생, 안전) | 개 | | 개 |
| 2) 항목(13개 항목) | 개 | | 개 |
| 3) 문항 또는 관찰내용(50개 문항) | 개 | | 개 |

27. 부모모니터링 확인방법은 확인내용에 따라 문서, 관찰, 면담 3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각각의 방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구분 | ① 매우 부적절 | ② 부적절 | ③ 적절 | ④ 매우 적절 |
|-------|----------|-------|------|---------|
| 1) 문서 | | | | |
| 2) 관찰 | | | | |
| 3) 면담 | | | | |

28. 부모모니터링 지표에 대해 다음의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구분 | ① 전혀 동의하지 않음 | ② 동의하지 않음 | ③ 동의함 | ④ 매우 동의함 |
|--|--------------|-----------|-------|----------|
| 1) 지표 수가 많다. | | | | |
| 2) 확인 방법 중 문서가 많다. | | | | |
| 3) 기준이 모호한 문항이 많다. | | | | |
| 4) 평가인증과 기준이 상이한 문항이 많다. | | | | |
| 5) 부모가 평가하기 어려운 문항이 많다. | | | | |
| 6) 평가내용의 중요도에 상관없이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한다(확인, 미확인 ○, ×로 평가) | | | | |

29. 귀하는 부모모니터링 지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가지 선택)

-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② 필요하지 않다 ③ 필요하다 ④ 매우 필요하다

30. 부모모니터링 확인방법은 지표별로 확인 결과를 ‘○’, ‘×’ 로 표기하고 항목별 확인 개수에 따라 우수, 보통, 미흡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 보통, 미흡은 0점, 1점, 2점으로 채점하여 총점이 26점입니다. 각 문항(관찰내용)에 대해 각각 ‘1점’ 씩 부여하여 평가하고, 총점을 기준으로 컨설팅 대상을 선정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② 동의하지 않는다 ③ 동의한다 ④ 매우 동의한다

※ 3개 문항의 경우 3개 이상 우수, 2개 보통, 1개 이하 미흡,
5개 문항의 경우, 5개 이상 우수, 4-5개 보통, 3개 이하 미흡 평가

39. 귀하의 학력은?

- ① 고졸 ② 대학 졸(3년제 이하) ③ 4년제 대학졸 ④ 대학원 졸

40. 귀하의 직급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9급 ② 8급 ③ 7급 ④ 6급 ⑤ 5급

♣ 끝까지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록 4. 보육관계자 조사표

응답내용은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자료 작성의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부모모니터링」에 관한 보육관계자 조사

| | | | |
|----|------------|---|--------|
| 시도 | 구시군 읍면동 | - | 조사표 번호 |
| | | | |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부모모니터링 운영 효율화 방안」** 모색을 위한 보육관계자 대상으로 이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시는 내용은 향후 정부의 부모모니터링 관련 정책 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잠시 틈을 내시어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해 주신 모든 사항은 통계법에 따라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그 내용은 통계자료로만 이용되오니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1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 | | | |
|----------|--------------------|---|-----|
| 응답자 담당지역 | _____시·도 _____시·군구 | | |
| 전화번호 | () | - | Fax |

1. 지표의 적절성 및 개선사항

※ 다음은 부모모니터링 영역별 세부지표와 지표별 확인방법입니다. 지표가 어느 정도 적절하지 해당하는 곳에 ✓표하고, 지표 내용 중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I. 건강관리

| 세부 항목 | ① 매우 부적절 | ② 부적절 | ③ 대체로 적절 | ④ 매우 적절 | ※ 지표 내용 중 문제점 또는 개선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
|---|----------------|----------|----------------|---------------|--|
| 1. 영유아 예방접종 | | | | | |
| ① 입소 30일 이내에 영유아의 예방접종 사실을 확인한다.(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자료) | | | | | |
| ② 필수예방접종을 받지 아니한 영유아는 보호자에게 예방접종을 안내 지도한다. (필수예방접종을 안내하는 각종자료,가정통신문,수첩 등) | | | | | |
| ③ 생활기록부에 예방접종 사항을 기록 관리한다.(생활기록부) | | | | | |
| 2. 응급조치체계 | | | | | |
| ① 영유아에게 위급상태가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 이송체계를 갖추고 있다. (응급처치 동의서, 의료기관 연락망, 보호자 비상연락망, 보육교직원의 응급이송 체계 숙지) | | | | | |
| ② 영유아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비상 약품 및 간이 의료기구 등을 비치하여 관리하고 있다.(비상약품 및 간이의료기구 안전하게 관리, 약품 유효기간,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 보관, 잠금장치 등) | | | | | |
| ③ 식중독 및 전염병 등 의심되는 증상 발견 시 시군구청 보육담당부서 및 보건소에 신고체계를 갖추고 있다. (보육담당부서보건소 연락망 비치, 신고체계 숙지) | | | | | |
| 3. 정기건강검진 | | | | | |
| ①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에 대한 건강 검진을 연 1회 실시하고, 그 증빙서류 비치하고 있다. (영유아보육교직원 건강검진결과서, 검사결과통보서 등) | | | | | |
| ② 치료를 요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경우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하여 치료토록 한다.(전염성 질환 관련 안내서 및 대책문서) | | | | | |
| ③ 보육교직원의 건강진단결과 감염병이 의심되거나 판명되는 자는 원차 시까지 휴직 또는 면직 조치를 한다. (전염성 질환 대책 문서, 전염성 질환 완치 소견서) | | | | | |

II. 급식관리

| 세부 항목 | ① 매우 부적절 | ② 부적절 | ③ 대체로 적절 | ④ 매우 적절 | ※ 지표 내용 중 문제점 또는 개선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
|--|----------------|----------|----------------|---------------|--|
| 4. 식단 및 조리 관리 | | | | | |
| ①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표대로 제공한다. (100인미만은 보육정보센터, 보건소 등 제공 식 | | | | | |

| | | | | | |
|--|--|--|--|--|--|
| 단)(영양사가 작성한 식단표, 식대표 대로 급간식 제공) | | | | | |
| ② 급식은 어린이집에서 직접 조리하여 제공한다.(어린이집에서 직접 조리한 급식 제공) | | | | | |
| ③ 음식의 조리(크기, 맛 등)가 영유아가 먹기에 적절하다.(음식의 크기, 맛의 적절성) | | | | | |
| ④ 당일에 조리한 음식은 당일에 소비하는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50인 이상은 2시간 이내 배식, 섭취함)(급식 배식 과정, 당일 조리 음식 당일 소비 여부) | | | | | |
| ⑤ (50인 이상) 급식을 제공하는 어린이집은 급단급식소로 신고 운영하고 조리사를 배치하고 있다.(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 조리사 자격증) | | | | | |
| 5. 식재료 관리 | | | | | |
| ① 식재료 보관규정(입고날짜기입, 냉동·냉장·온실보관, 유통기한 준수)을 준수하고 있다.(식재료 입고날짜, 보관상태, 유통기한 준수) | | | | | |
| ② 식단표상의 식재료는 원산지 표기대로 구입하고 있다.(식단표상 원산지 표기, 식대표 대로 구입 여부) | | | | | |
| ③ 식재료 보관장소는 청결하고 위생적이며, 식품과 소모품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응급처치 동의서) | | | | | |
| ④ (50인 이상) 집단급식소는 식재료 검수일지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다. (식재료 검수일지 및 검수 확인 기록) | | | | | |
| 6. 영양관리 | | | | | |
| ① 급식은 탄수화물, 단백질 및 지방섭취를 균형있게 제공하고 있다.(식단표) | | | | | |
| ② 비타민과 무기질을 균형있게 공급하기 위해 제철 과일 및 채소 등을 주 3회 이상 간식으로 제공하고 있다.(식단표) | | | | | |
| ③ 특별한 음식을 필요로 하는 영아나 유아에게는 그 보호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음식을 제공한다.(식단의 음식제공 안내 서류, 가정통신문) | | | | | |

III. 위생관리

| 세부 항목 | ① 매우 부적절 | ② 부적절 | ③ 대체로 적절 | ④ 매우 적절 | ※ 지표 내용 중 문제점 또는 개선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
|--|----------|-------|----------|---------|--|
| 7. 급식위생 관리 | | | | | |
| ① 조리직원은 위생모, 위생복, 위생화 등을 착용하고 조리한다. (조리직원의 위생모, 위생복, 위생화 착용) | | | | | |
| ② 급식 및 배식관리가 청결하고 위생적이다. (급식 및 배식과정의 청결상태, 배식전용도구 사용, 위생상태) | | | | | |
| ③ 식수, 우유, 모유, 이유식 등 관리가 위생적이다(컵, 젓병 등 1회 사용 및 소독관리 철저). (청수기 청결상태, 식수 등 위생관리, 우유·모유·이유식의 보관법, 젓병 등 1회 사용 및 소독) | | | | | |

| 8. 조리실 청결 | | | | | |
|--|--|--|--|--|--|
| ① 조리실은 청결하며, 식기, 도마, 칼, 행주, 기타 주방 용구를 세척 살균 및 소독한다. (급식위생관리체크리스트 또는 점검표, 조리실 주방용구 세척 및 소독 여부) | | | | | |
| ② 어류, 육류, 채소류를 취급하는 칼과 도마는 각각 구분하여 사용한다. (식재료 종류별로 구분한 칼과 도마 사용) | | | | | |
| ③ 후드, 환풍기가 설치되어 있고 출입문에 방충방서 설비가 되어 있으며 바닥, 천장 등이 청결하다.(후드, 환풍기 설치, 외부 출입문 방충·방서 설비, 바닥, 천장의 청결상태) | | | | | |
| 9. 시설·설비 위생 | | | | | |
| ① 현관, 복도, 계단, 화장실, 세면실 등이 청결하게 유지하고 있다.(위생관리 점검표, 현관, 복도, 계단, 화장실, 세면실등의 청결상태) | | | | | |
| ② 보육실의 놀잇감 및 영유아의 침구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있다. (놀잇감과 영유아의 침구 청결상태, 개별침구) | | | | | |
| ③ 칫솔 상태가 바르고, 칫솔, 칫솔컵은 매일 소독하여 청결하게 유지하고 있다. (칫솔과 칫솔컵의 청결상태, 소독기 사용시 위생상태) | | | | | |
| ④ 어린이집 청결과 위생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소독 및 대청소를 실시하고 있다. (소독 및 대청소 관련 문서, 위생점검표, 관련일지, 소독 필증 등) | | | | | |
| ⑤ 실내환기, 청소 등을 수시로 하여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 관리하고 있다. (실내공기질 측정 자료, 실내 환기 및 청소 상태) | | | | | |
| ⑥ 어린이집의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 (430㎡이상의 어린이집).(석면 조사 관련 자료, 건축물 석면조사 실시 및 결과 기록 보존 등) | | | | | |

| IV. 안전관리 | | | | | |
|--|----------|-------|----------|---------|--|
| 세부 항목 | ① 매우 부적절 | ② 부적절 | ③ 대체로 적절 | ④ 매우 적절 | ※ 지표 내용 중 문제점 또는 개선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
| 10. 물리적 환경에 대한 안전관리 | | | | | |
| ① 어린이집 실내·외 모든 공간에 안전점검표를 비치하며 매일·매월 안전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다.(어린이집 안전점검 일별, 월별 체크리스트) | | | | | |
| ② 실내의 시설·설비 및 놀이시설에 안전장치(끼임방지, 모서리보호대)가 되어 있으며, 위험 요소가 없다.(현관 및 출입문 끼임 방지, 모서리 보호대, 화장실 미끄럼방지, 전기콘센트 안전덮개 등) | | | | | |
| ③ 영유아가 사용하는 실내·외 놀이감이 영유아에게 안전하다. (실내외 놀잇감 위험요인, 유해물질의 여부, 영아가 삼킬 위험이 있는 물건 미제공) | | | | | |
| ④ 세면대 수도와 정수기 등에 화재위험이 없도 | | | | | |

| | | | | | |
|--|--|--|--|--|--|
| 록 안전조치가 되어 있다.(세면대 수도의 온수 온도 적절성, 정수기의 온수 안전장치) | | | | | |
| ⑤ 비상약품 및 투약용기, 위험물을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장소에 별도로 보관하고 있다.(비상약품 및 투약용기, 위험물의 안전한 보관) | | | | | |
| ⑥ 화재 등 긴급 사태를 대비한 안전시설 및 설비가 잘 관리되며, 긴급사태에 대한 대처 방안을 갖추고 있다.(소화기 각 층 설치, 비상구 유도 등·가스경보기 정상 작동, 긴급대피 대처방안 숙지) | | | | | |
| 11. 인적환경에 대한 안전관리 | | | | | |
| ① 아동복지법상의 안전교육 기준에 의거하여 영유아 안전교육을 계획하고 실시하고 있다.(안전교육 관련 기록) | | | | | |
| ② 보육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계획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부모도 안전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안전교육관련 계획 및 기록, 안전교육 안내 자료 등) | | | | | |
| ③ 소방훈련을 매월 계획·실시·평가하고 있다.(소방훈련 관련 기록) | | | | | |
| ④ 영유아의 장소이동이나 일과 중 교사 교체 시 영유아에 대한 인수인계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귀가동의서, 등하원기록표,인수인계과정 숙지) | | | | | |
| 12. 차량안전 관리 | | | | | |
| ① 어린이집에서 운행하는 모든 통학버스의 신고필증을 구비하고 있다.(어린이통학버스 차량 신고필증) | | | | | |
| ② 차량 안전설비를 갖추고 관리하고 있다.(차량 안전설비 관리) | | | | | |
| ③ 차량안전수칙을 비치하여 숙지하고, 차량안전점검표에 의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차량안전수칙, 차량안전점검표, 차량안전수칙 숙지, 안전자 안전교육 실시 등) | | | | | |
| ④ 차량운전일지 및 등·하원일지를 작성하여 안전하게 차량을 운행한다.(차량운행일지, 등·하원일지, 안전인도 여부) | | | | | |
| 13. 아동학대예방 및 조치 | | | | | |
| ① 모든 보육교직원은 아동학대예방에 관한 외부기관의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아동학대예방관련 교육 증빙자료) | | | | | |
| ② 모든 보육교직원이 신고의무자로서의 역할을 알고 있으며 아동학대 발견시 신고 및 상담 전화를 이용할 줄 안다.(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역할 이해) | | | | | |
| ③ 모든 보육교직원에게 자체적으로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있다.(어린이집 내부 아동학대 예방 관련 교육 기록) | | | | | |

V. 부모모니터링 지표

13. 부모모니터링 지표는 4개 영역 13개 항목, 5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역, 항목, 문항 수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줄이거나 늘릴 경우, 몇 개가 적당한 지 개수를 적어주십시오.

| 구분 | ① 줄일 필요가 있다 | ② 적절 | ③ 늘릴 필요가 있다 |
|-----------------------|-------------|------|-------------|
| 1) 영역(건강, 급식, 위생, 안전) | 개 | 개 | 개 |
| 2) 항목(13개 항목) | 개 | 개 | 개 |
| 3) 문항 또는 관찰내용(50개 문항) | 개 | 개 | 개 |

14. 부모모니터링 확인방법은 확인내용에 따라 문서, 관찰, 면담 3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각각의 방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구분 | ① 매우 부적절 | ② 부적절 | ③ 적절 | ④ 매우 적절 |
|-------|----------|-------|------|---------|
| 1) 문서 | | | | |
| 2) 관찰 | | | | |
| 3) 면담 | | | | |

15. 부모모니터링 지표에 대해 다음의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구분 | ① 전혀 동의하지 않음 | ② 동의하지 않음 | ③ 동의함 | ④ 매우 동의함 |
|--|--------------|-----------|-------|----------|
| 1) 지표 수가 많다. | | | | |
| 2) 확인 방법 중 문서가 많다. | | | | |
| 3) 기준이 모호한 문항이 많다. | | | | |
| 4) 평가인증과 기준이 상이한 문항이 많다. | | | | |
| 5) 부모가 평가하기 어려운 문항이 많다. | | | | |
| 6) 평가내용의 중요도에 상관없이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한다(확인, 미확인 ○, ×로 평가) | | | | |

16. 귀하는 부모모니터링 지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가지 선택)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② 필요하지 않다 ③ 필요하다 ④ 매우 필요하다

17. 부모모니터링 확인방법은 지표별로 확인 결과를 ‘○’, ‘×’로 표기하고 항목별 확인 개수에 따라 우수, 보통, 미흡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 보통, 미흡은 0점, 1점, 2점으로 채점하여 총점이 26점입니다. 각 문항(관찰내용)에 대해 각각 ‘1점’씩 부여하여 평가하고, 총점을 기준으로 컨설팅 대상을 선정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② 동의하지 않는다 ③ 동의한다 ④ 매우 동의한다

※ 3개 문항의 경우 3개 이상 우수, 2개 보통, 1개 이하 미흡, 5개 문항의 경우, 5개 이상 우수, 4-5개 보통, 3개 이하 미흡 평가

VI. 정책 관련

18. 현재 부모모니터링 사업 예산은 사전교육 1회와 부모모니터링단 인건비로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 편성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면 어떤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1가지 선택)

① 필요 없다 ② 부모모니터링단 교육 예산
 ③ 보육정보센터 담당인력 수당 ④ 부모모니터링단 수당 증액 ⑤ 기타()

19. 귀하는 어린이집 대상으로 부모모니터링 사업에 대한 홍보 및 운영체계 안내가 충분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부족하다 ② 부족하다 ③ 보통이다 ④ 충분하다 ⑤ 매우 충분하다
20. 귀하는 일반 부모가 모니터링한 서비스 질이 실제 서비스 질과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치한다면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생각하십니까?(1가지 선택)
 ①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② 일치하지 않는다 ③ 대체로 일치한다(%) ④ 거의 일치한다 (%)
21. 귀하는 부모모니터링이 부모의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성 제고에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2. 귀하는 부모모니터링이 어린이집의 서비스 질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문항 22-1) ② 그렇지 않다(☞문항 22-1)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문항 22-2) ⑤ 매우 그렇다(☞문항 22-2)
- 22-1.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 22-2.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경우, 어떠한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23. 귀하는 어린이집 운영자의 부모모니터링에 대한 인식 개선을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가지 선택)
 ① 평가인증 지표와 상이한 지표 개선 ② 확인방법 개선(관찰, 면담, 문서)
 ③ 부모모니터링단의 자질 향상 ④ 부모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개선
 ⑤ 기타()

V. 인적사항

25. 귀하의 연령은 몇 세입니까? 만 _____세
26. 귀하의 성별은? ① 여자 ② 남자
27. 귀하의 학력은?
 ① 고졸 ② 대학 졸(3년제 이하) ③ 4년제 대학졸 ④ 대학원 졸
28. 귀하의 보육 관련 경력은 총 얼마입니까? 또한 현 보육정보센터에서의 경력은 얼마입니까?

| | | | | | |
|--------------|---|----|--------------|---|----|
| 총 보육 관련 경력 : | 년 | 개월 | 현 보육정보센터 경력: | 년 | 개월 |
|--------------|---|----|--------------|---|----|

♣ 끝까지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연구보고 2013-24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

발행일 2013년 12월

발행인 이 영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33 안국빌딩 7층, 8층, 10층, 11층

전화: 02) 398-7700

팩스: 02) 730-3313

<http://www.kicce.re.kr>

인쇄처 대명기획 02) 2273-1292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8-89-97492-79-4 93330

